Ⅲ. 군사조직

- 1. 경군
- 2. 주현군과 주진군
-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

Ⅲ. 군사조직

1. 경 군

1) 태조대의 경군

(1) 태조대 경군의 규모

고려 전기의 중앙군은 전형적으로는 2軍 6衛라 총칭되는 8개부대로 편제되어 있었다. 2軍은 鷹揚軍과 龍虎軍으로 그 병력규모는 3천 명이었고, 6衛는 左右衛・神虎衛・興威衛・金吾衛・千牛衛, 그리고 監門衛 등으로 그 병력규모는 4만 2천 명이었다.

고려시대 군사제도의 연혁을 기록한《高麗史》兵志에 의하면 2군은 6위보다 상위의 부대들이었지만 그 설치 시기는 6위보다 나중이었다고 한다.1) 그리고 군주의 행적을 기록한《高麗史》世家에 의하면, 중앙에 6위가 설치된 것은 태조 2년의 일이었다고 한다.

(太祖) 2년 春 正月 도읍지를 松嶽의 남쪽으로 정하여 궁궐을 짓고, 3省 6尚書 9寺 등을 두고, 市廛을 세우고, 坊里를 가르고, 5部를 구분하고, 6衛를 설치하였다(《高麗史》권 1, 世家 1, 태조 2년 정월).

그러나 고려의 중앙군이 태조 2년(919)부터 6위로 편제되어 있었다고 하는 위의 기록은 《高麗史》 편찬자의 잘못으로 판단된다. 6위의 중앙군제는 당나라의 12衛兵制를 바탕으로 한 병제였다. 그러나 태조대라고 하면 왕조의 창업기인 동시에 전란의 시대라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아직 중국식 제도들을 수용할 만큼의 안정되고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고려 건국기의 名儒 崔承老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태조대는 "禮樂文物이 오히려 결핍된 것이 많았고

^{1)《}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西班.

무릇 百官과 官司의 품계와 격식이며 내외의 규정과 의식이 아직 정해져 있지 못했던 시기"였다고 한다.²⁾ 이러한 시기에 고려가 당나라 병제를 도입할 수 없 었을 것이다.

태조대의 역사는 출병과 전투에 관한 사건들로 점철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 위의 실재를 방증할만한 구체적 단서는 전혀 없다. 만일 6위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출전 무장들 가운데 반드시 6위의 武職을 지닌 인물이 있을 법도한데 도무지 그런 사례가 보이질 않는 것이다. 3) 또한 고려에 3省 6部 9寺와같은 중국식 정치기구들이 설치된 것도 사실은 태조대가 아니라 성종대의일이었다. 4)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보건대, 태조대의 중앙군은 6위와는 무관한 방식으로 조직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면 태조대 開京을 본거지로 하고 있던 정부직속군, 곧 京軍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었을까. 이 문제를 해명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이고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주요전투에 출동한 중앙군의 규모라든지 지휘관의 직함 등에 관한 기사들을 참고해 보는 수밖에 없다. 그 중에서도 태조대 경군의 전체적 규모와 편제를 파악하는 데 가장 유리해 보이는 기사는 고려와 후백제와의 최후 최대의 결전이었던 一利川 戰役(태조 19년 9월)에 관한 기사일 것이다. 《高麗史》세가 태조 19년 9월조에는 당시 戰場에 집결한 태조측 병력의 규모와 부대 편성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실려 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 표에 의하면, 일리천(지금의 善山지방의 낙동강 줄기) 전역에 출전한 태조측 병력은 좌강·우강·중군·그리고 원군 등 크게 네 개 부대로 편성되어 있었 고 전체 병력수는 8만 7천 5백 명이었다. 그런데 태조측 병력 가운데에는 〈표 1〉의 병력구성 항목이 보여주듯이, 중앙의 정부직속군 뿐 아니라 지방의 유력 호족들의 응원군과 북방 유목민들의 기병까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원군을 구성 한 1만 5천 명과 중군 소속의 흑수 등 말갈의 기병 9천 5백 명은 성격상 정부직

^{2) 《}高麗史》권 93, 列傳 6, 崔承老.

鄭景鉉、〈高麗前期 武職體系의 成立〉(《韓國史論》19、 서울대 국사학과、 1988). 134~142等。

⁴⁾ 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研究》(一潮閣, 1971), 3~8\.

〈표 1〉 《高麗史》에 전하는 太祖軍의 편성

भ नाच्य रा		13-3-11		/#== A - 미 - 1 - 1	1117777
부대편성		병력구성		筆頭의 지휘관	병력규모
左	綱	馬軍	10,000	甄萱(망명한 후백제主)	
工.	和叫	步軍	10,000	支天軍大將軍 能達	20,000
右	綱	馬軍	10,000	金鐵	
		步軍	10,000	補天軍大將軍 三順	20,000
中	軍	馬軍	20,000	王順式(溟州豪族)	
		步軍	1,000	祐天軍大將軍 貞順	
		步軍	1,000	天武軍大將軍 宗熙	
		步軍	1,000	杆天軍大將軍 金克宗	
		黑水 등	遊牧族		
		의 勁縣	9,500	庾黔弼	32,500
援	軍	騎兵	300		
		諸城軍	14,700		15,000
					합계 87,500

속군이라 보기 어려운 병력이다. 그러므로 이들을 제외한 6만 3천 명(마군 4만 명과 보군 2만3천 명)이 당시 고려 경군의 총 병력수였던 셈이 된다.5)

다시〈표 1〉의 내용 가운데 경군의 편제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의를 끄는 부분은 3군 소속 각 보군병력의 필두 지휘관들에게 한결같이 某某軍大將軍이라는 식의 직함이 주어져 있었던 점이다. 支天軍大將軍, 補天軍大將軍, 祐天軍大將軍, 天武軍大將軍, 그리고 杆天軍大將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언급된 지천군이니 보천군이니 하는 명칭들은 어쩌면 태조대 중앙군소속의 보군부대 명칭들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6만 3천 명 규모의 태조대 경군은 세 개의 마군부대와 다섯 개의 보군부대들로 편제되어 있었던 것으로 상정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태조대 경군의 규모와 편제에 관한 이같은 상정은 후백제와의 결 전 당시 태조측 병력에 대한 《高麗史》의 기록을 너무 쉽게 믿거나 피상적으

⁵⁾ 洪承基,〈高麗初期 中央軍의 組織과 役割-京軍의 性格-〉(《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30等.

鄭景鉉, 《高麗前期 2軍 6衛制 硏究》(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2), 21~23쪽.

로 받아들인 데서 비롯된 하나의 성급한 일반화일 것이다. 왜냐하면 태조대 경군의 병력규모가 6만 3천 명이었다는 주장은 당대의 여러가지 객관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며, 지천군 등의 5가지 명칭들을 당시 경군의 제도화된 부대명칭들이었다고 해석하기에는 몇 가지 미심 쩍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경군의 병력수 문제부터 검토해 보자. 앞서 언급했듯이, 〈표 1〉로부터 경군규모를 계산하면 6만 3천 명이 된다. 그 중 마군(기병)이 4만 명이고보군이 2만 3천명이다. 그러나 경군의 개념을 개경 주둔의 정부직속군이라고전제할 경우 태조대의 경군 병력수가 6만여 명이었다는 주장은 쉽사리 수긍될 수가 없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이전의 전쟁사에는 출전병력의 규모가 터무니없이 과장되어 기록된 예가 허다하거니와(6) 일리천 전투에 출전한고려측 병력수에 대한《高麗史》의 기록도 그러한 경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이제 그 구체적 이유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6만여 명이라는 병력수는 태조대 개경 일원의 인구사정상 도저히 불가능한 숫자였다. 《高麗史》가 전하는 이 병력수를 사실로 받아 들인다는 것은 당시 개경에 군인 가족만 30여 만 명이 밀집해 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고려시대 수도권 인구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전혀 알려지지않고 있다. 그러나 조선조 세종대의 수도권 지역(漢城 및 城底 10里 일원)에 총 2만여 호가 살고 있었다. 기이 사실은 고려시대 수도권 인구의 대략을 추정하는데 매우 유리한 기준이 될 수 있다. 1호당 가족수를 4.5명으로 보면, 2만호의 인구수는 9만 명 정도가 된다.8) 그렇다면 고려시대 수도권 인구수, 그것도 태조대 수도권의 인구수는 그보다는 훨씬 적었으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려시대 개경 일원의 인구가 남녀노소 합쳐 9만 이하였다는 것은 《高麗史》에 기록된 바 태조대의 경군 병력수(6만 3천)가 매우 과장된

⁶⁾ H. Delbrück, *History of the Art of the War within the Political Framework,* Vol. 1: Antiquity, trans. W.J. Renfroe, Jr. (London: Greenwood Press, 1975), 30쪽 이후 참조.

^{7)《}世宗實錄》 권 148, 地理志, 京都漢城府.

⁸⁾ 고려시대 1戶당 평균 가족수는 未詳이다. 조선 후기의 경우에는 1호당 가족 수가 평균 4.5명 정도였다(四方 博,《朝鮮社會經濟史研究》,東京:國書刊行會, 1976, 43쪽).

전설적 숫자임을 말해 준다.

둘째, 태조대 정부직속군 가운데 무려 4만 명이 기병이었다는 기록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4만 명의 기병이 출전하였다는 것은 4만 필의 戰 馬가 있었음을 의미하고, 4만 필의 전마가 있었다는 것은 그 어미말과 새끼 말. 그리고 다른 종류의 말들까지 합쳐 당시 십 수 만 마리의 말들이 있었음 을 전제한 주장이다. 고려 초기에 개경을 중심으로 하여 북으로는 黃州, 동 으로는 鐵原, 남으로는 淸州 등에 걸치는 지역에 열 군데의 馬場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개경. 貞州. 江陰 등 제일 중요한 마장 세 군데에 만 2명씩의 牧監將校와 십 수 명의 看守軍들이 파견되어 있었다.9) 이 점으 로 미루어 보면 고려 초기에 마장 한 군데에서 기르고 있었던 말의 수효는 아무리 많아도 수 백 필을 넘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상 한반도는 풍토 적으로 말 사육에는 부적합한 지역이었다. 산지가 많아 목초지가 부족한데다 가 겨울에는 말들이 뜯어 먹을 풀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였다. 또한 고 려 의종 때 정해진 전국 목장에서의 畜馬飼料規定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전 마 4만 필의 사료용 콩만도 매달 2만 5천 가마가 소요될 것이었다.10) 자연경 제단계의 당시 농업생산력의 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만한 분량의 콩 생산 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조대 경군 가운데 마군이 4만 명이었다는 《高麗史》의 기록은 문자 그대로 믿기 어렵다.

셋째로 일리천 전역에 출전한 고려 경군이 6만여 명이었다는 《高麗史》의 주장은 전술적 관점에서 고찰해 보아도 매우 부자연스럽다. 태조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天安으로 내려 와서 忠州 방면으로 우회한 다음 鷄笠嶺을 넘어 선산의 일리천으로 기동하였다. 태조가 이와 같이 천안에서 대우회 기동을 한 것은 아마도 충주지역의 호족들을 비롯해 낙동강에 연한 舊新羅系 호족들로 부터 군사들과 군량미를 지원받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11)《高麗史》의 기록대로라면 태조는 그의 정부군 6만 3천 명과 북방 유목종족의 기병 9천 5백 명을 이끌고 천안에서 계립령을 거쳐 선산의 낙동강(일리천)까지 대략

^{9)《}高麗史》 권 83, 志 37, 兵 3, 看守軍.

¹⁰⁾ 鄭景鉉, 앞의 글, 26쪽.

¹¹⁾ 鄭景鉉、〈高麗太祖의 一利川 戰役〉(《韓國史研究》68, 1990), 3~7쪽.

180km를 행군해 간 것이다. 그런데 후삼국시대의 지방 및 산간의 도로사정이 매우 황폐되어 있었음을 감안해 볼 때, 그 병력은 일렬 종대의 대형으로 행군해 갈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12) 약 5만 명의 기병과 2만여 명의 보병이 일렬 종대로 행군할 경우 그 대열의 총 길이는 무려 200km 정도에 이른다. 그렇다면, 7만여 명에 달하는 태조군의 행군대열 길이는 그들의 행군로 길이보다도더 길었던 셈이 된다. 이것은 전술적으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3)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문제점은 일리천 전역에 출동했다는 병력수가 그 이전의 통상적인 출전 병력수에 비해 갑자기 열 배 정도로 늘어났다는 점이다. 일리천 전역 이전,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는 여러 차례의 전투가 있었고 그 중에는 태조와 甄萱이 직접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출전하여 격돌한 경우들도 있었다. 그러나 《高麗史》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들 전투에 출동한 양측의 병력 규모는 대부분 5천 명 미만이었고 만 명의 병력이 출전한 경우는 단 한 번 뿐이었다.14) 물론 이같은 대략적인 병력수들은 그것이 다소 과장된 것임을 암시하지만, 여하튼 그러한 통상적 출전병력수에 비추어 볼 때 일리 철 전역에서의 6만 3천 명은 너무나 비약적으로 증강된 병력수인 것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쟁사에서 주요 전투에 출동한 피아의 병력수가 과장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는 허다하며, 그와 같은 현상은 일반적으로 고대사서일수록 더욱 심하다.15) 옛날 사람들일수록 만 단위 이상의 대규모 숫자에 대한 정확한 관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승리를 미화하고 패배를 변명하기위해 피아의 병력수를 쉽사리 침소봉대하고 쉽사리 믿어버리는 경향이 크기때문이다. 일리천 전장에서의 태조군 부대편성에 관한 《高麗史》의 기사내용은 비교적 상세한 편이다. 그러나 전장에서의 병력수에 관한 기록은 그 내용이 상세하다고 해서, 혹은 보다 옛날의 기록이라 해서 무비판적으로 믿어버릴 것은 아니다. 일리천 전장에서의 태조군의 부대편성에 관한 기록은 이미고려 인종대에 편찬된《三國史記》에도《高麗史》와 같은 정도로 상세하게 전

¹²⁾ 鄭景鉉, 앞의 글(1992), 29쪽.

¹³⁾ 鄭景鉉, 위의 글, 29~30쪽.

¹⁴⁾ 鄭景鉉, 위의 글, 32쪽.

¹⁵⁾ H. Delbrück, 앞의 책, 30쪽.

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기록된 태조측의 총 병력수는 무여 총 10만7천5백 명이었다.¹⁶⁾ 이같이 《高麗史》나 《三國史記》의 병력수 기록들이 모두 과장되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것은 각각의 근거 자료가 전설적인 것이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¹⁷⁾

그렇다면 태조대 경군의 실제적인 병력수는 어느 정도였을까.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고려의 병력수가 후백제의 그것에 절반 정도였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사실은 태조 19년(936)에 견훤이 그 아들에게 말한 내용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이 늙은 아비가 신라시대에 후백제를 세워 지금에 이르렀다. 병력수는 北軍(고려군: 필자주)의 두배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불리했으니 이것은 하늘이고려를 도왔기 때문이다(《三國遺事》권 2, 紀異 2, 後百濟 甄萱).

실제로《高麗史》의 기록을 보더라도 고려와 후백제와의 전투에 있어서 일 반적으로 후백제측이 좀 더 공세적이었다. 태조가 神劍軍과의 결전을 위해 북방 유목종족의 기병까지 동원하고 다시 천안에서 충주방면을 경유, 옛 신 라지역인 일리천으로 크게 우회 기동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후백제에 대한 병력의 상대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일리천 전역 당시 신검의 후백제군은 아무리 많아도 2만 명을 넘지는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이 전투에서 신검의 후백제군은 접전 직후 8천 9백 명의 병력손실(전사자 5,700명, 포로 3,200명)을 당하자 곧바로 궤멸되었기 때문이다.18) 이것은 태조측에 의해 주장된 전과라서 다소 과장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여하튼 신검이 9천 명 정도의 병력 손실을 당하자 더이상의 저항을 못하고 항복하고 말았다는 것은, 이 전투에 동원된 후백제군의 총 병력규모가 손실병력의 두 배, 즉 2만 명을 넘지는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리고 이 병력 가운데에는 지방 각지에서 모은 농민군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태조대 고려의 경군병력은 아무리

^{16)《}三國史記》 권50, 列傳10, 甄萱.

¹⁷⁾ 고려 태조대에서 목종대까지의 實錄 원본은 현종 초 거란군이 개경을 함락했을 때 모두 불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현종은 黃周亮으로 하여금 각지를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케 하여, 태조대에서 목종대까지의 역사를 다시 편찬하였다고 한다(《高麗史》권 95. 列傳 8. 黃周亮).

^{18) 《}高麗史》 권 2, 世家 2, 태조 19년 9월.

많다 하더라도 만 명 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고려 건국기 개경의 인구사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고려시대 개경 일원의 인구는 최대 2만 호를 초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설령 2만 호의 인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2만 호가 모두 전업적인 군인의 家戶 곧 軍戶였다고 상정할 수는 없다. 군호는 전체 호수의 1/3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19) 그러므로 태조대 경군의 규모는 최대로 잡아 6천 명 정도였다고 볼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이론적추정치는 《高麗史》가 전하는 태조측 군대의 통상적인 출전병력 규모가 넉넉잡아 5천 명 정도였다는 사실과 엇비슷하다.

(2) 태조대 경군의 편제

태조대의 경군은 별도의 명칭이 없는 세 개의 마군부대와 특정한 명칭을 지닌 다섯 개의 보군부대들(지천군, 보천군, 우천군, 천무군, 그리고 간천군)로 편제되었던 것으로 상정되어 있었다.²⁰⁾ 이것은 〈표 1〉의 내용에 근거한 추론이었다. 그러나 〈표 1〉의 내용을 직접적인 근거로 하여 경군의 편제를 그같이 상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

첫째, 부대의 고유명칭이 보군부대에만 있고 마군부대에는 없었다는 점이다. 보군부대보다는 마군부대가 전투력의 면에서나 유지 관리의 측면에서 훨씬 더 고급의 부대였을 터인데도 고유한 부대 명칭들이 없었다는 것은 지천군이니 보천군이니 하는 보군부대의 부대명칭들이 제도적인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었음을 시사한다.

둘째로, 支天軍을 비롯한 다섯 개 부대명칭들은 오직 태조 19년(936) 9월 의 신검 토벌전에 관한 기록에서만 보이고 있다. 그러한 부대명칭들은 그 이 전이나 그 이후의 기록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만일 그것들이 경군의

^{19) 《}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신우 9년 8월. 고려 전·후기를 막론하고 농민들의 열악한 생계 형편에는 별 변화가 없었을 것인 만큼 고려 전기의 軍戶 편성 또한 三家一戶의 원칙에 의거했을 것이다.

²⁰⁾ 李基白,《高麗兵制史研究》(一潮閣, 1968), 51等. 洪承基, 앞의 글, 31等. 朴龍雲,《高麗時代史》上(一志社, 1985), 283等.

제도화된 부대 명칭들이었다면 그러한 제도명들이 신검토벌 이전의 수많은 전투에 관한 기록 속에 언급되었을 법도 한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이 것은 지천군대장군 따위가 특별한 출병이나 작전이 있을 때에 한하여 그 최고장수에게 임시적으로 부여되는 직함이었음을 시사한다. 태조 18년 태조가나주를 경략하기 위해 마군장군 유금필을 출전시키면서 그에게 都統大將軍의 직함을 임시로 부여했던 사실이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21)

셋째로, 지천군대장군을 비롯한 다섯 개 보군대장군 칭호에는 한결같이「天」자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그 부대들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반군 토벌에 나선 군대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구체적 사례가《三國史記》신라본기에서 확인된다. 즉 신라 헌덕왕 11년(819) 왕은 당나라의 요청에 따라 李斯道의 반군을 토벌하기 위한 응원군을 출동시켰다고 하는데 이 때 반군토벌군 사령관에게 부여된 직함이「順天軍大將軍」이었던 것이다.22) 물론신라에는 순천군이라는 편제부대가 없었다. 따라서「순천군」은 반군토벌을위해 출동하는 병력에 대해 대의명분으로 붙여진 임시적이고 상징적인 명칭이었다. 이같은 예에 따라 지천군대장군 등의 칭호들을 해석해 볼 때, 그것들 역시「天命」을 받은 태조의 명령에 따라「賊子」인 신검의 반군을 토벌하기 위해 출전한 여러 병력의 지휘관들에게 부여된 임시적이고 상징적인 직함들이었다고 판단된다.23) 그러므로 태조대 경군의 편제는 병력수의 경우와마찬가지로 보다 믿을만한 다른 근거에 입각해 추론하지 않으면 안된다.

태조대 경군의 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대 무관들의 직제를 살펴 봄이 좋을 것이다. 중앙군의 부대편제는 무관직제와 상호 표리관계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종대 이후 무관의 관직체계는 중앙군의 6위편제에 대응하여 제정된 것이었다. 마찬가지로 태조대 무관들의 직제 역시 당대경군와 편제에 대응하여 제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대조대 무관직제에 대해서는《高麗史》권 77, 百官志 西班條에 "대조 초에 馬軍將軍·大將軍이 있었으니 이것이 武職이었다"고만 기록되어 있을 뿐 더

^{21) 《}高麗史》 권 92, 列傳 5, 庾黔弼.

^{22) 《}三國史記》권 10, 新羅本紀 10, 헌덕왕 11년 7월.

²³⁾ 鄭景鉉, 앞의 글(1992), 37쪽.

이상의 해설은 없다.²⁴⁾ 그러나 당대의 연대기에는 마군장군과 마군대장군의 구체적인 예들이 나올 뿐 아니라 海軍將軍・內軍將軍 등의 무관직을 지닌 장수들의 예도 확인된다.²⁵⁾ 보군장군의 직은 사서에는 비록 그 구체적 예가 보이지 않지만 마군장군과 해군장군의 직제가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실재했었을 것이다. 마군・보군・해군은 전투를 위한 병력이었던 반면 내군은 왕의 신변을 경호하는 병력이었다.²⁶⁾ 이같이 태조대의 장군급 무관직제가 마군, 보군, 해군, 내군의 네가지 병력에 따라 설치되었다면, 경군의 편제 또한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병종별로 이루어졌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태조대의 경군은 개경 일원을 본거지로 하는 정부직속군이었다. 《高麗史》에는 태조 19년 9월의 후백제와의 결전(일리천 전역) 당시 고려측 출전병력의 규모와 편제에 관한 기사가실려 있다. 그리고 종래의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 기사를 근거로 하여 태조대 경군의 규모와 편제를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그 기사가 전하는 병력수와부대편제의 내용은 당대의 역사적인 여러 여건이나 구체적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 너무나 거리가 멀거나 모순된 것이었다.

그 기사는 태조대 경군의 규모를 6만3천 명이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숫자는 하나의 전설로서 지나치게 비현실적으로 과장된 것이었다. 태조대 경군의 규모를 제약했던 결정적 요인은 당시 개경 일원의 인구 규모였을 것이다. 고려시대 수도권 인구에 대한 통계기록은 전해지지 않지만 조선조 세종대수도권 인구가 2만 호였음을 감안할 때 결코 그보다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태조대 개경 일원의 인구는 2만 호를 훨씬 밑도는 규모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조대 경군의 규모는, 가령 3家戶당 1명의 정규군인이 차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최대 6천 명을 초과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같은 추정치는 비록 이론적이긴 하나 일리천 전역 이전 고려와 후백제의 통상적인 출전병력 규모가 5천 명 미만이었다는 사실과 부합된다.

《高麗史》에 의하면, 대후백제 결전 당시 고려 경군이 두 개의 마군부대와

^{24) 《}高麗史》 권 77, 志 81, 百官 2, 西班.

²⁵⁾ 鄭景鉉, 앞의 글(1988), 134~142쪽.

²⁶⁾ 李基白, 앞의 책, 56쪽.

다섯 개의 보군부대(지천군·보천군·우천군·천무군·간천군)로 편성되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부대편성과 명칭은 상설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검 토벌을 명분으로 한 일리천 전투 당시에 임시적으로 사용된 것이었다. 하나의 제도로서 경군의 기본편제는 무장들의 관직제도와 표리관계를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태조대 무장들의 관직은 장군급 이상에만 병종별로 설치되어 있었으니 마군장군·보군장군·해군장군, 그리고 내군장군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경군 또한 마군·보군·해군, 그리고 내군 등의 네가지 병종별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군이나 해군은 나름대로의 전업적 전투기술이 필요한 군인들이었다. 그리고 국왕의 신변경호와 궁궐경비의 병력인 내군 또한 별도의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군인들이었다. 태조가 그의 직속병력을 이같이 병종별로 구분하여 운용한 것은 무엇보다도 후백제군과의 전투 및 영토확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2) 2군 6위제의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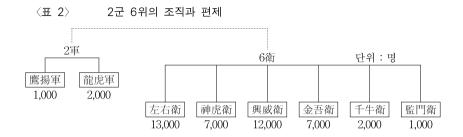
(1) 6위와 2군의 설치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태조대 개경 거주의 전문적 군인들은 최대로 잡아 6천 명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병력은 마군·보군·해군, 그리고 내군 등 네 가지 병종별로 구분되어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왕조 개창기이자 전란기였던 태조대는 지방사회에 대한 정부권력의 침투가 거의 불가능하였다. 태조대의 경군조직은 무엇보다도 그같은 시대적 여건의 산물이었다. 그러나 태조의 후계자들은 지방사회에 대한 중앙의 정치군사적 통제력을 계속 강화시켜 정부직속군의 규모·편제 등을 정비하였다. 그결과 성립된 고려조의 정형화된 중앙군제가 2군 6위제도였다. 2군 6위란 중앙군을 이루는 8개 부대의 총칭으로서 2軍은 鷹揚軍과 龍虎軍을, 6衛는 左右衛・神虎衛・與威衛・金吾衛・千牛衛, 그리고 監門衛를 가리킨다.

후술하듯이 지위상으로는 2군이 6위보다 상위의 부대들이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는 6위가 2군보다 먼저 설치되었을 뿐 아니라 편제 병력의 규모 또한 2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편제상으로 보면, 중앙군 전체병력

(45,000명)의 93%(42,000명)가 6위에 소속되었다.



6위를 주축으로 하는 이같은 중앙군 조직은 왕조 개창기인 태조대의 경군조 직과 비교할 때 두가지 특징을 지닌다. 하나는 중앙군의 제도적 형식이 당의 중앙군제인 府衛制度(혹은 府兵制度)를 모델로 하였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편제병력의 규모가 대폭 증강되었다는 점이다. 이같은 변화는 광종대부터 중 국식 국가체제를 모델로 추진된 집권화정책의 한 결과로서 이해된다.

2군과 6위가 정확히 언제 어떤 경위로 설치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高麗史》 백관지 머리말 부분에는 2군 6위의 설치 연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태조) 2년에 6위를 설치하였다. 목종 5년에 6위의 직원들을 배치하였다. 그후에 응양군과 용호군 2군을 설치했는데 2군은 6위보다 지위가 높았다(《高麗史》권 77, 志 31, 百官 2, 西班).

앞 절에서 비판했듯이 태조 2년에 6위가 설치되었다는 부분은《高麗史》 편찬자의 어떤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목종 5년에 6위의 직원들을 배치했다는 부분은 "목종 5년 5월 6위의 군영을 짓고 직원과 장수들을 배치했다"고 한《高麗史》 兵志의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기록 가운데에서는 응양・용호의 2군이 6위보다 나중에 설치되었다고 한 부분만이 사실이었던 셈이다.

그러면 6위와 2군은 언제 어떤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설치된 부대들이었을 까. 먼저 6위가 실재했음을 전해 주는 최초의 기록은 목종 원년에 개정된 文 武兩班及軍人田柴科(문무양반과 군인들에 대한 보수규정)에서 발견된다. 그 규정을 살펴보면 '六衛長史'가 田地 45결과 柴地 22결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27) 따라서 적어도 목종 원년에는 이미 6위의 부대조직이 편성되어 있었음이 분명하다.

이 전시과규정은 목종이 즉위한지 불과 2개월 만에 개정된 것이다. 때문에 6위는 적어도 목종이 즉위하기 이전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목종의 전왕은 성종(981~997)이었다. 성종은 당제를 모델로 하여 중외의 행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고려조 나름의 집권적 통치체제의 항구적 기반을 마련한 군주였다. 중앙의 3성・6부의 설치, 지방의 鄕吏職 개편과 12牧 설치를 비롯한 행정구역의 정리, 상주외관의 파견 등은 모두 성종대에 처음으로시행한 제도들이다. 그러므로 당의 중앙군제를 본뜬 고려의 6위제도 또한 성종대에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면 6위가 설치된 보다 정확한 시기를 성종 14년 (995)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해에 성종은 당나라식의 지방행정제도를 본따서 종래의 12州牧을 12軍으로 개편하고 각 군마다 牧使 대신 節度使들을 파견·배치함으로써 지방사회에 대한 군사행정적 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였기 때문이다. 고려정부는 이들 절도사들을 통하여 지방사회로부터 대량의 병력자원을 새롭게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며 그 결과 중앙군의 병력편제 또한확대 개편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게 해서 설치한 중앙군 편제가 아마 6위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성종 14년 6위가 설치되기 전까지는 중앙군이 어떤 방식으로 편제되어 있었을까. 태조대의 경군조직이 그 때까지 그대로 지속되었을 것 같지는 않다. 성종 14년이면 태조가 죽은 지 약 50년 후인데다가 중국식 관제의 도입과 집권화 시책은 이미 광종대부터 꾸준히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高麗史》에는 성종 9년의 기사 가운데 '절충부 別將'과 같은 부병제식의 무관직을 지닌 한 개인이 언급되고 있는데²⁸⁾ 이것은 당시의 중앙군 병력이 이미「衛」단위로 편제되어 있었음을 시사한다.

^{27)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28) 《}高麗史》 권 3, 世家 3, 성종 9년 9월.

부병제와는 전혀 무관한 방식으로 편제되었던 태조대의 경군조직이 최초로 「衛」단위의 편제로 조정되기 시작한 시기는 빠르면 광종대가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태조대 특유의 정치제도가 처음으로 중국풍의 그것으로 개편되기 시작한 시기가 광종대였기 때문이다. 광종은 중국 後周의 통치제도를 본따 왕권을 강화시켜 나간 군주였다. 그는 과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문관 우위의 관료체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는 한편 태조대 이래의 공신급 무장들의대부분을 모반 혐의로 처형하였다. 군사적인 면에서는 徇軍部를 軍部로, 內軍을 掌衛部로 개정하였다. 또한 지방의 주·군에서 풍채좋은 장정들을 선발하여 중앙의 시위군 병력을 크게 증강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당대에 이미 국왕의 직접적인 통치권이 지방사회에 침투하기 시작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29)

광종대의 정치적 분위기가 이와 같은 것이었다면 경군의 편제방식에도 어떤 변화가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통일전쟁기였던 태조대에는 경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전투의 수행에 있었지만 왕권강화를 도모한 광종대에는 왕실의 경호가 경군의 일차적 임무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태조대 이래의 勳舊宿將들이 대거 처형당하고30) 지방에서 선발된 장정들이 중앙의 시위군으로 새로 편입하는 등 경군의 인적 구성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광종은 군사부문에 있어서의 이같은 사태변화를 어떤 새로운 제도로서 수습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비록 미숙한 형태로나마 중국식의 중앙군제 즉府衛制度를 도입하지 않았을까 추측하게 된다. 그러므로 태조대의 경군조직은 광종대에서 성종 초에 걸쳐 중국식 부위제도를 지향해 부분적으로 개편하다가 성종 14년에 이르러 마침내 6위제도로 정형화하였던 것으로 요약된다.

이번에는 2군(응양군과 용호군)의 설치경위에 대하여 살펴 보자. 2군이 언제어떻게 해서 설치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기록이 없다. 다만 이들 2군이 6위보다 나중에 설치된, 그러나 6위보다는 상위의 부대들이었다는 기록만이 전한다.31)

한편《高麗史》를 살펴 보면 현종 8년(1017)조의 기사 속에 2군 소속의 특

²⁹⁾ 鄭景鉉, 앞의 글(1992), 89~90쪽.

^{30) 《}高麗史》 권 93, 列傳 6, 崔承老.

^{31)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西班.

정 무관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 보인다.32) 따라서 2군은 목종 5년(1002) 이후 현종 8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설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高麗史節要》목종 12년(1009) 정월조 기사에는 '親從將軍 庾方'이라는 인물이 보이는데 친종장군이란 응양군과 용호군 소속 장군들의 별칭이었다.33) 때문에 2군의 설치시기는 일단 목종 5년에서 11년 사이가 아니었을까 하고 추측해 볼 수 있다.34)

그러나 목종대에 2군이 설치되었으리라는 추측에는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 하나의 군사조직이 새롭게 창설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인적,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게다가 2군은 왕을 측근에서 경호하고 의장하는 부대들이었다. 그러므로 고려정부가 6위 이외에 별도로 이같은 친위 부대들을 새롭게 편제했을 때에는 그렇게 해야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왕을 경호하는 병력을 크게 증강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라든지 혹은 군사조직 전반의 개편사업의 추진과 같은 정책적 변화같은 것이 그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볼 때 목종대에는 6위 이외에 추가로 2군을 설치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던 시대였다.

그렇다면 목종대의 기사 속에서 「친종장군」이 보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2군의 장군들이 천종장군이라 불리기도 한 것은 親從—국왕에대한 護衛侍從—이 바로 그들의 고유임무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응양군 장군이니 용호군 장군이니 하는 것은 그들의 소속부대에 따라 부여된 명칭들이었다. 하지만 친종하는 장군들은 2군이 설치되기 이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2군 설치 이전 이들 친종하는 장군들의 명칭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그 임무에따라 천종장군이라 일컬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2군이 창설되면서 종래의 친종장군들이 응양군 장군이니 용호군 장군이니 하는 소속부대별 명칭으로도 일컫게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해 보면, 목종대 기사에친종장군의 구체적 예가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근거로 당시에 2군이 설치되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³²⁾ 李基白, 앞의 책, 68쪽.

^{33)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西班 鷹揚軍.

³⁴⁾ 洪承基, 앞의 글, 38~39쪽.

고려정부가 기존의 6위 이외에 별도로 2군을 설치한 것은 그렇게 해야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같은 사정은 목종대가 아니라현 종대의 역사속에서 보다 적절히 지적될 수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현종은 그 원년에 거란군의 대규모 침입을 당하여 나주로 피난을 가야만했다.이때 현종은 그를 수행하던 50여 명의 禁軍이 도중에 거의 다 逃散하는 바람에 賊徒들의 피습을 당하는 등 시종 신변불안으로 전전긍긍하는 피난생활을하지 않을 수 없었다.35) 거란군은 이듬해 정월 개경을 함락한 직후에 고려정부와 강화를 맺고 퇴각했으나 개경의 궁궐과 민가, 그리고 모든 공문서들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있었다.36) 사태가 그러했다면 막대한 수의 개경주민들이 살상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것이고 그에 따라 개경 일원에 거주하는군인들을 기반으로 한 국왕 시위군 병력 또한 거의 다 상실되었을 것으로짐작된다. 중앙군 조직에 있어서의 이같은 피폐상이, 현종 6년(1014) 상장군최질, 김훈 등이 諸衛의 군사들을 선동해 정변을 일으킬 수 있었던 시대적배경의 하나로서 작용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고찰해 볼 때, 고려정부가 기존의 6위 이외에 별도로 두 개의 시위군 부대 즉 응양군과 용호군을 신설했을 법한 가장 적절한 시기는 목종대가 아니라 현종 초 거란군의 침략을 당한 직후였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高麗史》에서 응양군과 용호군의 칭호는 현종 8년과 9년조의 기사에서 최초로 언급되고 있다.37) 반면 그 이전 시기의 역사기록에서는 2군의 칭호가보이질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2군 소속 장군들의 별칭이 친종장군이었고 친종장군에 대한 최초의 구체적 언급이 목종대 기사에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친위군부대가 별도 신설되었어야 할 현실적인 조건에 비추어 볼 때, 2군이 편제된 시기는 목종대보다는 현종대였을 가능성이 크다.38)

고려 전기 2군 6위의 중앙군 조직의 성립과정에 대한 이상의 고찰은 다음 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고려 건국기이자 통일전쟁기였던 태조대의 경군은

^{35) 《}高麗史節要》권 3. 현종 원년 12월 · 2년 춘 정월.

^{36) 《}高麗史》 권 95, 列傳 8, 黃周亮.

³⁷⁾ 李基白, 앞의 책, 68쪽.

³⁸⁾ 李基白, 위의 책, 80~81쪽.

그 규모가 최대 6천여 명 정도였다고 추정되며 그 병력은 전투목적상 보 군·마군·해군, 그리고 내군 등의 네 가지 병종별로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종대부터 중국식의 집권적 통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고 지방사회의 병력자원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강화되어 나감에 따라 중앙군의 편제는 서서히 당나라의 부병제도를 지향하는 방식으로 개편되어 나갔고 병력 규모 또한 점진적으로 불어나게 되었다. 그러한 추세는 성종대에 접어들어 획기적으로 진전되었으며, 성종 14년 고려정부는 중앙과 지방에서 확보한 4만 2천 명의 대규모 병역자원을 토대로 외형상 당나라 12위 군제의 축소판인 6위 군제를 성립시켰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현종 초 거란군의 침략으로 중앙군 조직이 지리멸렬해지고 특히 친위군 병력 즉 친종병력의 대부분이 상실되자 고려정부는 국왕의 친위군을 재정비 강화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여 기존의 6위와는 별도로 그리고 보다 상위의 친위군 부대들로서 응양군과 용호군을 添設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고려 전기 중앙군 조직의 정형인 2군 6위의 군제는 대체로 이러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 성립된 것으로 이해된다.

(2) 2군 6위의 임무와 병력편제

2군(용양군과 용호군)은 국왕에 대한 의장과 경호를 전담하는 친위군 부대들이었다. 2군의 상·대장군은 近仗 上·大將軍으로, 장군은 親從將軍으로불리기도 했는데,39) 근장과 친종은 의장과 경호를 뜻한다. 용호군은 충선왕대에 한동안 親禦軍이라 개칭된 일도 있었다.40) 또한 의종대에 제정된 의장및 경호 규정에 의하면, 法駕儀仗 때에는 무장한 응양군 군사들과 용호군 소속의 기병들이 임금의 수례를 호위하도록 되어 있었다.41) 2군의 임무가 이같이 국왕을 측근에서 호위하고 의장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친위군 부대의 지위는 6위의 그것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다.

응양군과 용호군은 병력규모가 서로 달랐는데, 무관을 제외하고 보면 응양

^{39)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西班 鷹揚軍.

^{40)《}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西班 龍虎軍.

^{41)《}高麗史》 권 72, 志 2, 輿服, 儀衛 法駕衛仗.

군은 1천 명(1額), 용호군은 2천 명(2額)의 병사들로 편제되었다. 그러나 고려의 군제에 관한 기록에서는 항상 응양군이 용호군보다 먼저 언급되고 있으며, 西班(武班)의 우두머리는 제도상 응양군 상장군이 겸하도록 되어 있었다. 42) 그러므로 응양군은 2군 6위의 중앙군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는 친위군부대였음을 알 수 있다.

뒤에 언급하겠지만 6위 중의 하나인 천우위 또한 국왕 호위를 담당하는 부대였다. 그런데《高麗史》에는 국왕의 의장 및 경호를 담당하는 군인들에 대한 또 다른 명칭들이 보인다. 控鶴軍・牽龍軍・中禁軍・都知. 그리고 白甲 등이 그것이다. 공학군은 외국사신이 왔을 경우 문서나 예물을 받들고 국왕 과 사신 사이를 왕래하는 군인들이었다.43) 견룡군은 국왕 행차 때에 의장대 열 속에서 말을 부리는 군사들이었다.40 중금군, 도지, 백갑 등도 다소간의 차이는 있어도 국왕의 의장 혹은 경호를 맡아 보는 전문적 군사들이었다. 그 런데 이런 명칭의 군인들이 조직 구성상 응양군ㆍ용호군, 혹은 천우위와 어 떤 관계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만일 공학군 등이 2군이나 천우위와는 무관 한 별도의 친위군 부대들이었다면 그 각각은 나름대로의 무반조직을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무백관의 관직제도 전반을 기술한《高麗史》百官志 에는 2군 6위 외에 공학군이니 견룡군이니 하는 별도의 부대명칭들은 보이 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 공학군ㆍ견룡군ㆍ중금군ㆍ도지, 그리고 백갑 등은 2 군 소속의 군사들에게 부여된 보다 세분화된 임무별 명칭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의종 24년(1170) 무신란 주동자의 한 사람이었던 견룡군 散員(정8 품) 이의방이 거사 직후 응양용호군 중랑장(정 5품)으로 越階한 것도 견룡군 이 2군 소속의 군인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45)

2군보다 아래의 지위에 있는 중앙군 조직은 6위(좌우위·신호위·홍위위·금 오위·천우위, 그리고 감문위)였다. 이들 6위는 다음 〈표 3〉과 같이 앞의 3위(좌 우위·신호위·홍위위)와 뒤의 3위(금오위, 천우위, 감문위) 사이에는 몇가지 기

^{42) 《}高麗史》 권 77. 志 31. 百官 2. 西班 鷹揚軍.

^{43)《}高麗圖經》 권 11, 仗衛 控鶴軍.

^{44) 《}高麗圖經》 권 12, 仗衛 2, 左右衛 牽龍軍.

^{45)《}高麗史》 권 128, 列傳 41, 叛逆 2, 李義方.

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우선 전자의 병력수(무관을 제외한 병사의 수)가 후자의 그것보다 압도적으로 많게 편제되어, 2군 6위 전체 병력수(45,000명)의 71%(32,000명)가 좌우위·신호위, 그리고 흥위위 소속의 군인들이었다. 구성 병력의 성격을 보면, 전자의 3위 군인들은 동일하게 保勝軍과 精勇軍의 두 가지 부류의 군인들로 편제된 반면 후자의 3위는 각기 상이한 부류의 군인들로 편제되어 있었다. 부대명칭에 있어서도 양자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즉전자(좌우·신호·홍위)는 모두가 고려 특유의 중앙군 부대명칭들인 반면 후자(금오·천우·감문)는 모두가 중국식 중앙군제에서 차용된 부대명칭들이었다. 6위가 이같이 크게 두 가지 범주의 부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들 각각의 임무를 이해하는데 유리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표 3⟩

6위의 병력구성

부 대 명	병 력 구 성	부 대 명	병 력 구 성	
좌 우 위	보승군 10령 정용군 3령	금 오 위	정용군 6령 역령 1령	
신 호 위	보승군 6령 정용군 5령	천 우 위	상 령 1령 해령 2령	
흥 위 위	보승군 7령 정용군 5령	감 문 위	1령	
7	ll 32령(32,000명)	계 11령(11,000명)		

금오·천우·감문의 3위의 임무는 각각의 부대명칭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금오위는 漢代 이래로 도성 치안 및 경찰 임무를 맡는 중앙군 부대에 부여 되었던 명칭이었다. 고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高麗史》나《東文選》같 은 사료에는 금오위가 도성을 순찰하고, 常道와 풍기를 문란케 하는 자들을 단속하며, 죄수들을 처리하는 일을 담당한 구체적 사실들이 나오고 있다.46)

금오위는 정용군 6령과 역령 1령 등 7령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정용군과 역령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금오위의 병력이 왜 이런 식으로 편제되었는지 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역령은 아마도 죄수들의 감시를 전담하는 군인들이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하나의 추측일 뿐이다.⁴⁷⁾ 그러나 금오

^{46) 《}高麗史》 권 8, 世家 8, 문종 13년 3월.

[《]東文選》 권 25, 盧之正金吾衛上將軍官誥.

[《]高麗史節要》권 9. 인종 9년 6월.

⁴⁷⁾ 李基白, 앞의 책, 90쪽.

위의 임무의 성격상 그 조직에는 반드시 개경 거주의 전업적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며, 그들은 비록 말단의 지위이지만 문무관료들처럼 소정의반대급부를 받는 군인들이었을 것이다. 문종 30년(1076)에 개정된 田柴科(문무양반 및 군인들에 대한 토지급여규정)에 보이는 '役步軍'이라는 부분이 '役軍 및步軍'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이 경우의 役軍은 금오위 소속의 역령일 것으로 판단된다.48)

금오위와 마찬가지로 천우위 역시 그 명칭은 중국식 병제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본래 천우란 국왕을 경호하는데 사용하는 칼로서, 중국에서는 천우도를 가지고 국왕을 호위하는 군사들을 千牛備身이라 하였다. 비신은 신변경호를 뜻하는 말이었다. 고려에서도 천우위장군의 별칭이 천우비신장군이었다. 또한李奎報의 《東國李相國集》에는 천우위가 왕을 숙위 시종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그 군사들은 주로 고관자제들 가운데 용의가 수려한 자들로서 선발되었다고 전하고 있다.49) 이와 같이 천우위는 국왕의 신변 경호를 담당하는 부대였던 것이다.

천우위는 常領 1령과 海領 1령 등 2령의 군사들로 편제되어 있었다. 상령과 해령이 어떻게 다른지는 분명하지 않다. 명칭의 뜻을 가지고 추측해 보건대, 상령은 상시 시종숙위하는 임무를 맡도록 되어 있었던 군사들인 반면 해령은 해군의 기능을 가진 경호군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를테면 해로를 통해입국하는 중국사신의 영접행사라든지 국왕이 강으로 행차하여 배를 타야할경우 등에는 해령의 군사들이 동원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천우위소속의 군사들은 그 임무의 성격과 출신성분으로 보아 개경 거주의 전업적군인들일 수 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 군역의 대가로 소정의 토지를 받았을 것이다.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고 복역하였던 중앙의 「海軍」은 아마도 이들해령에 속하는 군인들이었을 것이다.50)

^{48) 《}高麗史》는 田柴科 지급대상자들의 직함이나 신분 명칭들을 하나 하나 띄어 쓰지 않고 연달아 표기해 놓았기 때문에 각각을 정확히 구분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다. 예컨대 "…典設役步軍…" 등이 그러한 부분인데, 이를 '典設役・步軍'으로 읽어야 할지 '典設, 役・步軍'이라 읽어야 할지는 그다지 분명치 않다.

^{49)《}東國李相國集》到 33. 申盲胄讓千牛衛攝大將軍不允批答.

⁵⁰⁾ 鄭景鉉, 앞의 글(1992), 106쪽.

감문위의 임무는 명칭 그대로 도성문의 수위였다. 감문위 소속의 군인들은 편제상 1령이었으나 항상 도성의 각 문에 배치되어 있어야 할 감문군의 수효는 75명인 것으로《高麗史》에 기록되어 있다.51》도성문의 수위는 특별한전투 기술이나 체력이 요구되는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감문위에는 본래의감문위 소속 군인들 이외에 병들고 늙은 무의탁 군인들도 70세가 될 때까지한시적으로 배속되어 있었다.52》감문위의 군인들은 비록 그 상대적 지위는가장 낮았지만 역시 일정한 토지를 지급받고 군역에 종사하는 전업적 군인들이었다. 문종 30년에 개정된 전시과는 모두 18등급으로 구성되는데 감문위군사들은 이 중 17등급으로서 20결의 토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53》

금오위·천우위·감문위의 경우와 달리 좌우위·신호위·홍위위 등 3위의임무는 그 명칭만 보아서는 알 수 없다. 이들 3위는 중앙군 조직에 있어 편제병력의 규모가 가장 큰 부대들이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모두 보승군과정용군의 두 부류의 군사들로 편제되어 있었다. 이것은 이 3위의 군사들이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군역을 부담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이들 3위의 공통된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응양군과 용호군의 2군, 그리고 금오·천우·감문 등의 3위는 국왕 경호와 도성 치안을 위한 군사조직이었다. 그러나 고려정부로서는 그러한 군사조직뿐 아니라 반드시 국토방위와 변경수비를 주목적으로 한 직속군대를 편성·운용하고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고려정부는 태조대 이래 줄곧 정부직속군을 북방의 국경지대(兩界地方)로 보내서 防戍토록 하였다.54) 국경지대는 광범위한 데다가 防戍軍의 복무는 윤번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방수를 기본임무로 하는 중앙군 부대는 자연히 그 병력 규모가 방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중앙군 전체 병력의 71%를 점한 좌우위·신호위, 그리고 흥위위 등의 군사들은 무엇보다도 국토방위를 위해 편성·운용된 병력들이었다고 판단된다. 靖宗 2년(1036) 7월 변경에 방수하러 간 '諸衛의 軍人들'가

^{51) 《}高麗史》 권83, 志37, 兵3, 衛宿軍.

⁵²⁾ 吳英善, 〈高麗前期 軍人層의 二元的 構成에 관한 研究〉(서울대 석사학위논문, 1981), 19~22쪽.

^{53)《}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54)《}高麗史》 권93, 列傳6, 崔承老.

운데 자기농토(名田)가 부족해 궁핍한 자들에게 公田을 加給토록 한 왕명이 있었는데55) 여기서의 제위의 군인들은 필시 좌우·신호·홍위 등 3위에 소속된 군사들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다른 잡역에도 수시로 정발되었을 것이나, 그들에게 부과된 주된 군역은 역시 국경지대의 방수였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2군 6위 각각의 임무와 병력편제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2군은 금군, 곧 국왕을 호위하고 의장하는 친위부대들이었다. 그리고 천우위 역시 국왕을 측근에서 경호하는 친위군 부대였다. 2군은 친위군 강화의목적으로 천우위가 설치된 이후에 추가로 창설된 부대들이었지만 지위의 면에서는 중앙군 가운데 가장 높았다. 금오위는 도성지역의 경찰부대였다. 그리고 감문위는 도성문과 주요 시설들을 수위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다. 결국국왕경호와 수도치안을 담당한 이들 부대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것이었다고 하겠다. 반면에 병력규모의 면에서 중앙군 조직의 주축이었던 좌우위·신호위, 그리고 흥위위 등은 양계지방의 국경경비를 주임무로 하면서 유사시에는 전투병력의 기간을 형성하는 부대들이었다. 따라서 이 3위는 중앙군이긴 하지만 국토방위를 기본임무로 하는 부대들이었고 그런 점에서 그밖의 군사조직과는 그 성격이 구별되었다.

이처럼 2군 6위의 중앙군은 그 임무의 성격상 도성방위를 위한 부대들과 국 토방위를 위한 부대 등 크게 두 가지로 조직되어 있었다. 각 부대의 병력은 1 천 명씩(1령)을 기본단위로 하여 편성되었으나 그 규모는 각각 달랐다.56) 중앙 군에는 2군 소속의 군사들처럼 특정한 제도적 명칭이 없는 군사들과 보승군ㆍ 정용군ㆍ역령ㆍ상령ㆍ해령, 그리고 감문군 등 여러 종류의 군사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임무의 차이에 따라 부대별로 배속된 군사들의 종류 또한 달랐다. 금오위 소속의 정용군 6령을 제외하고 보면, 보승군과 정용군은 국경방수를 주 임무로 하는 좌우ㆍ신호ㆍ홍위 등의 3위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국왕경호와 도성 방비를 전담하는 부대들에 배속된 군사들은 그 임무의 성 격상대부분 개경 거주의 전업적 군인들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57) 그러나 윤

^{55) 《}高麗史》권 81, 志 35, 兵 1, 정종 2년 7월.

⁵⁶⁾ 이 글 〈표 2〉 2군 6위의 조직과 편제 참조.

⁵⁷⁾ 鄭景鉉, 앞의 글(1992), 107쪽.

번제로 북방의 국경지대에 들어 가 일정기간씩 방수의 역을 져야 했던 군인들(좌우위·신호위·흥위위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은 어떤 부류의 군인들이었을까. 番上立役하는 이들 방수군은 그 군역의 성격상 반드시 전업적 군인들일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대 개경의 대체적인 인구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많은 수의 군인들이 개경에 밀집해 살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들은 필시 양계 이외의 지방사회에 거주하는 일부 선발된 농민군들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고려정부는 경기 및 남도지방(西海道·交州道·楊廣道・慶尚道・全羅道)을 여러 개의 軍事道(일종의 徵兵管區)로 나누어 각 군사도별 보승군과 정용군의 인원수를 직접 파악해 놓고 있었는데 이들이 곧 중앙군에 편성된 보승군과 정용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58) 그러므로 2군 6위의 중앙군은 개경 거주의 전업적 군인들과 외방 거주의 번상 입역하는 농민군 등 크게 두부류의 군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3)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제설

일반적으로 왕조국가시대의 중앙군 소속의 군인들은 그 복역방식에 따라 專業的 군인들과 윤번제로 입역하는 농민군의 두가지 부류로 구분된다. 전자는 개경에 거주하면서 軍役을 하나의 職役으로 수행하는 군인들이었다. 때문에 그들에게는 일정한 보수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 한편 후자의 농민군들은 군역을 하나의 賦役으로 짊어지는 군인들이었다. 이들은 당번시 혹은 유사시에만 일정기간 군역을 치루는 의무병들이었기 때문에 그 거주지가 반드시개경이어야 할 필요가 없었고 또한 군역에 대한 반대급부의 면에서도 전업적 군인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렇다면 제도상 2군 6위의 중앙군은 어떤 부류의 군인들로 편성되어 있었던 것일까. 전업적 군인이나 변상입역하는 농민군 중 어느 한가지 부류만으로 편성되었던 것일까 아니면 양자가 혼성되어 있었던 것일까. 앞에서 언

⁵⁸⁾ 李佑成, 《高麗社會 諸階層의 研究》(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74), 62쪽. 姜晋哲, 《高麗土地制度史研究》(고려대 출관부, 1980), 123쪽.

급했듯이 2군 6위는 개경에 거주하는 일부의 전업적 군인들과 지방에 거주하는 다수의 농민군 등 두 부류의 군인들로 혼합 편제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 전기 중앙군의 인적 구성에 관한 문제는 전시과 제도상의 軍人田의성격, 제위의 보승·정용군과 남도지방의 보승·정용군과의 관계, 그리고 당대 중앙군의 군역제도의 기본성격 등 여러 문제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그러므로 중앙군이 어떤 부류의 군인들로 편성되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고려 전기 군제사 연구의 오래된 중심 과제였다. 그러나 관련 자료가 워낙 부족한 데다가 각 자료의 의미 또한 부분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도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이 논의는 이른바 府兵制說과 軍班氏族制說 등의 두 가지를 축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런데 근년에 이르러 이 두 견해를 비판적으로 종합한 하나의 절충적인 가설, 즉 고려 전기 중앙군이 개경 거주의 전업적인 특수군인층인 京軍과 지방에서 윤번입역하는 농민군인층인 外軍의 두가지로 혼성되어 있었다고 주장한「京・外軍混成制說」이 제시되었다. 이하에서는 이들 세 가지 논의를 차례대로 검토하고, 경・외군혼성제설이 보다 타당해 보이는 이유 및 그것이 제기하는 새로운 연구과제가 무엇인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1) 부병제설

府兵制란 본래 6세기 중엽부터 8세기 초까지 중국에서 행해진 중앙군제도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당나라의 부병제도이다. 당은 경기지역을 위시해전국 각 지방마다 折衝府라고 하는 군정기구를 설치하여 군인으로 선발된自營農民들을 해당지역 절충부에 소속시키고, 지방의 절충부들은 다시 12衛를 주축으로 하는 중앙군에 소속시키는 군사조직을 운영하였다. 절충부는 府에 소속된 농민군들, 곧 부병들에 대한 군적관리·훈련·동원·지휘 등의 업무를 관장하면서 정기적으로 이들을 정발하여 1년에 한 두달씩 서울에 번상복무케 하거나 국경지대의 방어거점을 경비토록 하였다.

당에서는 均田制를 시행하여 전체 농민이 골고루 소정의 농토를 분급받고 있었는데 그들 중 부병으로 선발된 농민들은 군역에 대한 보상으로 조세를 면제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부병농민들은 평시에는 생업에 중사하다가 농한기에는 훈련을 받고, 다시 자신들의 차례가 되면 일정기간씩 복역하는 방식으로 군역을 부담하였다. 대체로 이러한 성격의 병농일치의 집권적인 중 앙군제가 당나라의 부병제(혹은 府衛制)였던 것이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관료들은 고려시대의 중앙군제를 부병제였던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즉 趙浚(1346~1405)은 "우리 왕조의 5軍 42都府는 대체로 중국의 남북군과 당나라의 부위병이었다"고 했고,⁵⁹⁾ 鄭道傳(1342~1398)은 "고 려 전성기의 부병은 자못 당나라 병제의 취지를 살린 것"이라고 하였다.⁶⁰⁾ 그리고 조선 초기에 편찬된《高麗史》병지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고려 태조는 三韓을 통일하고 비로소 6衛를 두었는데, 衛에는 38領이 있고, 領에는 각기 천 명씩이 있으며, 상하가 서로 유지되고 체통이 서로 연속하니 당의 부위제도를 방불하였던 것이다(《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序).

오늘날에도 고려 전기의 중앙군제는 기본적으로 부병제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즉 2군 6위의 중앙군은 軍班氏族이라 불리는 군인들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들 군반씨족은 "職業(?) 軍人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농민이었기 때문에 고려전기 중앙군제는 기본적으로는 당의 부병제와 비슷한 것"이라는 견해이다.61)

부병제설에서 가장 중요시한 논거의 하나는 《宋史》의 다음 기사이다.

나라 안에 개인 사유지(私田)는 없다. 백성은 가족수에 따라 役을 부과받으며 16세가 넘으면 군역에 충당된다. 6軍 3衛는 항상 官府에 머물러 있다. 3년마다 선발되어 서북의 국경지대를 파수하는 군인들은 반년마다 교대된다. 군인들은 비상시에는 무장을 하고 役事가 있을 때에는 징발된다. 일이 끝나면 농사처로 돌아간다(《宋史》권 487, 列傳 246, 外國 3, 高麗).

이 기사에서 6軍 3衛라는 부분의 의미는 다소 분명하지 않다. 6군은 6위를 가리키는 듯하며, '六軍三衛'는 그것의 술부인 "항상 관부에 머물러 있다"는 부분과 관련지어 판단할 때 6군(6위) 중 3위라는 뜻으로 해석되어야할 것 같다. 왜냐하면 6위 가운데 금오위·천우위, 그리고 감문위 등의 3위

^{59) 《}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공양왕 원년 12월.

⁶⁰⁾ 鄭道傳、《三峯集》 권 6, 經濟文鑑 下, 衛兵.

⁶¹⁾ 姜晋哲, 앞의 책(1980), 111~132쪽.

는 임무의 성격상 항상 경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부대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하튼 6군 3위가 중앙군을 지칭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언급된 군인들 혹은 그 일부는, 교대제로 국경 경비의 役을 부담하거나 수시 로 부과되는 소정의 역을 마치면 자신들의 농사처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농민군들이었다.

제위의 군사들이 농민들로 편성되었음을 보이는 기록은《高麗史》에서도 확인된다.

(문종) 4년 10월 都兵馬使 王寵之가 上奏하였다. '傳에 이르기를 안전할 때에도 위태로운 때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했고 또 이르기를 적이 오지 않는다 하여방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하였습니다. …'하물며 諸衛의 군사들은 국가의爪牙이니 마땅히 농한기에는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문종 4년 10월).

(고종 4년 10월) 安東・慶州・晋陝州・尚州・靈岩・羅州・全州・楊廣州・淸州・忠州 등 10道에 사신을 파견하여 諸州의 土貢을 독촉하고 또 겨울옷을 가지고 오겠다는 이유로 귀향했다가 오랫 동안 番上하지 않는 군인들에게 빨리서울로 올라오도록 명령하였다(《高麗史》권 22, 世家 22, 고종 4년 10월).

위의 첫 번째 기사 중 농한기에는 반드시 제위 군사들을 훈련시켜야 한다는 구절은 그 군사들이 농민들이었음을 알려 준다. 만일 제위 군사들이 농민군이 아니라 전업적 군인들이었다면 이 구절은 그들의 훈련시기를 농작물피해가 없도록 농한기로 한정하자는 식으로 해석되어야 한다.⁶²⁾ 그러나 이런해석은 그 구절의 전후 문맥의 흐름에 어울리지 않는다. 두 번째 기사에서는 겨울옷을 가지러 남도지방의 고향으로 내려 갔다가 번상하지 않는 군인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따라서 제위의 중앙군이 번상입역하는 농민군들로 편성되었으리라는 부병제설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부병제론자는 또 하나의 중요한 논거로서, 남도지방에도 보승군과 정용군이라는 이름의 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였다. 《高麗史》병지 州縣軍條에는 경기 남방 5도 지역의 병역자원 일람이 기재되어 있다. 고려정부는 이들 각 행정도를 다시 몇 개의 軍事道로 구획한 다음 각 군사도별 병력자원을 보승군・정용군・일품군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의 兵員數를 파악하였

⁶²⁾ 李基白, 앞의 책, 275쪽.

다. 중앙정부가 남도지방의 보승군과 정용군의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이들이 제위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 그런데 중앙군에 편제된 보승군(22,000명)과 정용군(16,000명)은 모두 38 령(38,000명)인데 비하여《高麗史》병지 주현군조에 기재된 보승군(8,601명)과 정용군(19,754명)의 총수는 2만 8천여 명이다. 양자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6위의 병력편제는 성종 14년(995)에 제정된 것이지만, 주현군조에 기재된 보승군과 정용군 수는 인종대에서 고종대 사이의 어느 시기에 조사된 것으로 추정된다.63) 그리고 인종대에 이미 군역제도가 크게 붕괴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64) 그러므로 제위 소속 보승군・정용군의 편제병력수와《高麗史》주현군조에 기재된 지방 소재 보승군・정용군의 편제병력수와《高麗史》주현군조에 기재된 지방 소재 보승군・정용군 수효의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지방농민군의 번상입역제도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것이 부병제론자들의 반론이다.65)

과연 중앙군이 번상입역하는 농민군들로 편성되어 있었다면 국가는 그들의 군역에 대하여 어떤 종류의 제도적 보상을 하였을까. 고려정부는 양반관료계급에 대해서 뿐 아니라 군인들에 대해서까지도 토지를 지급하는 방식의 보수 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었다. 즉 목종 원년에 개정된「文武兩班及軍人田柴科」 규정에 의하면 馬軍은 田 23결을 그리고 諸步軍은 田 20결을 받도록 되어 있다.66) 이와 같이 문무관료들과 더불어 소정의 토지를 받도록 규정된 마군이라든지 제보군은, 물론 전국의 군인 일반이 아니라 중앙의 정부직속군이었다. 그리고 이들 특정부류의 군인들을 위해 제정된 전시과 제도상의 토지가 곧 군인전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직속의 군인들에게 이러한 군인전이 지급되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가. 부병제설에 따르면, 그것은 군인들에 대한 토지 그 자체의 지급이 아니라 그들이 농민으로서 본래 소유하고 있던 농토(民田)에 대한 조세면제권의 지급이었다는 것이다. 즉 "군인전을 형성하는 모

⁶³⁾ 李基白, 위의 책, 205쪽의 각주 3 참조.

⁶⁴⁾ 金塘澤, 〈別武班의 設置와 軍制의 變化〉(《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241~ 249쪽

⁶⁵⁾ 姜晋哲, 앞의 책(1980), 122~124쪽.

^{66) 《}高麗史》 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체가 되는 토지는 원래 군인들이 농민으로서 「所有」해 오던 그들의 민전이며 「免稅」를 조건으로 주로 이 민전 위에 군인전을 설정하여 「支給」이라는 의제적인 형식절차를 취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67) 부병제설의 입장에서는 중앙군이 자영농민층에서 선발된 군사들로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논리상 군인전을 自耕免租地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정리해 본 부병제설의 요지는 다음 세가지로 간추릴 수 있다. ① 2군 6위의 중앙군은 자영농민층에서 선발되어 번상입역하는 농민군들로 편성되었다. 그들은 군반씨족이라 불리웠다. ② 경기 및 남방 5도에 산재한 보승군과 정용군이 곧 중앙군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을 형성하였다. ③ 중앙군에 대한 전시과 제도상의 군인전 지급은 해당 군인들의 본래 소유지(민전)에 대한 면세권의 지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같은 요지의 부병제설에는 물론 납득할 만한 점들이 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몇 가지 간과하기 어려운 문제점들도 내포되어 있다.

첫째, 국가가 번상 입역하는 농민군들에게 면세권을 지급했다고 상정하는 것은 당대의 역사적 여건에 비추어 볼 때 개연성이 희박해 보인다. 왜냐하면 번상입역하는 농민군에 대한 조세면세권의 지급과 같은 조치는 봉건적인 국가권력의 속성상 상당히 부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재정형편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도 번상입역하는 농민군에게 조세면제권과 같은 반대급부를 주지는 않았다. 그리고 군인 1인당 면세지를 20결씩 잡으면 중앙군 전체의 면세지 만도 무려 90만 결이 되는데 이것은 고려의 농경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많은 면적이다.6%) 고려정부가 그처럼 터무니없이 모순된 제도를 제정했을 것 같지는 않다.

둘째, 군인전은 문무양반 및 군인전시과 체제의 일부였다. 그리고 각급의 문무양반 관료들이 이 전시과 체제에서 지급받는 소정의 토지는 그들 토지의 실제 경작농민들로부터 租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收租地였다.⁶⁹⁾ 그렇다면 군인들에 대한 토지도 수조지였을 것이다. 그러나 부병제설은 전시과

⁶⁷⁾ 姜晋哲, 앞의 책(1980), 114쪽.

⁶⁸⁾ 고려말 공양왕 3년(1391)의 土地調査에 의하면, 전국의 농경지 총면적은 79만 8천 118결이었다(《高麗史》권 78, 志 32, 食貨 1, 田制 공양왕 3년 5월).

⁶⁹⁾ 姜晋哲, 앞의 책(1980), 74쪽.

체제 안에서 유독 군인전만을 군인들의 자경면조지로 해석하였다. 이것은 군 인전을 받는 군인들이 번상입역하는 농민군인들이었다는 그의 결론과는 부 합되는 개념이 지만 수조지 지급을 원칙으로 한 전시과 제도의 기본 성격과 는 맞지 않는 하나의 무리하고 복잡한 가설이 아닐 수 없다.

셋째, 중앙군으로 편성된 군인들 가운데 번상입역하는 농민군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앙군 전체가 그런 부류의 군인들로만 편제되었다는 확증은 없다. 현실적으로 국왕 경호와 도성 수비를 고유 임무로 하는 중앙군 가운데 전업적 군인들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국왕의 경호와 의장 혹은 도성지역의 경찰 등은 지방에서 번상입역하는 농민군들에게는 부여될 수 없는 성격의 임무들이었다. 따라서 개경에는 틀림없이 일정 규모의 전업적 군인들이 존재했을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들의 군역은당대 신분제사회의 속성상 세습되고 있었으리라는 점까지 추리해 볼 수 있다. 그 말뜻으로 보건대 「군반씨족」이라 불리던 군인들이 바로 그러한 전업적이고세습적 군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체로 이러한 관점에서 입각해 부병제실을 비판하면서 등장한 설명체계가 다음에 소개될 군반씨족제설이다.

(2) 군반씨족제설

군반씨족제설의 요지는 2군 6위 군사들 모두가 세습적·전문적으로 군역에 종사하는 특정한 씨족, 즉 「군반씨족」 출신의 군인들로만 편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70) 이러한 주장은 개념상 ① 군반은 세습적·전업적 군인들이었다. ② 중앙군은 모두 군반으로 편성되었다는 등의 두가지 부분으로 구성된다.

앞서 살폈듯이 부병제설에서는 군반을 중앙군으로 선발된 농민군으로 해석 했었다. 그러나 군반씨족제설에서는 군반을 세습적·전문적 군인들로 파악하 였다.⁷¹⁾ 군반을 그렇게 파악한 것은 《高麗史》에 나오는 다음 기사 때문이다.

(文宗 18년) 兵部에서 아뢰기를, '軍班氏族의 帳籍이 작성한 지 오래되어 낡고 썩었습니다. 때문에 군인의 수효(軍額)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전의 방식에

⁷⁰⁾ 李基白、앞의 책、141~144・283~289쪽、

⁷¹⁾ 위와 같음.

의거해 그 장적을 다시 만들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그 請을 받아들였다(《高麗史》권 8, 世家 8, 문종 5년 윤 5월).

주지하다시피 고려시대에는 정부직속의 관인들을 그 직역의 종류에 따라 집합적으로 구분할 때에 「班」자를 사용하였다. 文班·武班, 그리고 南班 등이 그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군반'이란 군역을 자신들의 직역, 곧 직업적 소임으로 하는 군졸집단에 대한 제도적 명칭이었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의 씨족이 帳籍, 곧 軍籍에 등재되고 있었음은 그들이 세습적 군인들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군반씨족제설에서는, 군반은 세습적・전업적 군인들 로서 그 직역의 성격상 개경 거주의 군인, 즉 경군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45령(45,000명)의 2군 6위 군졸 전부가 개경 거주의 군반들이었던 것으로 주장한다. 즉 태조대의 경군병력은 4만 3천 명이었는데?2) 통일 후 이들이세습적 군인신분층으로 굳어지면서 성립된 것이 바로 군반씨족이라는 것이다.73) 그리고 위 인용기사에서 군인의 수효가 부정확한 것은 군반씨족의 장적이 낡고 썩었기 때문이라 했으므로, 그 군인들(2군 6위의 중앙군)은 오직 군반씨족으로만 구성되었으리라는 것이다.74)

그러면 이들 세습적·전업적 군인들로서의 군반씨족이 받은 군인전은 어떤 성격의 토지였을까. 부병제설에서는 군반을 중앙군 소속의 특정한 농민군으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전시과 제도상의 군인전을 그들의 자경면조지로 해석했었다. 그러나 군반제설에서는 군반을 넓은 범위의 관인계급에 속하는 세습적·전문적 군인들로 파악하였기 때문에 군인전을 문무양반의 그것과 마찬가지의 收租地였다고 주장하였다.75) 수조지란 그 농토의 실제 경작자들로부터 소정의 租를 받도록 되어 있는 농토였다. 군인전=수조지라는 이같은 해석은 군인전이 아무 단서조항 없이 문무양반 전시과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잘 부합된다.

이미 지적하였듯이 중앙군의 주축은 보승군과 정용군이었다. 그리고 경기

⁷²⁾ 李基白, 위의 책, 51쪽.

⁷³⁾ 李基白, 위의 책, 285쪽.

⁷⁴⁾ 李基白, 위의 책, 141~142쪽.

⁷⁵⁾ 李基白, 위의 책, 144~149쪽.

및 남도지방의 각 군사도마다 보승군과 정용군이 있었다. 그런데 군반제설에서는 45령의 중앙군 모두가 개경에 거주하는 군반출신의 군인들이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제위의 보승·정용군과 지방사회의 보승·정용군은 명칭이동일해도 소속이 다른 군인들이었다는 말이다. 즉 전자의 보승·정용군은 중앙군 소속의 군인들이었던 반면 후자의 그들은 주현군이라 불리는 '독자적인통일적 지방군 조직'에 소속된 군인들이었다는 것이다.76) 이처럼 부병제설에서는 전자와 후자를 동일시한 반면 군반제설에서는 양자를 별개로 보았다.

군반제설에 의하면 중앙군의 주축인 보승군과 정용군이 전시과 제도상의 군인전을 받는 군인들이었다. 그러나 전시과 규정에는 '馬軍'・'諸步軍'・'監門軍' 등의 군인들만 지적되었을 뿐 보승군과 정용군이라는 명칭들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군반씨족제설을 주장한 논자는, 군반씨족제설을 전제로 전시과 제도상의 步軍과 馬軍이 각각 보승군과 정용군에 해당되는 군인들이었으리라고 추측하였다.77) 이같은 논법에 있어서는 보군과 마군이실제로 보승군과 정용군을 의미하는 것이었는가 아니었는가 하는 문제가 논리상 매우 중요하다. 만일 보승・정용군이 실제로 보군・마군 또는 마군・보군의 구별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리하여 양자가 서로 차원을 달리한 병종 구분이었다면 군반씨족제설의 설득력은 아주 약해질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검토는 논의의 편의상 잠시 뒤로 미루겠다.

요컨대 군반씨족제설의 개념적 핵심은 ① 2군 6위의 중앙군은 군반씨족이라 불리는 개경 거주의 전문적이고 세습적 군인들로만 편성되어 있었다. ② 그들 모두는 전시과 제도상의 군인전을 지급받았는데 그 토지는 수조지였다. ③ 제위 소속의 보승·정용군은 경기 및 남도지방의 보승·정용군과는 소속과 성격이 다른 군인들이었다는 등의 세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이같은 요지의 군반씨족제설은 추론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좀처럼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 중앙군의 가장 중요한 고유 임무가 국왕경호와 도성 수비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그들 가운데 개경 거주의 전업적 군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⁷⁶⁾ 李基白, 위의 책, 198쪽.

⁷⁷⁾ 李基白, 위의 책, 72~90쪽.

수 있다. 또한 군반씨족은 그 명칭의 의미라든지 그 용어가 포함된 기사의 앞 뒤문맥으로 보건대 윤번입역하는 농민군이라기 보다는 군역을 직역으로 세습하는 군인들로 해석함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전시과 제도는 중앙의官人들을 대상으로 한 수조권 지급형태의 보수제도였으므로 그 제도 속의 군인전 역시 수조지로 파악함이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군반씨족제설의 절반 부분, 즉 군반씨족은 군역을 직역으로 세습하면서 그 대가로 소정의 수조지(군인전)를 지급받는 전업적 군인들이었다는 부분은 충분한 설득력을 지닌다.

그러나 군반씨족제설의 나머지 절반부분, 즉 2군 6위의 소속군인 전부가 그러한 군반씨족 출신의 군인들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일반화는 무리해 보인다. 그 논자는 군반씨족의 군적이 썩어 문드러져 군인들의 수효가 불분명하게 되었다는 앞의 인용기사를 근거삼아 2군 6위의 중앙군 전체가 군반씨족이었다는 일반화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 비약된 해석이라는 느낌을 준다. 그러한 일반화의 또 다른 간접적 근거로서 그가 지적한 것은 태조대 경군의 병력수였다. 그러나 그가 추정한 태조대 경군의 병력수 4만 3천명도, 앞에서 비판했듯이 너무나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숫자였다.78) 또한 부병제설에서 지적한 일부 중요한 논거-이를테면 번상입역하는 농민군들에 관한 기사들-에 대한 군반제설의 반론은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인다.79) 군반제설의 가장 큰 난점은 특히 군인전 해석부분에서 두드러진다. 군반제설의주장대로라면, 4만 5천명에 달하는 중앙군의 군인전만도 90만 결이 있어야했는데 실제로 고려시대 전국의 농경지 총면적은 약 80만 결에 불과했기 때문이다.80)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다시 언급할 것이다.

요컨대 중앙군 가운데 군반씨족이라 불리는 전업적이고 세습적 군인들이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되나 45령의 중앙군 전체가 그러한 종류의 군인들로만 구성되었다는 주장은, 부병제설에서 중앙군 전체를 농민군으로 간주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성급한 일반화였다고 판단된다.

⁷⁸⁾ 李基白, 위의 책, 51쪽.

⁷⁹⁾ 李基白, 위의 책, 276쪽의 내용과 張東翼, 〈高麗前期의 選軍-京軍構成의 理解를 위한 一試論〉(《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474~475쪽의 내용을 비교해 볼 것.

⁸⁰⁾ 주 68) 참조.

(3) 경·외군 혼성제설

우리는 위에서 부병제설과 군반씨족제설 각각의 요지와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았다. 중앙군 가운데 지방에서 번상입역하는 농민군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은 거의 확실하다. 이 점에 관해서는 부병제설의 입론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중앙군 중에는 수조지로서의 군인전을 받으면서 전업적·세습적으로 군역에 종사하는 군인들 즉「軍班氏族」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군반씨족제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45령의 중앙군 전체가 번상입역하는 농민군 혹은 군반씨족의 어느 한 부류의 군인들로만 편성되어 있었다고 일반화한 점에 있어서는 두 가지 설 모두 설득력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그같은 일반화들은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할 뿐 아니라 당대의 객관적 여건, 이를테면 전국의 토지면적, 개경의 인구 및 주택사정, 그리고 농민들의 정치적 지위 등과 명백히 모순되기 때문이다.

부병제설과 군반제설의 이같은 문제점 때문에 최근에는 양설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종합하는 절충적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다. 즉 2군 6위의 중앙군은 크게 개경에 거주하는 전업적 군인층(경군)과 지방에서 번상입역하는 농민군층(외군) 등 두 종류의 군인층으로 편성되어 있었으리라는 가설이 그것이다.81)

이러한 절충적 가설의 논거로서 다음 몇가지가 지적되고 있다. 우선 전시과 제도상으로는 분명히 마군·보군·감문군 등의 군인들이 소정의 군인전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중앙군 전체에게 규정된 면적의 군인전을 주려면 전국의 농토를 다 합쳐도 태부족이었다. 이것은 군인전을 지급받는 군인들이 중앙군 가운데 일부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2군 6위의 중앙군은 편제상 그 병력 규모가 4만 5천 명이었다. 그러나 당대 개경지역의 인구사정이나 주택사정으로 보아 그렇게 많은 수의 전업적 군인들이 밀집해 살 수가 없었다. 이 점역시 중앙군의 일부만이 개경에 거주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앙군

⁸¹⁾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가설을 제시한 논문들로서는 張東翼, 앞의 글과 鄭景鉉, 앞의 글(1992)·앞의 글(1990) 및 吳英善, 앞의 글 외에 다음의 글들이 있다. 洪元基, 〈高麗·二軍六衛制의 性格〉(《韓國史研究》68, 1990).

鄭景鉉,〈高麗前期 京軍의 軍營〉(《韓國史論》23, 서울대 國史學科, 1990).

馬宗樂、〈高麗時代의 軍人과 軍人田〉(《白山學報》36, 1991).

이 경군과 외군으로 혼성되어 있었음은 거의 확실하다는 것이다.

중앙군이 경군과 외군의 두 계층의 군인들로 구성되었으리라는 점은 2군 6위 각 부대의 임무 분석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2군 6위의 임무는 크게 두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하나는 좌우위・홍위위・신호위등에 부과된 국경지대 경비(防戍)의 임무이며, 다른 하나는 응양군과 응호군, 금오위・천우위, 그리고 감문위 등이 전담한 친종과 근장・치안・성문수위등의 임무였다. 전자는 다수의 농민군들이 윤번제로 수행할 수밖에 없는 군역이었던 반면 후자는 개경 거주의 비교적 특정한 계층의 군인들이 전업적으로 수행해야 할 군역이었다.82)즉 중앙군에는 부역으로서의 군역을 짊어지는 군인들과 직역으로서의 군역에 종사하는 군인 등 크게 두 부류의 군인층이 있었다고 이해된다.

중앙군의 이중적 구성설은 고려 전기 지방행정제도의 발전과정과도 잘 부합되는 것 같다. 주지하다시피 고려 초기의 국가권력은 지방사회에 상주 지방관도 파견하지 못할 정도로 미약하였다. 그러나 중국식의 집권적 국가체제를 모델로 하여 통치제도를 크게 개혁한 성종대에 이르러서는 12군 절도사제가 시행되는 등 지방사회에 대한 정부의 군사행정적 통제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지방사회의 우수한 농민군들이 대거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들어오게 되었을 것이다. 성종 14년 경에 38령 규모의중앙군 조직(6위)이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태의 진전을 배경으로 했을 것이다. 따라서 성종대의 6위는 태조대 이래 경성의 토박이 군인들(경군)과 새롭게 편입된 지방농민군(외군)의 두 가지 군인층으로 편성되었으리라는 것이다.

고려 전기 중앙군의 인적 구성이 이중적이었음은 중앙군으로 선발된 군인들의 신분분석 결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었다. 2군 6위의 실제 병력규모는 편제상의 그것보다 거의 언제나 부족했다. 중앙군의 병력수는 전란을 겪고 나면크게 줄어들었고 그같은 병력 부족의 현상은 평상시 도망군들이 속출함으로써만성화되었다. 때문에 정부는 選軍都監이라는 관청을 설치하여 수시로 중앙군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군인을 선발(選軍)하였다.83) 그러면 선군도감에서는

⁸²⁾ 鄭景鉉, 앞의 글(1992), 97~113쪽.

⁸³⁾ 張東翼, 앞의 글, 444~457쪽.

어떤 계층의 사람들을 선발하여 중앙군에 편입시켰던 것일까. 법제상으로 6품이하의 양반 및 일반 양민(白丁)들의 자제가 모두 선군의 대상이었다. 그러나실제로는 5품 이상의 자제라든지 향리, 왕족 및 공신의 후손들 심지어는 역을부담하는 천인(有役賤口)까지도 선발되어 중앙군으로 보충되고 있었다.84)

이상의 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고려 전기 중앙군은 농민군 아니면 세습적 전문군인 중 어느 한 가지 종류의 군인들로만 편제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중앙군 안에는 농민군도 있었고 전문적 군인들도 있었다. 혹은 그어느 쪽도 아닌 군인들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고려전기 중앙군을 구성한 여러 부류의 군인들은 그들이 짊어진 군역의 성격과 그에 대한 국가적 보상 등의 면에서 기본적으로 두 종류로 대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군역을 직역으로 수행하는 대가로 군인 전시과를 받는 소규모의 특수군인층이었고, 다른 하나는 군역을 국가적 부역으로 짊어지기 때문에 군인전시과를 받지 못하는 대다수 농민군인층이었다. 그리고 전자의 군인들은 개경거주의 군인들(경군)이었고 후자의 군인들은 거의가 지방 거주의 군인들(외군)이었을 것이다.85)

고려 전기 중앙군이 이처럼 기본적으로 상이한 두 종류의 군인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그들의 군역에 대한 보상제도 또한 각기 달랐을 것이다. 군반씨족을 비롯한 개경의 전업적 군인들은 전시과 제도상의 군인전을 지급받았고 그 군인전은 수조지였다.86) 다음 기사는 강감찬이 군호에게 급여한 양전이 바로 수조지로서의 군인전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吏部尚書 강감찬이 아뢰기를 '臣이 開寧縣에 良田 12結이 있는데 청컨대 軍戶에 게 주고자 합니다'고 하니 왕이 허락하였다(《高麗史節要》권 3, 현종 7년 12월).

강감찬은 開寧縣(지금의 경북 상주지방)에 양전 12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는 그 토지를 軍戶에게 주기 위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이것은 개령현에 있는 강감찬의 토지가 국가로부터 받은 수조지였음을 의미하

⁸⁴⁾ 張東翼. 위의 글. 458~468쪽.

^{85) &#}x27;京軍' 과 '外軍' 의 구분은 《高麗史》 권 81, 志 35, 兵 1, 兵制 문종 원년조에 잘 나타나 있다.

⁸⁶⁾ 李基白, 앞의 책, 144~159쪽.

는 동시에 그 토지를 받게 된 군호 또한 수조지를 넘겨 받을 수 있는 군인, 곧 개경 거주의 전업적 군인이었음을 말해 준다.87)

한편 윤번제로 입역하는 지방 농민군들에게는 군역의 대가로 무엇이 주어 졌던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점은 분명해 보인다.

첫째, 이들 농민군들에게는 수조지 혹은 면조지로서의 군인전이 지급되지 않았으리라는 점이다.88) 중앙군의 이중적 구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은 38령 규모의 보승군과 정용군이 곧 윤번입역하는 농민군들로 편성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89)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에 대한 군인전의 지급은 그 것이 수조지이건 면조지이건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액수의 세입결손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고려정부가 번상입역하는 농민군들에 대해서까지 조세면제의 보상제도를 마련했다고 가정함은 당대 국가권력의 근본 성격에 비추어 보아도 어울리지 않는다.

다른 하나는 농민군들의 군역에 대해서도 비록 열악한 수준의 것이지만 모종의 보상제도가 있었으리라는 점이다. 보승군과 정용군의 주임무는 윤번제로 반년 혹은 1년간씩 양계지방의 여러 州와 鎭에 들어가 수자리(방수)하는 일이었다.90) 남한지역의 농민군들이 북방 양계지방에 들어가 부담하는 방수역은 도중에 많은 군인들을 질병으로 죽게 할 만큼 혹독한 고역이었다.91) 또한 수자리하러 간 군인의 가족들은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고려정부가 지방의 농민군에 의한 방수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한 그들의 과중한 군역부담에 대해서도 모종의 보상조치를 강구해야만 했을 것이다.

실제로 국경지대의 주·진에 입거하는 군인들에게는 일정한 보상제도가

洪元基, 앞의 글,

⁸⁷⁾ 鄭景鉉, 앞의 글(1992), 152쪽.

⁸⁸⁾ 李基白은 保勝軍과 精勇軍을 軍班氏族으로 간주하여 이들에게 收租地가 지급 되었을 것이라 하였고(李基白, 앞의 책, 149~150쪽 참조), 姜晋哲은 保勝軍과 精勇軍을 농민군으로 파악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自耕免租地가 주어졌을 것 이라 했다(姜晋哲, 앞의 책, 1980, 127쪽 참조).

⁸⁹⁾ 張東翼, 앞의 글.

鄭景鉉. 앞의 글(1992).

⁹⁰⁾ 李基白, 앞의 책, 138쪽 참조. 鄭景鉉. 앞의 글(1992), 173~183쪽 참조.

⁹¹⁾ 鄭景鉉, 위의 글, 180~183쪽 참조.

시행되고 있었는데, 다음의 두 기사는 그러한 사실을 보여 준다.

(문종) 27년 3월 州鎭 入居軍人들에 대해서는 관례대로 本質의 養戶 2명씩을 급여하라는 왕명이 내려졌다(《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문종 27년 3월. (인종) 22년 西京과 東西州鎭의 入居軍人들에 대해서는 본관의 잡역을 면제해 주기로 하는데 만일 이를 위반하는 자가 있으면 그 실무관리들을 처벌키로 결정하였다(《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인종 22년).

이처럼 문종대에는 주진 입거군인들에게 각자의 본향에서 2명씩의 양호를 배당해 주는 제도가 있었고 인종대에 이르러서는 그들 본향에서의 잡역도 면제하라는 정부조치가 있었다. 주진 입거군인들에게 그 본향의 잡역을 면제해 준다는 것은 그 군인의 가호에 대해 잡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한편 주진 입거군인들에 대한 양호의 지급은 잡역면제 조치 훨씬 이전부터하나의 제도로서 시행되고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그들에 대한 대표적인보상제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양호가 군인에 대하여 부담한 역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기사는 양호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예종 3년 2월에 왕이 명하였다. '근래 州·縣의 官吏들이 왕실과 조정의 농토에 대해서만 사람들을 시켜 같고 씨를 뿌리고 있다. 그러나 軍人田의 경우는 비옥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농사짓도록 힘써 장려하지도 않을 뿐더러 양호들이 양식을 나르도록 명령하지도 않고 있다. 때문에 군인들이 굶주림과 추위로 도망가고 흩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우선 군인전부터 각각 佃戶를 배정하여 농사를 장려하고 양식을 나르도록 하는 일에 관해 해당 관서는 상세히보고하여 결재받도록 하라'(《高麗史》권 79, 志 33, 食貨 2, 農桑 예종 3년 2월).

이 기사에 의하면 양호는 입역 중인 군인에게 양곡수송의 역을 부담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이 기사에서 언급된 군인들은 주진 입지군인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양호에 의한 양곡수송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했기 때문이다.92) 그러므로 이 기사의 군인들은 개경 거주의 전업적 군인들이었거나 아니면 번상입역 중인 농민군들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기사의 양호 또한 개경 거주의 특수군인층의 양호들이었거나 아니면 지방 농민군들의 양호들이었을 것이다. 만일 전자였다면 그들은 군인수조지(전시과 제도상

⁹²⁾ 李基白, 앞의 책, 104쪽.

의 군인전)의 경작농민으로 이해함이 타당해 보인다.⁹³⁾ 그러나 후자였다면 그들은 입역 중인 농민군 가족의 농사를 돌봐 주어야 하는 일종의 생계보조자들이 었다고 이해될 수 있다.⁹⁴⁾ 그리고 이 경우라면 앞 기사의 「군인전」은 전시과 제도상의 특정한 군인전이 아니라 군인의 농토라는 일반적 의미의 군인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문맥상 앞 기사의 군인·양호, 그리고 군인전이 과연 어떤 쪽의 것들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다음 몇 가지를 고려해 볼 때 후자의 해석이보다 더 타당해 보인다. 첫째, 양호는 오직 군인에게만 배당된 생활보조자들이었다. 그러나 수조지는 군인에게만 급여된 것이 아니었다. 군인은 수조지에 의한 보수체계(전시과제도) 안의 극히 작은 일부에 불과한 집단이었다. 그리고 수조지 경작농민의 부담은 그것이 군인들의 수조지이건 양반관료의 수조지이건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에게만 양호라 하는 특정한 생활보조자들이 배당되었음은 양호들이 수조지로서의 군인전과는 관계없는 존재, 달리 말하면 수조지를 받는 전업적 군인들과는 관계없는 존재들이었음을 시사한다.

둘째, 州鎭 入居軍들은 남도의 농민군들이었다.95) 그들에게는 수조지가 급여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고찰했듯이, 그들에게는 1인당 2명씩의 양호가제도상 배당되고 있었다. 이같은 사실 또한 양호가 수조지를 받는 군인들이아니라 수조지를 받지 못하는 군인들, 곧 중앙군 소속의 농민군들과 관련된농민들이었음을 의미한다.

셋째, 양호란 그 의미상 佃戶(소작인)라기 보다는 생계부양자를 뜻한다. 양호의 정체를 이해하고자 할 때에는 이 점도 물론 고려되어야 한다. 앞의 두가지 논거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조선시대에는 번상입역하는 군인들에게 「奉足」을 배당하여 그들로 하여금 군역에 필요한 물자를 뒷바라지하게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고려사회와 조선사회 사이에 정치·경제적 여건

⁹³⁾ 李基白. 위의 책. 149~152쪽.

⁹⁴⁾ 姜晋哲, 앞의 책(1990), 128~130쪽.

⁹⁵⁾ 李基白, 앞의 글, 104쪽.

⁹⁶⁾ 閔賢九,〈近世朝鮮前期 軍事制度의 成立〉(《韓國軍制史-近世朝鮮前期篇-》, 陸軍本部, 1968), 34~41쪽.

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일반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조선시대의 봉족 제도와 고려시대의 봉족제도 사이에는 유사성이 많았을 것으로 추측된다.97)

따라서 양호란 고려 전기 중앙군 소속의 주진입거 혹은 번상입역하는 지방의 농민군들에게 배당된 생계보조자들로서 그들의 기본임무는 해당 군인들이입역해 있는 동안 그 軍人戶의 농사를 보조해 주는 농민들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번상입역 중인 군인의 양호는 주진 입거군인의 양호와는 달리 해당 군인에 대한 양곡운반의 부담까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한다.

중앙군의 보수제도에 관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비교적 소규모의 전업적 군인들(경군)은 전시과에서 규정된 수조지로서의 군인전을 받는 반면, 윤번입역하는 대다수의 지방농민군들(외군)은 입역기간 중 양호라 불리는 농사보조자를 배당받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다고 이해된다.

경·외군 혼성제설과 관련하여 설명되어야 할 마지막 사실은 보승군과 정용군이다. 고려 전기 중앙군이 경군(특수군인층)과 외군(농민군인층)의 두가지군인층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한결같이 지방의 보승·정용군을 제위의 보승·정용군과 동일시하고 있다.98)

군반제설에 의하면 중앙군 전체가 전시과 제도상의 군인전을 지급받는 전업적 군인들이었고 그 주축은 보군과 마군이었다. 한편 병종상으로는 보승군과 정용군이 중앙군의 주축이었다. 그러므로 보군과 마군은 곧 보승군과 정용군의 구별일 것으로 간주되어 왔었다.99) 이 점은 군반씨족제설과 경·외군 혼성제설과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이다.100) 따라서 경·외군 혼성제설의 입장에서는 보승군과 정용군이 전시과 제도상의 보군 및 마군이 아니었음을 보다 적극적으로 논증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보승군과 정용군이 각각 보군과 마군을 지칭하는 것이었을 개연성은

洪元基, 앞의 글.

鄭景鉉. 위의 글.

⁹⁷⁾ 鄭景鉉, 앞의 글(1992), 154~158쪽.

⁹⁸⁾ 張東翼, 앞의 글.

⁹⁹⁾ 李基白, 앞의 책, 72 · 90쪽.

¹⁰⁰⁾ 府兵制設의 姜晋哲씨도 保勝軍과 精勇軍을 步軍과 馬軍의 구별로 보았다(姜晋哲, 앞의 책, 1980, 122쪽).

극히 희박하다. 《高麗史》 병지는 병력수를 병종별로 구별하여 표시할 때 언제나 보승군 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정용군 항을 썼다. 이같은 기재방식은 양자간의 제도적 서열을 표시하며 보승군이 정용군에 비하여 상위의 군사들이었음을 암시한다. 또한 고려시대 지방의 농민군들 가운데에는 기병보다는 보군이 훨씬 더 많았다.[01] 그러나 《高麗史》 병지 주현군조에 보고된경기 및 남도지방의 병종별 군인 수효를 보면 보승군보다는 정용군이 두배가량 더 많았다. 따라서 적어도 보승군과 정용군이 각기 보군과 마군의 별칭이 아니었음은 명백하다.

그러나 보승군과 정용군이 각기 마군과 보군의 별칭이었던 것도 아니다. 의종대에 정해진 法駕衛仗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용호군 소속의 기병 600명이 法駕를 衛仗하게끔 되어 있었다.102) 이들 용호군 소속의 기병은 틀림없이 군인전을 지급받는 마군 바로 그들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주지하듯이 용호군에 소속된 2령의 군사들은 보승군도 정용군도 아니었다. 이같은 사실은 군인전 지급대상자로서의 마군 및 보군은 보승군 및 정용군과는 서로 다른 범주의 군인들이었음을 말해 준다.

보승군과 정용군이 이처럼 전시과 규정상의 보군과 마군(혹은 마군과 보군)이 아닌 지방의 농민군들이었다면 보승군과 정용군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앞서지적했듯이 보승군은 정용군 보다 어떤 면에서 상위의 군사들이었다. 《高麗史節要》숙종 9년(104) 9월조에는, 왕이 長源亭에 행차하여 보승군만을 소집 열병하였다는 기사가 보이는데¹⁰³⁾ 이 역시 보승군의 상대적 지위가 그만큼 높았음을 시사한다.¹⁰⁴⁾ 그러나 보승군은 실제적인 전투력에 있어서 정용군보다 우위의 군사들이었던 것 같지는 않다. 용맹성 때문에 선발된 군인들은 오히려 정용군들이었을 것이다. 「精勇」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 점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승군은 향촌사회에서 비교적 그 家勢 가 부강한 농민들 중에서 선발된 군인들이었던 반면 정용군은 비록 신분이 나 가세는 보잘 것 없지만 개인적 용맹성 때문에 중앙군으로 선발된 군인들

¹⁰¹⁾ 鄭景鉉, 앞의 글(1992), 131~132쪽.

¹⁰²⁾ 鄭景鉉, 위의 글, 132~133쪽.

¹⁰³⁾ 鄭景鉉, 위의 글, 128쪽.

¹⁰⁴⁾ 千寬宇, 《近世朝鮮史研究》(一潮閣, 1979), 28\.

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105)

보승군과 정용군에 대한 이같은 해석은 고려 전기 중앙군이 개경 거주의특수군인들(경군)과 지방 거주의 농민군(외군)으로 혼성되어 있었다고 하는 절충적 가설과 잘 부합된다. 전업적인 특수군인층과 번상입역하는 농민군인층의 기본적 차이는 각기 부담하는 군역의 성격과 그에 따른 제도적 보상의차이였다. 전자의 군인들에게는 군역이 전업적 직역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조지로서의 군인전이 주어졌던 반면 후자의 군인들에게는 군역의 윤번제에 의한 賦役이었기 때문에 양호의 지급이라는 비교적 소극적인반대급부만 주어졌던 것으로 이해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려 전기 중앙군(2軍 6衛)의 군역제도에 대하여 府兵制說, 軍班氏族制說, 그리고 京・外軍 混成制說 등 세 가지 주요 입론들을 살펴 보았다. 총 4만 5천 명 편제의 2군 6위의 군사들이 어떤 부류의 군인들로 충원되어 있었으며 어떤 보수제도하에서 운용되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이 세 가지 입론은 각기 주장이 달랐다. 부병제설은 중앙군 전부를 윤번입역하는 농민군들(군반씨족=부병)로 파악하였으며 전시과 제도상의 軍人田은 군역의 대가로 조세를 면제받게 된 이들 농민군들의 自耕地(民田)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군반씨족제설은 중앙군 전부가 개경 거주의 전업적이고 세습적 군인들(군반씨족)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전시과 제도상의 군인전은 이들에게 주어진 수조지였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한편 경・외군 혼성제설에 의하면, 고려 전기 중앙군은 개경 거주의 비교적 소규모의 전업적인 특수군인층(京軍)과 윤번제로 입역하는 대다수의 지방 농민군(外軍=保勝軍과 精勇軍)으로 혼합 편성되어 있었으며, 전자에게는 전시과제도에 따라 수조지로서의 군인전이 지급된 반면 후자에게는 복역 중인 軍人戶의 생계보조자(養戶)가 군인 1명당 2명씩 배당되었다.

경·외군 혼성제설은 부병제설과 군반씨족제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면서도 몇 가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가설은 다른두 가설에 비해 보다 많은 관련 증거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경·외군 혼성제설에 의한 史實 해석이 부병제설이나 군반씨족 제설에 비해 보다 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¹⁰⁵⁾ 鄭景鉉, 앞의 글(1992), 141~142쪽.

종래에는 일반적으로 군반씨족제설에 의해 고려 전기의 군사조직과 군역제도가 설명되었다. 그리하여 2군 6위의 중앙군은 곧 京軍으로 인식되었고, 州縣軍은 경기 및 남도지방의 보승군과 정용군을 주축으로 한 별도의 지방군조직인 것으로 해석되어 왔었다. 그러나 경·외군 혼성제설에 따르면, 중앙군이 居京 군인 곧 경군만으로 편성되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경군은 중앙군의 적은 일부였으며 나머지 대다수는 경기 및 남도지방의 농민군 곧 보승군과 정용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경·외군 혼성제설을 인정하는 한, '경군'을 2군 6위와 동일시 할 수는 없다. 바꾸어 말하면, 2군 6위의 군사조직을 경군조직이라고 지칭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주현군'도 하나의지방군 조직으로서 이해될 수가 없다. 경기 및 남도의 보승·정용군이 중앙군조직에 편제되어 있었다면 그들을 기간병력으로 하는 별도의 지방군 조직은성립할 수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상《高麗史》병지의 편찬자들도「주현군」을 반드시 지방군 조직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高麗史》병지의 한 항목으로 명명한 주현군이란 기본적으로 '州와 縣에 산재해 있던 군인들'이라는 뜻이었다. 그 서문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高麗의 兵制는 모두 唐의 府衛制度를 모방한 것이었다. 따라서 州와 縣에 산재해 있던 군인들도 생각컨대 또한 모두 六衛에 속하였을 것이요. 6위 밖에 따로 州縣軍이라는 것이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참고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단 '州縣軍'이라는 제목을 사용하였다(《高麗史》권 83, 志 38, 兵 3, 州縣軍).

일찍이 군반씨족제설에서 비판된 바와 같이, 고려의 병제가 모두 당의 부병제도를 모방한 것이었다는 《高麗史》편찬자들의 歷史像은 사실과 크게 다른 것이었다.106) 또한 국경지대인 양계지방의 州・鎭에 산재한 군사들은 6위 밖에 별도의 지방군 조직을 갖추고 있었다. 이른바 州鎭軍이 그것이었다. 때문에앞서 인용된 《高麗史》병지 편찬자의 의견 전부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러나 경기 및 남도의 州・縣에 별도의 지방군 조직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다는 부분 만큼은 음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고려 전기의 남도지방은 양계지방과 달리 독자적인 지방군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할 군사적 이유가거의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현에 산재한 보승군과 정용군은 중앙군

¹⁰⁶⁾ 李基白, 앞의 책, 4~15쪽.

소속의 군인들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고려 전기 중앙군이 경군과 외군으로 편성되어 있었다는 가설하에서는 '경군'과 '주현군'에 대한 해석이 종래의 그것들과는 크게 달라지지않을 수 없다. 특히 지방군 조직으로서의 주현군에 대한 부정은 고려 전기군사조직에 대한 전반적 구도를 크게 바꾸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주현군이 주진군과 같은 의미의 지방군 조직이었다는 통설은 몇가지 구체적 수준의 연구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중앙군의 인적 구성이 2중적이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그러한 통설을 부인하기가 불충분하다. 즉 경·외군 혼성제설의 관점에서 주현군 자체를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해석하는 일이 요구된다. 그런 의미에서 경·외군 혼성제설은 하나의 새로운 결론을 제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무제를 제시하는 가설이다.

〈鄭景鉉〉

2. 주현군과 주진군

- 1) 주현군과 농민
- (1) 주현군¹⁾의 성립

가. 광 군

가) 광군의 성격

定宗 2년(947)에 契丹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하여 光軍이 조직되었음은 다 아는 바와 같다. 하지만 광군의 조직이나 성격, 그 활동상 등에 관한 기록은

^{1)《}高麗史》권 83, 志 37, 兵 3, 州縣軍條를 보면 高麗의 지방군 모두를 州縣軍이라고 칭하고 있다. 하지만 같은 지방군이었다고 하더라도 5道에 배치되었던 지방군과 兩界의 그것은 구별되는 존재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인〈州鎭軍과 國防體制〉에서 자세히 언급하게 될 것이지만 주현군이란 5도에 배치되어 있었던 지방군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한다.

별로 없다. 광군이 만들어질 당시 병력이 30만 명이었다는 것, 그 통수부는 光軍司였으며 光軍都監으로 바뀌었다가 顯宗 2년(1011) 다시 광군사로 되었 다는 것, 현종 초 慶北 醴泉에 있는 開心寺의 석탑을 쌓는 데에 광군이 동원 되었던 사실 따위를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단편적인 사실들에 기초하여 광군에 대하여 검토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²⁾

우선 광군은 중앙군이 아닌 지방군이었다. 가령 예천에 있는 개심사 석탑을 쌓는 일에 중앙군이 동원되었을 까닭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리고 이처럼 광군이 지방군이었다면 그것을 농민으로 구성된 농민군이었다고 보아 큰 잘 못은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무려 30만 명에 달했다는 광군이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상비군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거 란의 침입이라는 일시적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그 위급한 사태가 사라지자 해체된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은 현종 초에 광군이 개심사의 석탑 조성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서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광군은 필요하면 언제든지 동원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는 상설적인 군사조직으로서 일종의 농민예비군과도 같은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일단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광군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는 그 임무와 지휘권의 소재, 그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 등에 대하여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광군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되었던 것인만큼 유사시 광군이 전선에 투입되었을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비록 광군이 전투에 동원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현종 원년(1010) 거란의 2차 침입 때 康兆가 30만 군을 이끌고 출동하였다고 하므로 그의 휘하에는 광군이 속해 있었을 법도 하다.

그런데 광군이 농민들로 구성된 예비군이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광군이 전투에 동원되는 것은 대규모로 군사를 일으켜야 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

²⁾ 李基白,〈高麗 光軍考〉(《歷史學報》27, 1965;《高麗兵制史研究》,一潮閣, 1968) 는 州縣軍의 한 기원으로서 光軍에 주목한 본격적인 연구이다. 이하 광군에 대한 서술은 이에 의거하게 될 것이다.

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었나 한다. 다시 말하자면 광군은 전투보다는 노역을 담당하는 부대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듯한 것이다. 광군이 개심사 석탑을 쌓는 일에 동원되었다는 사실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겠거니와, 더욱 추측을 가한다면 광군이 조직되었던 정종 2년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던 변경 지역에서의 축성에 광군이 동원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듯하다.

이처럼 노역을 주 임무로 하였던 光軍의 조직은 어떠하였으며, 그 지휘권은 누가 장악하였던 것일까. 〈開心寺 石塔記〉에 따르면 그 조성 공사에 수레 18 량, 우 1,000필과 함께 광군 46隊가 동원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광군이 대를 단위로 하여 조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앙군의 1대가 25명으로 편성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광군의 경우도 역시 그러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開心寺 石塔記〉에 나오는 隊正 邦祐는 아마도 광군의 대를 지휘하였던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방우를 포함하여 개심사 석탑을 세우는 데 있어 주동적인 역할을하였던 인물들은 예천 지방의 鄕東들이었다. 이 사실은 석탑 건립에 동원된 광군이 향리의 지휘 아래에 놓여 있었음을 알려 주는 것에 다름아닐 것이다.

고려 초에는 본격적인 의미의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였다. 威宗 2년(983)에 겨우 12곳에 지방관을 둘 수 있었으며, 비교적 넓은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할 수 있었던 것은 성종 14년에야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는 성종대 이전에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치력을 온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한다. 즉 지방의 통치는 그 지방의 豪族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농민들을 군역에 동원하기가 불가능하였을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제 광군이 중앙정부의 징병에 의해 조직된 것이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다시 말해 당시 지방의 통치를 사실상 맡고 있었던 호족세력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 바로 광군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광군의 부대 지휘권을 장악하였던 것도 지방의 호족들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후에는 그들의 후신인 향리들이 그 지휘권을 이어 갖게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한편 이처럼 광군의 부대 지휘권을 호족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광군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 다. 가령 광군의 설치와 함께 두어졌던 광군사는, 비록 그 임무에 대하여 전 하는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전국의 광군을 통제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의 관부였을 것이다.

광군사가 유사시 광군을 전투에 동원하는 임무를 맡는 기관이었을 것이라는 점에는 별 이론이 없을 줄 안다. 그런데 광군이 전투부대였다기 보다는 노역부대였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광군사의 기능이 비단 그에 그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王規의 난을 진압하면서 집권하였던 정종이 왕권을 강화하려고 노력하였던 사실이 주목된다. 정종이 西京으로의 천도를 추진하였던 것은 그 노력의 일환이었거니와, 그렇다면 광군의 설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정종이 광군의 조직을 구상하였던 것은,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함이기도 하였지만, 궁극적으로는 농민의 역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배를 목표로 한 것이었으며, 그것을 담당할 관부가 바로 광군사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성종 이전에 중앙정부는 지방에 대한 지배력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정종의 계획은 그대로 실현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우선 지방의 호족들이 그에 반발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호족들과 연결을 가지는 중앙의 貴族들도 역시 그러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뿐만 아니라 그리 된다면 호족은 물론 중앙정부로부터도 노역을 부담했어야 할 농민들이 그에 반발하였으리라는 점도 쉽게 상상이 될 것이다. 결국 농민의역역을 직접 장악하려는 중앙정부의 의도는 그대로 관철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호족들에게 광군에 대한 지휘권을 맡기는 간접적인 지배가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요컨대 광군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호족에 의한 농민역역의 공동지배 속에 이루어진 군사조직이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나) 광군과 품군

그렇다면 이러한 성격의 광군이 어떻게 州縣軍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일까. 광군사의 명칭이 광군도감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광군사로 환원되었다는 사 실에서 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光軍司가 光軍都監으로 개칭된 시기는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종 2년 (1011) 이전일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광군이 지방의 군사

조직이었다는 점에서 그 시기가 현종 2년 이전 지방의 통치조직이 정비되었 던 어느 때였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성종 14년(995)의 지방제도 개편이 크게 부각된다. 12軍(12節度使)의 설치는 군사적으로 호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3)이 점을 고려하면 당시 성종이 호족의 지휘 아래에 놓여 있었던 광군을 중앙정부의 지배 하에 두려는 조치를 계획하지는 않았을까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광군사에서 광군도감으로의 명칭 변경도 이러한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다.

성종이 꾀하였을 구체적인 조치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잘 알 길은 없지만 성종대에 折衝府의 명칭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穩宗 원년(998) 전시과에 折衝都尉와 果毅 등의 관직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등에 주목할 수도 있다. 절충부는 府兵制를 실시하였던 唐의 지방 軍府였으며, 그 장관과 차관이 절충도위와 果毅都尉였다. 이 사실은 성종이 당의 부병제를 모방하여 군사제도를 개혁하려는 뜻을 갖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성종 14년(995)에 중앙군의 핵심인 6衛가 조직되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4) 이러한 점들을 아울러 염두에 두면 성종이 광군을 당의 절충부와 같은 것으로 개편하려고하였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광군도감은 광군을 개편하여 6위 소속의 절충부로 만드는 일을 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관부였을지도 모르겠다.5)

그러나 광군을 중앙정부의 지배 하에 두려던 성종의 시도-그것이 당의 부병제에 입각한 것이었든지 그렇지 않았든지 간에-는 실패로 끝나고 말았던 듯하다. 〈開心寺 石塔記〉에 보이듯이 현종 초에도 광군이 존재하고 있었을 뿐만아니라 여전히 豪族(鄕吏)의 지휘 하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성종 14년(995)의

³⁾ 千寬宇,〈閑人考-高麗 初期 地方統制에 관한 一考察-〉(《社會科學》2, 1958; 《近世朝鮮史研究》,一潮閣, 1979, 24~25零).

⁴⁾ 李基白、〈高麗 二軍 六衛의 形成過程에 대한 再考〉(《黃義敦先生古稀記念 史 學論叢》、1960; 앞의 책、1968、77~79等).

⁵⁾ 하지만 이와 다른 견해도 있다. 일반 농민들이 光軍에 소속되었다면, 같은 농민이었지만 豪族 휘하의 私兵으로 있던 자들은 6衛에 속하게 되었고, 그것을 담당하였던 기관이 折衝府였다는 것이다(洪元基,〈高麗 二軍·六衛制의 性格〉(《韓國史研究》68, 1990, 58~60쪽).

지방제도가 목종 8년에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든지, 현종 2년 광군도감이 광군사로 복구되었다는 사실도 이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광군이 주현군으로 변모하는 것은 언제였으며, 주현군 중 어느부대와 연결되는 것이었을까. 주현군은 保勝軍・精勇軍・一品軍과 村留하는 $2\cdot3$ 品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중에서 향리들이 지휘관으로 임명되었고, 노동부대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1품군이었다. 그러므로 광군이 주현군 중의 1품군으로 개편되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단《高麗史》권 83, 兵志, 州縣軍條에 의하면 1품군은 총 19,882명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광군 30만 명에 크게 못미치는 수이다. 아마 1품군에 속하지 않았던 나머지는 $2\cdot3$ 품군이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光軍이 적어도 현종 2년까지 존재하였음은 이해에 광군도감이 광군사로 복구되었음이나 역시 이 해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開心寺 石塔記〉에 광군이 등장하고 있음에서 알 수가 있다. 한편 1품군에 관한 최초의기록은 현종 22년(1031)에 세워진 淨兜寺 5층 석탑의 造成形止記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광군이 주현군으로 개편된 것은 현종 3년에서 현종 22년에 이르는 사이의 어느 시기였다고 보아 좋을 것이다. 현종 3년 12군을 폐지하고 75道 按撫使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제도의 개편이 시작되어 현종 9년에 지방제도의 골격이 갖추어졌다. 이러한 지방제도의 정비와 동시에 광군이 주현군으로 개편 정비되었던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 진수군

이제까지 豪族(향리)의 지배 하에 있었던 광군이 주현군 중 1품군과 2·3 품군으로 개편되었음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지방에 존재하였던 군대가 광군 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는 병력이 지방에 배 치되어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되는 바일 것이다. 이들을 鎮守軍이라 고 부르기로 하겠거니와, 진수군은 광군과 더불어 주현군의 기원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6)

⁶⁾ 光軍과 달리 중앙정부의 직접 지배 아래 있었던 지방군을 鎭守軍이라고 하고, 그것이 州縣軍의 한 기원이 되었음을 규명한 것으로는 李基白,〈高麗 地方制

성종 2년 이전에 상주하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하였던 중앙정부는 지방의 요지에 중앙의 지휘를 받는 군대를 두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설치하였던 것이 都護府와 都督府였다.

이미 태조는 자신이 즉위하던 그 해(918)에 여진족을 제어하기 위하여 平壤大都護府를 둔 바 있었다. 그후 태조 13년에는 후백제를 공격하는 기지로서 天安都督府를 만들었다. 한편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후백제의 수도였던 全州에 安南都護府를, 신라의 서울 경주에 安東大都護(督)府(혹은 慶州大都督府)를 각각 두었다. 이들은 후백제와 신라의 옛 백성들의 반란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태조대의 도호부와 도독부들은 곧 사라지고 말았다. 하지만 광종과 경종대에는 安南都護府(古阜)와 安東都護府(尚州)가 새로이 두어졌다. 이들을 설치하였던 목적은 이전의 안남도호부나 안동대도호부의 경우와는 달랐을 것으로 생각된다. 후백제나 신라의 옛 백성들의 동태를 군사적으로 감시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지방에 반독립적인 상태로 남아 있었던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을 것으로 헤아려지는 것이다.

이러한 도호부와 도독부에 소기의 목적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을 것임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 군대가 중앙에서 직접 파견되었을 경우는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고 해당 지역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을 것임에는 거의 의심의여지가 없어 보인다. 도호부와 도독부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그 지휘권은 지방의 호족들이 아니라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에게 있었을 것이기때문이다. 성종 2년의 12목 설치로부터 지방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였음은다 아는 바이거니와, 지방제도에서 군사적인 측면이 크게 고려되었던 것은성종 14년에 이르러서였다. 이 때에 개편된 지방제도를 일람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7)

그 중에서도 군사적 성격이 뚜렷한 것은 도호부사가 임명된 5주와 절도사

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 1965; 앞의 책, 1968, 182~201쪽)이 있다. 이하의 서술은 대체로 李基白이 논의한 바에 의지하게 될 것이다.

⁷⁾ 李基白, 위의 책, 193쪽에서 옮김.

⟨표 1⟩

地方官	40 3# rbs /-b	// rtr /-tr	+07 [EE] (++ /+-		مل ابط	12-L - 35cm /-L-
道	都護府使	節度使	都團練使	團 練 使	刺史	防禦使
關內道	豊州(豊山)	楊州(서울)		抱州(抱川)		鹽州(延安)
(29州 28縣)	(安西都護府)	(左神策軍)		樹州(富平)		安州(載寧)
		海州 (右神策軍)		衿州(始興) 水州(水原)		鳳州(鳳山) 信州(信川)
		【石岬水里/ 廣州		竹州(竹山)		平州(平山)
		(奉 國 軍)		11111(11111)		洞州(瑞興)
		黄州				谷州(谷山)
		(天 德 軍)				
中原道		忠州			堤州(堤川)	
(13州 42縣)		(昌 化 軍)			鎭州(鎭川)	
		清州				
河南道		(全 節 軍) 公州	運州(洪城)		仁州(牙山)	
(11州 34縣)			連州(स級) 懽州(天安)		14 17 17 17 17 17 17 17	
江原道		全州	TE/TI()(S/)		44411644411	
(9州 43縣)		(順義軍)				
嶺南道		尙州	岱州(星州)		龍州(龍宮)	
(12州 48縣)		(歸 德 軍)	剛州(榮州)		稽州(永同)	
					善州(善山) 吉州(安東)	
5 本 ※	△ Ⅲ/ △ ※)					
嶺 東 道 (9州 35縣)	金州(金海) (安東都護府)				永州(永川) 河州(河陽)	
(37日 33%)	(女來和晚州)				咸州(咸安)	
					密州(密陽)	
山南道		晋州	許州(咸陽)		固州(固城)	
(10州 37縣)		(定 海 軍)				
海陽道	朗州(靈岩)	羅州	潭州(潭陽)		貝州(寶城)	
(14州 62縣)	(安南都護府)	(鎭 海 軍)			光州(光州)	
		昇州 (袞 海 軍)				
朔 方 道	和州(永興)	(农 (母 里)		交州(淮陽)		高州(高城)
(7州 62縣)	(安邊都護府)			春州(春川)		湧州(徳原)
(1)11 02/1911)	CAZ HPILZ/IJ/			東州(鐵原)		文州(文川)
				漳州(漣川)		
				登州(安邊)		
				溟州(江陵)		
VIII VII				陟州(三陟)		***
月西道 (14世 4度 7億)	寧州(安州)					雲州(雲山)
(14州 4縣 7鎭)	(安北都護府)					延州(朔州) 博州(博川)
						嘉州(嘉山)
						撫州(寧邊)
						順州(順川)
						殷州(殷山)
						肅州(肅川)
						慈州(慈城)

가 임명된 12주 그리고 防禦使가 임명된 19주이다. 그 중 방어사가 임명된 여러 주들은 禮成江과 元山灣 이북에서 찾아지므로 논외로 한다면 일단 도 호부사와 절도사가 임명된 여러 주들이 관심을 끈다.

都護府使가 임명된 5주는 흔히 5都護府라고 불리고 있다. 성종 2년에 두어졌던 安北都護府에 더하여 네 도호부가 이 때 새로 설치되었다. 이들 도호부는 국방을 위한 군사적 기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도호부가 북쪽의 대륙으로부터나 서쪽 및 남쪽의 바다로부터 오는 외적의 침략에 대비할 수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능히 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節度使가 임명된 12주에는 軍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들을 12군이라고불러 좋을 것이다. 12군을 두었던 것은 지방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8) 都護府가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는 국방기지였다면 12군은 국내의 호족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성종 14년에 크게 정비된 지방제도는 그보다 10년 뒤인 목종 8년(1005)에 후퇴하였다. 양계지방을 논외로 한다면 지방관은 5도호부와 12군만이 남게 되었던 것이다. 道가 없어짐에 따라 5도호부와 12군은 이제, 성종 2년에 설치되었던 12목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方伯과 같은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는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여전히 간접적으로 실현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할 것이다. 아울러 군사적인 성격이 강한 5도호부와 12군만이 남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까지도 지방 통치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종 14년 설치된 5도호부와 12군이 속하였던 군대는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을까. 이미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 지방에는 광군이 있었다. 그리고 성종 14년 중앙정부에서 광군을 직접 지배하려고 시도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도 앞에서 지적하였다. 그렇다면 광군도 도호부사와 절도사의 감독과 지휘를 받게끔 예정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광군을 직접 지배하려던 성종의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던 듯하다. 뿐만 아니라 국방과 호족세력의 견제라는 5

⁸⁾ 千寬宇, 앞의 책, 24~25쪽.

도호부와 12군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블 때, 그 곳에 노동부대의 성격을 지니면서 호족의 지휘를 받았던 광군이 배치되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점에서 5도호부와 12군에는 광군과는 달리 오히려 전투부대적 성격을 지닌, 그리고 호족세력에 대한 견제를 무력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는 중앙정부 직속의 군대가 배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이전의 도호부나 도독부에 배치되어 있었던 군대와 그 성격이 서로 통한다고 여겨진다.

鎮守軍을 구성하였던 군인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였을까. 그것을 알려 주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추측은 가능할 것이다. 우선 중앙에서 파견된 군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진수군이 그들만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가령 태조 때에 중앙군의 지배 하에 놓여 있었던 지방의 농민을 정발하여 진수군에 충당하는 경우가 있었음의을 떠올리면 지방민들로 구성된 부대가 배치되어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다.10) 다음에 언급하게 될 것이지만, 진수군의 맥을 잇는 것으로 여겨지는 州縣軍 소속 保勝軍과 精勇軍은 지방민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 점에서 오히려 해당 지방민들이 진수군의 주력을 형성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헤아려지거니와, 그렇다면 그 대부분은 그 지역의 농민들이었다고 일단 상정할 수 있을 듯하다.

그런데 진수군을 구성하였던 농민들은 광군에 소속되었다가 주현군 중의 品軍으로 편제되었던 농민들과 어떠한 점에서 구별되는 것일까. 이와 관련된 사료 역시 찾을 수 없다. 다만 호족 지배하에 역역을 담당하는 일반 농민들과 군역을 담당하였던 兵農一致的인 성격을 갖는 私兵이 있었으며, 일반 농민들이 광군에 소속된 반면 사병들은 6衛에 흡수되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호족세력의 군사적 기반을 해체하기 위한 성종의 일련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었으며, 그 결과 호족들의 사병이 국가의 公兵으로 흡수되었다는 것이다.11) 이는 결국 주현군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이 부병제적인 원리에 의해 番上하여 京軍 소속의 그것을 구성하였다는 의견으로서, 이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지만, 만약 이 견해를 따른다면 진수

⁹⁾ 李基白, 〈高麗 太祖時의 鎭〉(《歷史學報》10, 1958; 앞의 책, 1968, 233~235쪽).

¹⁰⁾ 李基白, 〈高麗 土地制度의 整備와 州縣軍의 成立〉, 위의 책, 195쪽.

¹¹⁾ 洪元基, 앞의 글, 56~60쪽.

군을 구성하였던 농민들은 호족들의 사병이었다는 것이 된다. 그런데 호족들의 사병의 대부분이 본래는 농민 출신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그들을 병농일치적인 성격의 농민으로 볼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들은 전문적인 군인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12)

한편 호족 휘하의 群小豪族들과 직업적 군인들을 진수군의 구성원으로 파악하려는 견해도 있다.¹³⁾ 성종대에 호족세력의 무력적 기반이 해체되면서 그들이 국가의 군사조직 체계에 흡수되어 주현군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이되었고, 그들이 번상하여 경군 6위의 그것이 되었다고 본 점 등은 앞의 견해와 비슷하며, 오히려 선구적인 듯한 느낌이지만, 그들을 후대의 향리와 같은 계층이라고 보는 점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한 계층에 속하였던인물들이 진수군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렇다고 하여 과연그들로만 진수군이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이들 5도호부와 12군에 소속된 진수군이 주현군으로 재편성되었던 것은 언제였을까. 광군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이 역시 현종 3년(1012)에서 현종 9년에 이르는 어느 시기였다고 보아 좋을 줄 안다. 현종 3년 지방제도 정비의골자는 12절도사를 75도 안무사로 개편한 데에 있었다. 그 중 지방관의 수가12명에서 75명으로 크게 늘어 났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에서 지방에 대한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논의와 관련하여 보다 주목되는 것은 지방관의 명칭이 절도사에서 안무사로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방에 대한 군사적 감찰이라는 성격이강하였던 지방제도가 행정적인 성격의 것으로 바뀌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다면 12군의 진수군은 이 때 지방의 행정조직과는 별도의 군사체계에 편입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진수군은 12군의 폐지와 함께, 따라서 75도 안무사의 설치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주현군으로 변모하기 시작하여 현종 9년 지방제도의 골격이 갖추어지면서 주현군으로의 재편성이 완료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¹²⁾ 李基白,〈新羅私兵考〉(《歷史學報》9, 1957;《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276~277圣。

¹³⁾ 金塘澤、〈高麗 初期 地方軍의 形成과 構造-州縣軍의 性格-〉(《高麗軍制史》, 陸軍本部、1983)、119~124等。

324 Ⅲ. 군사조직

진수군은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의 직접적인 기원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는 없지만, 광군이 향리가 장교가 되는 1품군이나 2·3품군의 기원이었다면 중앙정부의 지휘 하에 놓여 있었을 이들을 보승군과 정용군에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들과 같은 명칭을 가진 부대가 중앙군에도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이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2) 주현군의 성격

가. 병종과 배치

〈丑 2〉

道	軍 事 道	保 勝	精 勇	一 品	계
交 州	春 州 道 東 州 道 交 州 道	133 - -	776 971 477	572 650 305	[1,481] [1,621] [782]
道	계	[133]	[2,224]	[1,527]	[3,884]
楊廣道	廣南安仁忠原淸公洪嘉 州京南州 州 州州林 州京南州 州 州州林	258 133 159 194 175 241 122 538 326 338 98	546 864 292 187 291 357 203 708 553 497 251	536 529 282 227 372 520 248 850 527 713 201	[1,340] [1,526] [733] [608] [838] [1,118] [573] [2,096] [1,406] [1,548] [550]
	계	[2,582]	[4,749]	[5,005]	[12,336]
慶尚道	所梁金密尚安京晋陝巨固南州州州城 都府牧州大山州 州大山州 州湾城海州州河城海	134 57 188 245 665 591 54 277 373 - 26 (行首弁)17	145 147 278 427 1,307 953 801 404 229 50 53 17	181 173 431 532 1,241 1,018 647 730 448 128 109 64	[460] [377] [897] [1,204] [3,213] [2,562] [1,502] [1,411] [1,050] [178] [188] [98]
	계	[2,627]	[4,811]	[5,702]	[13,140]

¹⁴⁾ 李基白,〈高麗 州縣軍考〉(《歷史學報》29, 1965;《高麗兵制史研究》, 1968, 204~205쪽)에서 옮김. []의 합계는 李基白의 계산임.

	7 III #F 74-	150	1.01.4	0.07	FO 0017
	全州 牧道	150	1,214	867	[2,231]
全	南 原 道	205	800	636	[1,641]
王	古 阜 道	54	610	545	[1,209]
	臨 陂 道	_	341	200	[541]
1111	進禮道	-	211	152	[363]
羅	羅州牧道	454	848	922	[2,224]
	靈 光 道	-	401	368	[769]
/Ar-	寶 城 道	322	412	513	[1,247]
道	昇 平 道	240	184	415	[839]
	계	[1,425]	[5,021]	[4,618]	[11,064]
-11-	黄 州 道	214	320	277	[811]
西	谷 州 道	295	293	291	[879]
<i>></i> /:	安西大都護道	450	874	838	[2,162]
海	豊 州 道	333	455	235	[1,023]
7₩	甕 津 道	107	210	612	[929]
道	계	[1,399]	[2,152]	[2,253]	[5,804]
	開城府道	52	240	190	[482]
京	承 天 府 道	50	160	113	[323]
	江 華 道	199	54	171	[424]
畿	長湍道	134	343	303	[780]
	계	[435]	[797]	[777]	[2,009]
총	계	[8,601]	[19,754]	[19,882]	[48,237]

《高麗史》兵志 州縣軍條는 구성원의 兵種에 따른 배치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이 위의 일람표이다.¹⁴⁾

〈표 2〉에 따르면 주현군은 보승군과 정용군 그리고 1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편 〈표 2〉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들 외에도 주현군에 넣어야 할 것으로 2⋅3품군이 있다. 1품군이 주현군에 속하였다면 당연히 이들도 주현군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기록에 「村留」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 2품군과 3품군은 村을 단위로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2·3품군이 兵志 州縣軍 기록에 빠져 있다 는 사실은 그들이 중앙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 되며, 그렇다면 2·3품군은 주·부·군·현의 治所에는 배치되지 않았던 것 이 아닐까 한다. 그리고 屬縣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뒤에 언급되지만 속현에는 보승군 등이 배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한편 보승군·정용군·1품군이 촌에까지 그 부대조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표 2〉를 보면 보승군 등은 5도 및 경기 내의 보다 세 분된 도를 단위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도는 주현군의 배치를 위하여 구획된 軍事道라고 해야 할 것이다. 15) 이 군사도는, 기록의 누락이라고 여겨지거나 혹은 예외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留守官‧都護府使‧牧使‧知事‧防禦使‧縣令 등이 파견된 京‧州‧府‧郡‧縣 등과일치하고 있다. 이 점에서 일단 보승군 등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행정구역을 단위로 배치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보승군 등이 경ㆍ주ㆍ부ㆍ군ㆍ현의 치소에만 배치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표 2〉에 보이는 병력의 수가 각 군사도 내 병력의 한계라는 점에서 보승군 등이 속현에도 배치되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중앙에서 지방관이 파견되었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京에서 村에 이르는 모든 수준의 지방행정단위에 주현군이 배치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하 게 된다. 이것은 주현군이 지방의 양인·농민·장정으로서 이 조직망에서 빠질 수 있는 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국적인 군사조직이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주현군이 지방관이 파견되는 행정구획을 단위로 파악되었다는 것은 중앙정부의 주현군에 대한 파악과 통제가 직접적인 것이었음을 말한다고하겠다. 단 그 일부인 2품군과 3품군이 중앙에서 파악하고 있는 통계 속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같은 주현군이라도 중앙으로부터 받는 통제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음을 알려 준다.16)

나. 보승군과 정용군

가) 경군 소속 보승군・정용군과의 관계에 대한 제논의

주현군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은 같은 이름을 가진 부대가 경군에도 있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점은 양자의 관계가 밀접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알려진 대로 高麗 前期 兵制史를 둘러싼 논쟁은 경군이 부병제적인 원리에 의해 번상한 주현군으로 구성되었는가 혹은 그렇지 않고, 軍班氏族 출신의 전문적인 군인으로 구성되었는가에 집중되고

¹⁵⁾ 末松保和는 이를 五道의 道와 구분하여「下部道」라고 하였다(〈高麗四十二都府考略〉,《朝鮮學報》14, 1959, 580쪽).

¹⁶⁾ 州縣軍의 兵種과 配置에 대한 이상의 서술은 李基白, 앞의 책, 203~208쪽에 의함.

있거니와,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이 경군의 그것들과 어떠한 관계에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그 논쟁의 핵심적인 사항 중의 하나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관련이 있는 여러 견해들을 간략히나마 소개하도록 하겠다.¹⁷⁾

먼저 주현군 소속의 보승군·정용군은 물론 1품군까지 모두 상경 시위하여 경군을 형성하였을 것이라는 견해¹⁸⁾와 주현군 중 1품군을 제외한 보승군과 정용군이 중앙으로 번상하면 곧 경군 6위의 그것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¹⁹⁾가 제출되었거니와, 서로 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들은 모두 주현군이 부병제적인 원리에 의해 경군과 연결된다고 하는 주장이다.

그런데 이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첫째, 1품군은 노동부대였으므로 그것을 전투부대였던 경군 6위의 보승군이나 정용군과 연결시킬 수 없다.²⁰⁾ 둘째, 1품군을 제외하더라도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은 각각 8,601명과 19,754명인 것에 비해 경군의 보승군은 22령 22,000명, 전용군은 16령 16,000명이다. 이 점에서 주현군의 보승군이 상경하여 경군의 보승군을 구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²¹⁾ 셋째, 혹 주현군과 경군 소속 보승군의수 차이를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의 총 인원 수는 28,355명에 불과한 반면 경군에 속한 보승군과 정용군의 합계는 38,000명이므로 전자가 교대로 상경하여 후자의 그것을 구성하기에는 전자의 인원이상당히 부족하다.²²⁾

이상과 같은 이유를 들어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을 바로 경군의 그것들에

¹⁷⁾ 이 문제에 대해서는 京軍에 대한 항목에서 검토될 것이다. 보다 자세한 것은 그것을 참고하도록 한다.

¹⁸⁾ 末松保和는 5道의 軍事道 당 평균 병력 수가 대략 1,000명인 것에 착안해서 약 500명 정도인 京畿의 4개 군사도를 둘로 묶고, 지방의 42(원래는 44)군사 도의 州縣軍은 주둔 병력이 아니라 중앙에 番上하여 京軍 6衛의 42領을 구성 하도록 할당된 병력의 수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앞의 글, 583~584쪽).

¹⁹⁾ 李佑成, 〈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19쪽.

²⁰⁾ 李基白,〈高麗 軍人考-附說 末松氏의「高麗四十二都府考略」을 읽고-〉(《震檀學報》21, 1960; 앞의 책, 129쪽).

²¹⁾ 李基白, 위의 글, 128~129쪽. 이는 末松保和의 의견에 대한 비판이었지만, 一品軍을 논외로 하였던 李佑成에 대한 비판으로 보다 유효하다.

²²⁾ 즉 州縣軍의 保勝軍과 精勇軍이 번상하여 京軍의 그것을 구성하려면 전자의 인원 수가 후자의 인원 수에 비해 많거나 최소한 그와 같아야 할 것이다(李 基白,〈高麗 州縣軍考〉, 앞의 책, 210쪽).

연결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던 논자도, 그러나 양자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으리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그는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이 正軍訪丁人 1,000명과 함께 경군의 1領을 구성하였다는 望軍丁人 600명일 것으로 추측하였다. 주현군 소속의 정용군과 보승군은 準京軍이며, 국가에서는 이를 편제상으로만 6위 소속으로 파악하고 있었다는²³⁾ 것으로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군의 1령이 1,000명으로 구성되므로 正軍訪丁人은 경군 소속의 정규 군인일 것임에 비해 望軍丁人은 경군의 현실적인 구성원이기보다는 편제상의 존재일 것으로 추측되고, 이 점에서 그들이 지방에 있었다고 보아 무난할 것이다. 둘째, 아래의 〈표 3〉에서 보듯이 2군과 6위의 45령에 각 600명씩의 망군정인이 있었다면 그 총 수는 27,000명이 되는데,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의 총 수도 28.355명이어서 숫적으로 비슷하다.24)

⟨표 3⟩

		京軍의 望軍丁人	州縣軍
保 勝	軍	13,200 (600×22)	8,601
精 勇	軍	9,600 (600×16)	19,754
其	他	4,200 (600× 7)	-
계		27,000 (600×45)	28,355

하지만 부병제 논자들의 견해를 비판하고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을 경 군의 망군정인으로 보고자 하였던 이러한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 이 제시되었다.²⁵⁾

²³⁾ 千寬字는 앞의 책, 26쪽의 주 26)에서 州縣軍이 "형식상의 편제로는 京軍과 마찬가지의 六衛에 소속되는 체제를 취하였던 듯하다"고 한 바 있다. 단 千寬字는 주현군 전부가 그러하였다고 보았으나, 그 중 保勝軍과 精勇軍만이 그러 하였을 것이다(李基白, 앞의 책, 209쪽의 주 8).

²⁴⁾ 李基白, 위의 책, 210~211쪽. 한편 李基白은 자신의 견해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안 중에서 가장 타당성이 많다고 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자인하였다. 첫째, 京軍의 望軍丁人을 州縣軍의 保勝軍과 精勇軍에 비길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 둘째,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경군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으로 구분된 망군정인의 인원 수와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의 인원 수(혹은 비율)가 일치하고 있지 않는 난점이 있다.

²⁵⁾ 姜晋哲,〈軍人田〉(《高麗土地制度史研究》,高大出版部,1980),112~124\.

첫째, 이미 지적된 바이지만,26) 주현군 소속 보승군·정용군과 경군 소속 그것들의 수의 차이 혹은 비율의 차이는 그 각각에 대해 전하는 사료가 연 대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시간이 흐르면 서 군사적, 사회적 요인의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보승군과 정 용군의 병력 수는 크게 변화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주현군 소속 보승군 과 정용군의 총원이 28,355명으로 경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의 총원에 현저 히 미치지 못하는 것은 경군 소속 그것들의 총원 38,000명이 규정상의 것일 뿐이고, 실제 병력은 그에 못미쳤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셋째,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을 경군의 망군정인으로 볼 경우 경군의 보 승군과 정용군을 제외한 2군 및 기타 領의 망군정인(〈표 3〉의 기타 4,200명)도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이 되는 셈이어서 문제가 있다.27)

결국 이러한 견해는 부병제적인 원리에 의해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이 경군의 그것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을 경군의 그것들과 직결되는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들이 제시되었다.²⁸⁾ 하지만 이들 중에는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이 교대로 상경하여 경군의 그것 전부를 구성한다고 보는 견해²⁹⁾가 있는가 하면 경군의 그것 중 일부와 연결시키는 견해³⁰⁾도 있어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주현군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의 구성원을 향리에 준하는 신분을 가진 직업적 군인으

²⁶⁾ 末松保和、〈高麗の四十二都府について〉(《學習院史學》1, 1965;《靑丘史草》1, 1965, 238季).

²⁷⁾ 望軍丁人에 대해서는 경군 소속이면서 京軍의 정규군과는 구별되는 존재였던 雜色軍의 전신(武田幸男,〈高麗田丁の再檢討〉,《朝鮮史研究會論文集》8, 1971, 5~6쪽), 혹은 군인 선발의 인적 자원으로서 국가로부터 閑人田을 지급받았던 閑人(金塘澤, 앞의 글, 111~112쪽), 혹은 유사시 군대에 충보되어 군역을 질수 있는 充軍 대상자로서의 白丁(文喆永,〈高麗末・朝鮮初 白丁의 身分과 差役〉,《韓國史論》26, 1991, 79~80쪽)으로 보는 견해들이 제출되고 있는 실정이거니와 望軍丁人을 正軍訪丁人 중 명망있는 가문 출신자들을 가리킨다고 파악하는 의견도 있는 것이다(張東翼,〈高麗前期의 選軍 - 京軍 構成의 이해를 위한 一試論),《高麗史의 諸問題》, 三英社, 1986, 471~474쪽).

²⁸⁾ 金塘澤, 위의 글, 106~116쪽. 洪元基, 앞의 글, 74~75쪽. 張東翼, 위의 글, 477~478쪽.

²⁹⁾ 金塘澤, 위의 글, 106~116쪽 및 洪元基, 위의 글, 72~79쪽.

³⁰⁾ 張東翼, 앞의 글, 468~479쪽.

로 본 견해31)와, 또는 농민으로 파악하는 견해32)도 있어 역시 차이가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주현군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이 경군의 그 것들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었는가에 대한 논의는 전자가 후자와 직결된다고 보는가 그렇지 않다고 보는가에 따라 크게 갈라지고 있는 형편이다. 현재로서는 양자가 직결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세부적으로는 의견이 다른 형편이다. 그러므로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한 어떤결정적인 해결점에 도달하였다고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과 같은 명칭을 가진 부대가 경군에 도 있었다는 사실이,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든 중앙정부의 군사적인 직접 지휘 아래 놓여 있었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들에 대한 지휘권은 지방관을 비롯하여 중앙정부에서 파견한 지휘관들에게 있었던 것이다.33)

나) 임원·구성원·처우

같은 주현군 소속이었다고 하더라고 그 기원을 달리 하였던 보승군과 정용군이 1품군 및 2·3품군과 구별되는 존재였을 것임은 자명하다. 주현군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대는 보승군과 정용군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들과 같은 이름의 군대가 경군의 6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만을 떠올려도 쉽게 수긍이 될 것이다.

보승군과 정용군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전투에 동 원되었다. 외적의 침입에 대한 방어에도 동원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들의 주된 임무는 국방보다는 내란의 진압 등 지방의 치안 유지였을 것이다.

보승군과 정용군은 防戍의 임무도 띠고 있었던 듯하다. 그런데 방수에 동원되었던 보승군과 정용군은, 그 기간 중에 필요한 식량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부임하는 동안의 식량은 물론 그에 소요될 의복이나 개인 무기 등을 스스로 마련하여야만 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軍

³¹⁾ 金塘澤, 위의 글, 90~92쪽.

³²⁾ 洪元基, 앞의 글, 56~72쪽. 張東翼, 앞의 글, 468~479쪽.

³³⁾ 李基白, 앞의 책(1965), 211~213쪽.

事道마다 방수에 동원되는 인원 수가 결정되어 있었을 것임은, 각 군사도의 軍額이 서로 다름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보승군과 정용군이 전투는 물론 방수에도 동원되었다면, 그러한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 그들에게 부과되었을 것임은 이를 나위가 없을 것이다. 이밖에도 그들은 흔히 역역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각 군사도마다 주현군의 군액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므로 그것이 항상 충원되어 있어야 할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보승군과 정용군의 군액을 확보하는 방법은 連立制 즉 세습에 의한 것이 아니었을까 한다. 그리고 逃 散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選軍을 하였다. 이렇게 항상 충원되었다면 그들의 軍籍도 작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³⁴⁾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을 구성한 군인들은 누구였을까. 이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을 수 없다. 다만 北界 寧州(安北府)의 향리 출신인 宋△淸이의종 5년(1151)에 州鎭軍의 정용으로 임명된 일이 참고가 된다.35) 宋△淸이'鄕邑薄書之役'을 맡았다고 한 것을 보면 그는 향리직 중 諸史에 해당하는하급 향리였을 것이다. 주진군이나 주현군 소속 정용군의 군인이 그 사회적신분에 있어서 별로 차이가 없었다고 하면, 주현군의 정용군에도 하급 향리출신자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1품군의 장교나 其人이 될 수 없었던 하급 향리들이 주현군 중 보승군과 정용군에 소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36)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이 하급 향리들로만 구성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들이 '民'이라고 불리기 도 하였음을 보면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은 민병적인 존재였다고 할 수

³⁴⁾ 이상 州縣軍 소속 保勝軍과 精勇軍의 임무 등에 대해서는 李基白, 앞의 책, 213~218·209·211~213쪽에 의거함. 그 임무 중 防戍와 관련하여서는 趙仁 成,〈高麗兩界의 州鎭軍과 防戍軍〉(《高麗光宗研究》, 一潮閣, 1981) 122~125 쪽도 참고된다.

^{35)〈}宋將軍墓誌〉(《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425\.

³⁶⁾ 李基白, 앞의 책, 218~219쪽.

있다.37)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 그 대부분은 농민들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온당할 듯하다.38)

이처럼 주현군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이 대부분 농민으로 구성되었다고 할 때 그들과 品軍에 속하였던 농민들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 아무래도 그 것은 그들의 경제적인 처지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듯하다. 곧 이어 말하게 될 것이지만 주현군 중 보승군과 정용군은 원래의 소유지를 국가로부터 지 급받는 형식으로 군역의 대가를 받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면 그들은 품군 소속의 농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유한 농민들이 아니었을까. 즉 그들은 임무 수행에 드는 비용이나 물품 등을 스스로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토지 소유자였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39)

한편 앞에서 살펴 본 바에 따르면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은 전투에 동원되었을 뿐만 아니라 防戍나 훈련 등의 의무를 지고 있었고, 그에 소용되는 무기는 물론 식량과 피복 등을 스스로 마련하였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국가로부터의 응분의 보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토지였을 것이라는 점에는 별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40)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이 부병제적인 원리에 의해 번상하여 경군의 그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논자들은 전시과 안에 보이는 군인전이 그들에게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⁴¹⁾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도 군인전이란 그들이본래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民田이며, 그 지급이란 것도 그에 대한 면제조치

³⁷⁾ 李基白, 앞의 책(1965), 217쪽. 州縣軍 소속의 保勝軍과 精勇軍이 지방 관아에 상주하는 경우가 예상되기는 하지만(金塘澤, 앞의 글, 92쪽), 그렇다고 하여 전부가 그러하였으리라고는 여겨지지 않는다.

³⁸⁾ 李基白, 앞의 책, 218~219쪽. 州縣軍의 保勝軍과 精勇軍을 府兵制의 원리에 입각하여 番上侍衛하는 부대로 파악하는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거니와,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 점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단金塘澤만은 주현군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이 鄕吏에 버금 가는 계층의 인물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앞의 글, 90~92쪽). 하지만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그들만이 그 구성원이었다고 보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한다.

³⁹⁾ 姜晋哲, 앞의 책, 132쪽. 吳一純은 田 17結이 軍 1丁을 내는 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이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징발된 군인은 京軍과는 구별되는 州縣軍, 그 중에서도 保勝軍과 精勇軍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高麗前期 部曲民에 관한 一試論—田柴科制度, 一品軍과의 관련을 중심으로〉, 《學林》7, 1985, 7~8쪽).

⁴⁰⁾ 李基白, 앞의 글, 219쪽.

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고 결국 주현군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을 본질적으로 농민과 다름없는 존재라고 파악하는 견해⁴²⁾가 있는가 하면, 한편 그들이 收租權者로서 명실상부하게 군인전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었다고 보는 견해⁴³⁾도 있다. 그 중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이 수조권자였다는 주장은 그들 모두가 농민이 아니라 향리에 버금가는 신분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어 보인다.

반면 전시과에 규정된 군인전 외에도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에게 지급되었던 토지로서 軍田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단 그것이 그들의 민전 위에 설정되었던 것으로 여겼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견해⁴⁴⁾와 통하는 면이 있다.⁴⁵⁾ 전시과의 군인전과는 별도의 군전이 존재하였으리라는 점은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는데,⁴⁶⁾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주현군의 보승군과 정용군이 비록 편제상으로는 경군 6위에 소속되어 있었으나 그들이 교대로 상경하여 京軍의 그것이 되었다고 여기지 않는 논자47)는 주현군 중 보승군과 정용군이 경군과 같이 家田과 永業田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영업전이 전시과에 포함되어 있는 직역의 제공자인 경군의그것과 동일한 것일 수는 없다고 하였다. 비록 국가로부터 세습이 인정되었다고 하지만, 실은 국가로부터 새로 지급되었다기보다는 그들의 자영지를 명목상으로 그렇게 규정하였을 따름이었다고 한다. 즉 그들이 국가에 대하여 짊어지고 있었던 役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왕토사상에 입각해서 관념적으로국가로부터 지급된 것으로 처리48)된 데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49)

⁴¹⁾ 姜晋哲, 앞의 책, 109~116쪽. 金塘澤, 앞의 글, 96~101쪽.

⁴²⁾ 姜晋哲, 위의 책, 109~116쪽.

⁴³⁾ 金塘澤, 앞의 글, 97~98쪽.

⁴⁴⁾ 姜晋哲, 앞의 책, 109~116쪽,

⁴⁵⁾ 洪元基, 앞의 글, 63쪽의 주 102).

⁴⁶⁾ 吳一純, 앞의 글, 4~9쪽.

⁴⁷⁾ 李基白, 앞의 책(1965), 208~211쪽.

⁴⁸⁾ 李佑成,〈新羅時代의 王土思想과 公田〉(《趙明基博士華甲記念 佛教史學論叢》, 1965), 225等.

⁴⁹⁾ 李基白, 앞의 책, 215쪽.

이 토지는 보승군과 정용군에 의해서 어떻게 경영되었을까. 그들이 교대로 상경하여 경군의 그것이 되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기간 동안의 노동력 부족을 메꾸어 줄 존재를 예상하고 養戶가 복무 중인 군인을 대신하여 군인전의 경작을 돕고, 식량의 수송도 맡았다고 보았다.50) 반면 이와 달리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이 번상하여 경군의 그것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는 그들이 그 토지를 스스로 경작하였다고 보았다. 그 토지가원래 그들의 자영지였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뿐아니라, 그들에게 따로 양호가설정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는 것이다.51)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주현군 소속 보승군과 정용군이 어떤 명목의 토지를 받았는지, 그것을 어떻게 경영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이 경군의 그것과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었다고 보는가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 다만 국가에서 원래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를 지급의 형식을 빌어 그들이 지는 役의 대가로 하였으리라는 점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주현군 소속의 보승군과 정용군이 원칙적으로 자영농민들로써 구성된 兵農一致의 군인이었으리라는 점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다. 1 품군과 2 · 3품군

1品軍은 2·3品軍과는 달리 보승군·정용군과 함께《高麗史》兵志 州縣軍條에 그 인원 수가 기록되어 있다. 보승군이나 정용군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 의해서 1품군의 인원 수가 파악되고 있었다는 것은 1품군도 중앙의 명에 의해서 동원되는 부대였음을 알려준다. 보통 1품군은 일정한 기간씩 교대로 동원되도록 규정되었는데 2번 교대가 원칙이었고 기간은 1년씩이었다.

1품군이 전투에 동원되는 경우가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1품군은 전투를 위한 부대라기보다는 오히려 노동부대였다. 그것도 특별한 기술을 지닌 오늘 날의 공병과 같은 것이 아니라, 단순한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1품군이 노동부대였다는 점에서 그것은 같은 州縣軍 소속의 보승군·정용군과 구별된다.

⁵⁰⁾ 姜晋哲, 앞의 책, 128~129쪽.

⁵¹⁾ 李基白, 앞의 책, 219~220쪽.

그리고 1품군의 지휘관은 향리가 겸임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그 지휘관은 향리 중에서 궁술에 의해서 선발하고, 그 직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적절히 임명되었던 것이다.52) 이 사실은 1품군이 호족(향리)의 지배 하에 놓여 있었던 광군의 후신이라는 점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1품군 소속의 군인들도 물론 그 지방의 농민들이었을 것이다.

한편 1품군과는 달리 2품군과 3품군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있었다. 兵志 州縣軍條에 2·3품군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도 그러하거니와, 또 2·3품군 앞에 '村留'라는 수식어가 붙어 기록되어 있음도 이를 알려 주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1품군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2·3품군도 노동부대였을 것이다. 단지 중앙의 직접적인 통제 밖에 놓여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에 있어서의 노동에 동원되었다고 추측된다.53) 구체적으로는 佃軍으로서 宮院田・朝家田・軍人田 등의 경작에 집단적으로 동원되었을 것이라는 견해,54) 군사조직 내에서 養戶의 임무를 맡았을 것이라는 견해55) 등이 제시되고 있다.

2·3품군의 지휘관에는 향리가 아닌 村長·村正이 임명되었다고 짐작된다.56) 그리고 당연한 일이지만 촌락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2·3품군을 구성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1품군과 2·3품군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 1품군이 중앙정부의 명령에 의해 동원되었다면 그들에 대한 국가적인 처우에 있어서 보승군이나 정용군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짐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이들도 원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농민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57)하지만 주현군 소속의 보승군·정용군과 일품군이 지는 역의 경중이 있었고,

⁵²⁾ 千寬宇, 앞의 책, 35~36쪽.

⁵³⁾ 이상 一品軍과 二‧三品軍에 대한 서술은 李基白, 앞의 책, 220~226쪽에 의거함.

⁵⁴⁾ 李佑成、〈高麗의 永業田〉(《歷史學報》28, 1965), 10~12·15~16쪽,

⁵⁵⁾ 金塘澤, 앞의 글, 94~95쪽.

⁵⁶⁾ 李佑成、〈麗代 百姓考-高麗時代 村落構造의 一斷面->(《歷史學報》14, 1961), 41等.

⁵⁷⁾ 李基白, 앞의 책, 225쪽.

전자의 역이 후자의 역보다 무거운 것이었다면 비록 토지를 소유한 같은 농민이었다고 하더라도 전자의 경제적 지위가 후자에 비해 높았으리라는 추리가 가능할 듯하다.

그에 비해 2·3품군을 구성하였던 촌락농민들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수조하는 토지를 경작하여 租를 바치는 농민들이었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 보승군·정용군은 물론 1품군과는 달리 2·3품군을 生産物地代를 내는 佃戶와 같은 농민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2·3품군이라는 군사조직 속에서 파악된 까닭은 신라 이래의 촌락민 공동경작의 유풍이 남아서 2·3품군이 흔히 공동으로 노동에 동원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58)

한편 이상과 같은 파악과는 상당히 다른 견해도 있다. $1 \cdot 2 \cdot 3$ 품군이 신라의 $1 \cdot 2 \cdot 3$ 두품과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었다.⁵⁹⁾ 이는 같은 촌락농민이 다시 $2 \cdot 3$ 품군으로 구별되는 이유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았지만, 양자의 숫자의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고, 또 신라의 통일기, 적어도 하대에는 이미 $1 \cdot 2 \cdot 3$ 두품의 구별이 소멸되었다고 생각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⁶⁰⁾

최근 신라의 眞村主와 次村主가 각각 5두품과 4두품에 해당한다면 그 밑의 촌락민은 3두품과 2두품에, 집단예민으로서의 部曲民은 1두품에 비겨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견해도 제출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고려시대에까지 남아 군현에 소속된 촌보다 낮은 지위에 있었던 부곡에서의 군역부담자를 1품군이라고 부르게 되었을 것이라고 한다.61) 결국 이에 따르면 1품군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열악하였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그 구별이 없어지면서 '平人'혹은 '百姓'이라고 불리웠던 3·2·1두품에 부곡민을 포함시킬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⁵⁸⁾ 李基白. 앞의 책. 225~226쪽.

⁵⁹⁾ 武田幸男、〈新羅の骨品社會〉(《歷史學研究》299, 1958), 146~148쪽.

⁶⁰⁾ 李基白, 위의 책, 226쪽의 주 35).

⁶¹⁾ 吳一純, 앞의 글, 31~33쪽.

2) 주진군과 국방체제

(1) 양계의 주진과 주진군

兩界는 북방민족과의 국경지대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들이 침략해오는 길 목에 위치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양계는 군사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특수 한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양계를 구성하였던 행정단위는 州・鎭・縣 등이었다. 그 중에서 현은 그수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兩界에서는 어느 정도 후방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는 淸川江 및 元山灣 이남에 위치하고 있었다. 반면 가장 수가 많았고, 주로 전방 지역에 위치하였던 것은 防禦使와 鎭將(使)이 임명되는 주와 진이었다. 결국 양계 행정조직의 기본 단위는 5道의 주현과는 달리 주진이었다고할 수 있다.

양계 주진은 성곽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高麗史》兵志 城堡條에 나오는 축성 기록의 거의 대부분은 양계의 그것이다. 그러므로 축성은 곧 주진의설치를 의미하는 것이었으며, 諸州鎮은 諸城이라고도 불리웠다. 다음의 〈표 4〉와〈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려의 공식문서인「式目形止案」에도 각 주진이 某城으로, 제주진이 제성으로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행정도시가 아니라 무장도시였던 양계의 제주진은 각각 하나의 독립된 전투단위를 형성하고 있었다. 따라서 5도의 제현과는 달리 屬縣을 거 느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62) 그리고 양계의 제주진은 安北(北界)·安邊 (東界)의 두 都護府에 의해 관할되었다. 도호부는 국방을 위한 군사 기지로서 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이 점에서도 양계 주진이 군사적 성격이 강한 행정단위였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63)

《高麗史》兵志 州縣軍條에는 地方軍 모두를 주현군이라고 하고 있지만 州

⁶²⁾ 江原正昭, 〈高麗の州縣軍に關する一考察〉(《朝鮮學報》28, 1963), 38쪽.

⁶³⁾ 이상 兩界 州鎭의 군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주로 李基白, 〈高麗 兩界의 州鎭 軍〉(앞의 책), 240~244쪽에 의거하였다.

鎭의 지방군이 州縣의 그것에 선행되어 기록되어 있다. 한편《高麗史》地理 志에서는 5道에 이어 兩界가 취급되고 있음에 비교한다면 이는 주진에 배치된 지방군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고려시대에도 역시 그렇게 인식되었을 법하다. 그리고 주진의 지방군에 대해서는 지휘계통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대들의 지방별, 부대별 인원 수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주현의 지방군에 대해서는 단순히 지방별・부대별 인원 수만을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양계의 군사적 중요성으로 인하여 주진의지방군이 주현의 그것보다 조직적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64) 이와 같은 까닭에 5도의 주현에 배치된 지방군을 주현군이라고 한다면 양계의 주진의 그것은 州鎭軍이라고 구별하여 파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65)

(2) 주진군의 조직과 지휘계통

朝鮮 文宗 즉위년(1450) 藝文館 提學 李先齊가 올린 상서문에 양계 주진의 군사조직이 기재되어 있었던 고려의 「式目形止案」일부가 인용되어 있다.66) 이선제는 「식목형지안」으로부터 龜州・寧州(安北府)・猛州・鱗州 등 4城에 배치된 주진군의 조직(〈표 4〉)과 西北界 41성 주진군의 상황을 뽑아 제시하였다

	/ 11	4/												
				— E) —		_			- U) -		_	(З
В	軍額 単位	都領	中郎將	郎將	別將	校尉	隊正	抄軍	左軍	右軍	保昌	合(行)軍	白	丁 軍
城		人	人	人	人	人	人	隊	隊	隊	隊	人	隊	計人
	州城	(中郎 將) 1	2	6	14	28	57	24	20	5	8	1,637	125	3,294
寧(安	州城 北府)	(中郎 將) 1	假中郎 將 1	6 攝郎 將 3	13	26	53	16	26	4	7	1,523	141	3,666
	州城	(郞將) 1		1	5	11	22	8	8 (弩1)	2 (馬1)	4	630	89	2,072
庭外	州城	(中郎 將) 1	2	7	18	39	79	34 (馬6)	34	4	7	2,230	36	821

⁶⁴⁾ 李基白, 앞의 책, 244~245쪽. 千寬宇도 兩界와 5道의 지방군이 구별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앞의 책, 27쪽의 주 27).

<# A>

⁶⁵⁾ 李基白, 앞의 책, 239쪽.

^{66) 《}文宗實錄》 권 4, 문종 즉위년 10월 기묘.

⟨표 5⟩

① 諸城, 共 41			
② 合 計			
a, 抄猛將相將校軍士	幷 14,491	計, 隊(馬軍 97幷)	538 行軍 13,460
b, 左猛將相將校軍士	幷 13,475	計,隊(馬軍 71隊 計,隊(弩軍 48隊幷)	503 行軍 12,570
c, 右猛將相將校軍士	幷 4,979	計, 隊(馬軍 16幷)	107 行軍 4,803
d, 保昌將相將校軍士	幷 7,451	計,隊	268 行軍 7,168
以上, 抄猛將相將校軍士	并 40,396		
③ 雜 尺			
所 丁	1,268		
津江丁	624		
部曲丁	382		
驛 丁	1,585		
④ 白 丁 軍	70,960人	計,隊	2,895

(〈張 5〉),67)

《高麗史》범례에 따르면 志 편찬에 있어 기본사료가 되었던 것은 《古今詳定禮》·《式目編修錄》과 諸家의 잡록 등이었다고 한다. 「式目形止案」은 《식목편수록》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문서로 보인다. 양자의 명칭을 보거나 이선제가 《고려사》 및 《高麗史節要》의 편찬 위원이었음을 고려할 때 그러하다. 그리고 이선제에 따르면 그가 제시한 북계 주진군에 관한 자료는 고려 전성기 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선제의 상서문에인용된 주진군의 조직은 그에 대한 일차 사료라고 하여 좋을 만큼 가치를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68)

하지만 이선세가 「式目形止案」으로부터 인용하여 제시한 자료만으로 양계 주진군 조직의 전체적인 모습을 그려 내기 어려움은 물론이다. 따라서 그 전모 를 알기 위해서는 그와 아울러《高麗史》兵志 州縣軍條의 주진군 관계 기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北界와 東界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 다음의 〈표

⁶⁷⁾ 末松保和, 〈高麗式目形止案について〉(《朝鮮學報》25, 1962), 129~130쪽에서 옮김.

^{68)「}式目形止案」의 사료적 가치에 대해서는 末松保和, 위의 글, 123~126쪽이 참고된다.

6〉과 〈표 7〉이다.69)

《표 4〉의 주진군에 대한 기록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편의상 ②· ①· ①· ①로 표시하였다. ②는 주진군의 지휘계통과 그들의 인원수에 관한 것이다. ①에는 각 주진에 소속된 여러 부대와 그 병력의 수가, ②에는 白丁軍와 부대 수와 그 병력 수가 적혀 있다. 이러한 기재 방식은 〈표 6〉· 〈표 7〉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다른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표 6〉· 〈표 7〉의 ②· ①· ②· ④· ④는 대체로〈표 4〉의 그것들과 대응하는 것이다.

우선 ⑦를 보면 주진군의 지휘계통은 대략 都領(中郎將)—中郎將—郎將—別將—校尉—隊正으로 정리할 수 있다. 〈표 6〉·〈표 7〉에는 都領이 없는 주 진이 적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표 4〉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기록의 누락이라고 여겨진다. 단 북계의 朝陽鎭 등의 예에서 보듯이 도령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鎭將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던 듯하다. 도령에는 중랑장 중 1명이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중랑장이 없을 경우에는 낭장이 임명되기도하였다. 도령 이하 이들 지휘관들을 통틀어 將相將校라고 불렀음은〈표 5〉의②에서 알 수 있다.

④에 나오는 부대로는 抄軍・左軍・右軍・保昌・精勇・寧塞과 西京의 海軍이 있다. 이 중 정용군은 〈표 6〉에만 보이는데, 이는 초군과 같은 부대로보인다. 〈표 4〉에는 〈표 6〉의 정용군(麟州・猛州)과 초군(安北府・龜州)이 모두초군으로 표시되어 있고, 〈표 6〉에서 정용군이 있으면 초군이 없고, 초군이 있으면 정용군이 없어 양자가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하다. 초군・좌군・우군이 각각 抄猛・左猛・右猛으로도불리웠음은 〈표 5〉의 ②를 통해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북계에는 영색군이 없는 대신 보창군이 있고, 반면 동계에는 보

⁶⁹⁾ 李基白, 앞의 책, 246~247·250~251쪽에 실린〈표〉를 옮김. 〈표〉의 밑줄은 李基白의 계산이며,〈〉는 李基白이 수정한 것이다. 수정한 수로 계산하면〈표〉에 나타난 州鎭軍은 약 125,372명이 된다. 東界에는 神翳·步班·白丁隊가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의 존재를 가정하고, 이를 北界에서와 비슷한 비율로 따지면 약 17,000명 정도가 된다. 이러한 계산에 의하면 주진 군의 총병력은 대략 142,372명 정도로 볼 수 있거니와,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李基白, 앞의 책, 248~249·252~253쪽 참조.

창군이 없는 대신 영색군이 있다. 양자가 어떤 차이를 갖는 부대였는지는 잘 알 수 없으나 상호대응하는 부대라는 점에서 대략 같은 성질의 것으로 취급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서경의 해군은 국왕 행차시 大同江 등에서의 시위를 담당하는 특수부대였을 것이다.

그런데 抄軍·左軍·右軍과 保昌軍·寧塞은 구별되는 점이 있었다고 여겨진다. 우선 전자에는 馬隊와 弩隊가 포함되어 있다. 더구나 좌군과 우군에 비추어서 초군을 中軍으로 생각할 수 있다면, 이들은 전투시의 부대 배치의하나인 이른바 3군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이들이 바로 주진군의 정예부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보창군·영색군에는 마대나 노대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서경의 보창군은 保昌雜軍이라고 기록되어 있기까지 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초군 등에 비해 그 격이 떨어지는 부대였다고 추측된다.

이들 초군·좌군·우군·보창군·영색군 등은 ②에 나오는 장상장교의 지휘를 받는 부대였다. 〈표 5〉의 ②에 보이듯이 초맹·좌맹·우맹·보창의 장사장교와 군사를 합하여 그 인원이 표시되어 있는 것이다. 〈표 4〉에는 行軍 혹은 행군을 합한 인원수가, 〈표 5〉·〈표 6〉·〈표 7〉에는 행군의 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행군은 이들 여러 부대에 소속된 병사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여기서 초군 등 여러 부대의 편성을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그 최소 단위는 25명의 행군으로 구성되는 隊700였으며, 그 지휘관은 隊正이었다. 그런데 隊正과 校尉, 校尉의 別將, 別將과 郎將의 인원 비율은 대개 2:1로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隊 위에 50명, 100명, 200명 단위의 부대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그 지휘관은 각각 교위, 별장, 낭장이었을 것으로 추측할수 있다. 郎將과 中郎將은 약 4:1의 비율로 볼 수 있으므로 中郎將은 800명 단위의 부대를 지휘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母는 白丁軍(〈巫 4〉)과 神騎・步班・白丁 및 元定兩班・軍・閑人・雜類로 구성된 부대(〈巫 6〉), 工匠・田匠・投化・鉎川軍・沙工 등의 부대(〈巫 7〉)에

⁷⁰⁾ 末松保和, 앞의 글, 130~131쪽.

관한 기록이다. 그런데 이들을 비교해 보면 서로 간의 출입이 심하다. 북계에는 백정대가 기록되어 있지만 동계에는 보이지 않고 있다. 반면 동계의 공장 등의 여러 부대는 북계에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일부 부대의경우 실제 그러하였을 수도 있겠으나, 대체로 기록의 누락 탓이라고 보아야할 듯 하다. 〈표 5〉의 ③에 나오는 북계의 雜尺은 동계의 공장 등 여러 부대의 구성원에 비견될 수 있지 않을까 여겨지거니와, 이들이 〈표 6〉에 기록되어 있지 않음에서 그를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白丁隊는 북계만 하더라도 그 수가 2,440대 61,000명(〈표 6〉) 내지 2,895대 70,960명(〈표 5〉)에 달하였다. 이렇게 보면 백정대는 필시 동계에도 있었을 것이며 그 수 역시 상당하였으리라고 추측된다. 농민들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백정대는 아마도 州鎮屯田軍으로서 둔전의 경작에 동원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71)

神騎・步班은 그 명칭으로 보아 別武班과 어떤 관련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에 해당하는 것이 서경의 원정양반・군・한인・잡류로 구성된 부대(〈표 6〉)였을 것으로 짐작되므로, 신기와 보반은 다양한 신분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다. 말을 소유하여야 했을 신기에는 경제적 여유가 있는 양반들이 주로 소속되었을 법하다. 보반에는 백정을 제외한 여러 층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표 2〉의 雜尺이나〈표 4〉의 工匠 등의 여러 부대들은 특수 임무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所丁이나 공장대는 군수 물자를 조달하는 수공업과 관련이 보이고, 津江丁과 驛丁은 군사적 통신과 교통에, 部曲丁과 田匠은 屯田의 경작과 연결시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72)

〈표 7〉의 沙工隊는 해군으로서 元興鎭에 설치되어 있었던 都部署와 관련

⁷¹⁾ 李基白, 앞의 책, 266쪽 및 文喆永, 앞의 글, 1991, 80~81쪽. 趙仁成은〈표 5〉의 ③에 보이는 部曲丁 등을 州鎭屯田軍이라고 보았으나(〈高麗 兩界의 國防體制〉,《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163~164쪽) 그 수가 너무 적은 듯하다. 한편 주진둔전군을 군사체제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州鎭의 주민들 중 屯田 경작에 종사하는 자들을 일컫는다고 하는 견해도 있다(安秉佑,〈高麗의 屯田에 관한 一考察〉,《韓國史論》10, 1984, 52~54쪽).

⁷²⁾ 趙仁成, 위의 글, 154쪽.

이 있었을 것이다. 鎭溟縣에도 도부서가 있었고, 북계에는 通州都部署와 鴨 江都部署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거기에도 사공대가 있었을 법하다.⁷³⁾ 鉎川 軍은 어떤 부대였는가 알 수 없다.

그런데 ⓒ에 나오는 부대들과 ⓒ의 그것들은 성격을 달리하고 있었다. 초 군·좌군·우군·보창군·영색군은 양계 주진의 핵심부대로 상비군이었다고 생각된다. 주진군의 장상장교가 모두 이들 부대의 지휘관이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표 4〉·〈표 6〉·〈표 7〉에서 보듯이 이들 부대에 관해 중복됨을 무릅쓰고 상세하게 표시하고 있는 점도 이를 알려 주고 있다. 반면 그 지휘계통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의 여러 부대들은 주진군의 예비 부대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헤아려지며, 이들은 유사시 전투에 동원되는 것이 원칙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6》과 《표 7》에 나타난 주진군의 배치 상황을 《高麗史》 地理志와 비교해 보면 주진군이 지방관이 파견되어 있는 행정구획을 단위로 기록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것은 주진군이 5도의 주현군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지휘통제를 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지휘통제는 지방관을 통해 실현되었다. 도령 이하 장상 장교는 상비군을 직접 지휘하였지만 상비군은 물론 백정대를 중심으로 하는 예비군의 총괄지휘는 일단 주진의 장관이었던 防禦使와 鎭將에게 맡겨져 있었 다. 방어사와 진장은 지방관으로서 민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하였을 뿐만 아 니라 주진군의 지휘권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주현군의 지휘를 지방관이 맡고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당연하게 여겨질 것이다. 그리고 지방관들 은 다시 양계에서 군사적으로 전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던 兵馬使의 지휘를 받아야 했다.74)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 지취 통솔의 예를 보기로 하자.

高宗 18년(1231) 9월 西北面 兵馬使 朴犀는 撤禮塔이 이끄는 蒙古軍이 龜州에 이르자 朔州分道將軍 金仲溫, 靜州分道將軍 金慶孫, 靜州・朔州・渭州・

⁷³⁾ 兩界의 都部署에 대해서는 金南奎, 〈高麗都部署考〉(《史叢》11, 1966;《高麗兩界地方史研究》, 새문社, 1989), 49~61쪽이 참고된다.

⁷⁴⁾ 이상 州鎭軍의 조직과 지휘계통에 대한 서술은 주로 李基白, 앞의 책, 244~ 259쪽에 의거하였다.

_				— Ð –				
部隊 單位	都領	中郎將	郎將	別將	校尉	隊正	行軍	精 勇 (馬)(弩)
城	人	人	人	人	人	人	人	隊
西京							1,950	40
安北部 宣龍 州州州江	中郎將 1 中郎將 1 中郎將 1 中郎將 1	2 2 2 2	7 7 6 8	14 15 12 19	28 30 25 23 2	58 60 50 60 4	1,515 1,642 1,337 1,778 99	
2.精麟義朔昌雲延博嘉郭鐵靈猛德撫4.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州	中郎將 1	2 2 3 1 1 1 1 1 1 1 1	9 9 6 5 4 4 5 5 4 4 4 4 4 4 4 4	19 18 12 10 9 8 9 10 9 8 7 5	39 36 24 22 18 16 18 19 21 18 16 14 10 14	79 79 72 48 45 36 31 41 39 43 36 32 28 20 20 29	2,075 1,893 1,249 1,209 971 926 1,052 1,387 1,119 966 870 729 630 778 801	36(6) 18(6) 16(2) 12(2)(2) 12(2) 14(2) 15 13(3) 12(2) 10(1) 10(2) 10(2) 10(1)(1)
·順渭泰成殷肅寧威定寧安淸 · 一州州州州州城鎮鎮鎮鎮鎮鎮	郎將 1	1 1 1 1	4 2 15 4 3 15 4 4 4 3 15 4 3 3 3 4 5 3	9 8 7 7 7 8 8 8 8 6 7 7 7	13 16 14 12 18 15 16 12 14 <16>10 14	27 <30>20 28 27 33 32 32 25 28 32 28	755 918 895 744 917 <895>95 832 689 713 851 711 830	10(2) 12(2) 13(3) 10(1)(1) <12>22(1)(1) 12(2) 15(3) 12 10(4) 13(4) 9(2) 12(2)
E平寧朝陽樹安通温永咸龍三三 	將1副將1 將1 將1 將1	1 1 1	3 4 5 3 1 1 1, 假郎將 3 3	· 777	15 13 20 7 2 4 5 1 1 8 13 12 2 2	<31>21 28 41 14 5 8 10 2 16 26 24 5 5	847 783 1,143 422 153 206 274 43 432 729 656 135 121	13(3) 10 15(2) 5(1) 5(1) 2 4 6 8
[계]	<u>11</u>	<u>31</u>	<u>174</u>	341	680 <686>	1,387 <1,407>	39,870 <40.670>	451(64)(5)

	Y) ———					- @ —	
抄軍 (馬)	左 軍 (馬)(弩)	右軍 (馬)	保昌	[소계]	神騎	步班	白	丁
隊	隊	隊	隊	隊	人	人	隊	(25×隊)人
			19	(海軍1) <u>60</u>	(元策	『兩班軍》	月人雜類	9,572)
16(4) 24(4) 26(4) 32	26(2)(2) 20(4)(2) 20(2)(2) 32(4)(2)	4(1) (5) 4(1) 4	7 8 6 6	53 57 56 74			27 76 74	675 1,900 1,850
36(6)	30(4)(4) 34(4)(4)	4 4	6 4	(4) 76 78	108		28 36	700 900
	18(2)(1) 10(2)(2) 12(2)(1) 10(2)(2) 14(5)(5) 13 (1) 14(3)(1) 10(2)(2) 10(2)(1) 8 (1) 10 \land 10 \land 10\rand 10(1) 12(1)(1) 12(1)(1) 12(1)(1) 12(1)(2) 10(2)(2) 7(2)(2) 8(1)(1) 13(2)(1) 6 10 (1) 10(2) 10(1)(1) 15(2)(2) 5(1)(1) 2 3 3 5 10 8	4(1) 3(1) 4(1) 3 4(1) 2 2 2 2(1) 2 3 3 3 3 2 4(1) 3 1 3 1	544444335535443454754553111	45 33 32 29 37 34 30 26 26 60 25 31 31 31 31 31 30 31 31 31 31 31 31 31 31 31 31	45 222 33 36 49 50 53 32 26 35 40 32 22 17 34 39 49 27 33 29 30 50 28 21 11 10 11 5 28 23 35	12 21 25 40 42 29 17 25 23 20 32 39 33 59 50 24 10 23 17 36 42 27 14 12 27 14	48 222 499 500 1131 1422 622 555 788 1544 83 377 511 522 566 155 544 622 422 330 677 300 499 599	1,200 550 1,225 1,250 3,000 2,825 3,550 1,550 625 2,400 1,375 1,950 3,850 2,075 1,425 5,025 2,125 925 1,275 1,300 1,400 375 1,350 1,550 1,050 750 1,675 750 825 2,500 1,225 1,475
134(18)		93(9) <98>	<u>187</u>	(1) <u>1,349</u> (1,370)	<u>1,137</u>	<u>847</u>	2,440	61,000

						- D ——			
	單位	部隊	都領	郎將	別將	校尉	隊正	行軍	抄軍
地名	单11/2		人	人	人	人	人	人	隊
安	邊	府	1	2	4	12	27	<u>675</u>	8
瑞	谷	縣			1	2	3	<u>75</u>	
汶	Ш	縣					<1>	<25>	
衛	Ш	縣				1	<4>	<100>	
翼	谷	縣				1	<3>	<75>	
鐵	垣	戍					<2>	<50>	
凝	川貢						<2>	46	
孤	Ш	縣			1	3	7	<u>175</u>	2
鶴	浦	縣			1	2	4	<u>100</u>	2
壓	戎	戍				1	2	<u>50</u>	
霜	陰	縣				1	2	<u>50</u>	
禾	登	戍				_	<2>	<50>	
福	寧	卿				1	2	<u>50</u>	
和		州	1	3	7	13	32	800	10
高		州	1	3	7	15	32	800	<11> 1
宜		州	1	0	3	7	16	400	5
文		州	1	2	4	9	22	<u>550</u>	6
長		州	1	2	4	9	<23> 33	<575> <u>825</u>	6
定		州	1	4	8	16	37	<u>925</u>	14
德	481	州	1	2 2	4 5	8	20	<u>500</u>	9
元	典仁	鎭	1		3	13	29	<u>725</u>	
寧耀	德	鎭鎭	1 1	1 1	8	7 9	16 20	400 500	4 8
雌 鎭	渥 溟	縣	1	1	2	6	11	275	5
要	平	鍼	1		2	6	13	325 325	5
龍	津	鎭	1		2	4	10	250 250	$\begin{bmatrix} & 5 \\ 2 & \end{bmatrix}$
永	典	鎭	1		2	5	11	230 275	$\begin{vmatrix} 2 \\ 4 \end{vmatrix}$
靜	邊	鎭	1			5	11	275 275	4
雲	林	鎭	1			1	3	75	4
永	豊	鎭			1	2	5	125	
隘	守	鎭			1	$\frac{2}{2}$	6	150	
金	壤	縣			2	4	10	250	4
高	城	縣			1	4	9	$\frac{280}{225}$	1
杆	城	縣			1	5	10	250	4
翼	令	縣			3	3	9	225	4
溟	,-	州			5	10	23	575	8
三	陟	縣			1	8	16	$\frac{310}{400}$	4
蔚	珍	縣			1	3	8	200	2
	[계]		16	22	84	198	459	11,521	<u>131</u>
	L/7 J						<463>	<11,571>	<141>

泰州의 守令 등으로 하여금 각기 병력을 이끌고 귀주에 모이도록 하였다. 그리고 김중온과 김경손 휘하의 병력으로 하여금 각기 귀주성의 동서쪽과 남쪽을 지키도록 하는 한편 都護別抄와 위주·태주의 별초 250여 인은 3면을 나누어 지키도록 하였다.75)

分道官은 본래 문신이 맡는 것이었지만 무신란 이후에는 防戍軍의 장군이이를 겸직하게 되었다. 分道將軍이었던 김중온과 김경손은 방수장군이 분도관을 겸임하고 있었던 예이다.76) 그러므로 이들이 이끌고 왔던 것은 방수군이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정주 등의 지방관이 이끌고 왔던 것은 주진군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都護別抄를 비롯한 별초들은 해당 주진군 중에서 가려 뽑은 병력이었을 것인데, 이들의 지휘는 각 주진의 수령들이 맡았을 것으로 보아 좋을 듯하다. 단, 삭주와 정주 별초가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주진군이 분도장군 휘하에 편제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서 주진군이 지방관의 지휘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예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병마사가 주진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으며 양계 주진에 파견된 방수군의 지휘권도 아울러 지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70

(3) 주진군의 임무

州鎭軍은 내란의 진압에 동원되기도 하였다. 가령 妙淸의 난이 일어나자 주진군이 그 토벌작전에 동원되기도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 가장 중요한 임무는 국방이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고려는 대륙의 契丹·女真·蒙古 등의 이민족과 늘 대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침략을 자주 받았다. 유사시 주진군은 방수군과 더불어 가장 먼 저 전투에 임하였다. 주진군은 상비군이거나 예비군이거나를 막론하고 전투에 동원되었으며, 향리 등 주진군에 속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무장을 하고 주진군

^{75)《}高麗史》 권 103, 列傳 16, 朴犀. 《高麗史節要》 권 19. 高宗 18년 9월.

⁷⁶⁾ 分道官에 대해서는 邊太燮, 〈高麗兩界의 支配組織〉(《高麗政治制度史研究》, 一 潮閣, 1971), 221~224쪽을 보라.

⁷⁷⁾ 趙仁成, 앞의 글, 158~161쪽.

과 함께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高麗史》 등에서는 이들이 북방으로부터의 이민족의 침입에 대항하여 얼마나 용감히 싸웠는가를 전하는 적지 않은 사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가 이민족과의 항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던 공로의 일부는 주진군에 돌려져야 한다고 믿거니와, 여기에서는 주진군의 활약상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되는 사례 하나를 소개하는 것에 그치고자 한다.

고종 18년 9월 병마사 박서의 명에 따라 정주 등의 주진군이 방수군과 함께 귀주에 집결하여 몽고의 침입에 대한 방어의 태세를 갖추었다는 사실은 앞에서 살펴 본 바 있다. 이에 대해 몽고군은 한 달 동안 갖가지 방법과 공성 무기를 동원하여 귀주성을 함락시키려고 하였으나 박서의 지휘 하에 귀주 수비군은 성을 굳게 지켜냈다. 그 후에도 몽고군의 귀주 공략은 계속되었다. 같은 해 10월·11월·12월에도 몽고군의 대규모 공격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로써도 귀주성을 빼앗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수비는 적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정도여서, 몽고의 한 노장수는 귀주성의 성루와 수성 무기 등을 둘러보고는 이와 같이 심하게 공격을 당차고도 항복하지 않았던 예를 일찍이 본적이 없다고 평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고려와 몽고의 강화가 이루어지는 통에 고종 19년 정월 박서가 이끄는 귀주 수비군도 어쩔 수 없이 몽고군에게 항복하게 되었지만,78) 귀주성 방어에 주진군의 역할이 컸으리라는점은 쉽게 집작할 수 있는 바일 것이다.

위의 귀주성 방어 건투에서 잘 드러나 있듯이 주진군의 전술은 주진을 둘러싼 성에 의지하여 굳게 지키는 이른바 堅壁固守를 기본으로 하였다. 견벽고수란 많은 적을 상대로 지구전을 폄으로써 적의 예봉을 피하는 한편 군량 수송이나 병력 보충 등의 어려움으로 적이 악화되기를 기다리는 전술이라 할수 있다.79)

견벽고수의 전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틈을 보

⁷⁸⁾ 보다 자세한 상황은 《高麗史》권 103, 烈傳 16, 朴犀 및 《高麗史節要》권 19, 高宗 18년 9월·10월·11월·12월 및 19년 정월 참조.

⁷⁹⁾ 堅壁固守는 三國時代 이래의 전술이다. 唐 太宗의 침입을 받은 高句麗軍이 安市城을 끝까지 지켜 당의 침입을 저지시킨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李基白, 〈高麗의 北進政策과 鎭城〉,《軍史》1, 1980, 55~56쪽).

아 성의 병력을 이끌고 나가 적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를 引兵出擊의 전술 이라고 불러 좋을 것인데, 견벽고수하여 지킨 주진을 근거지로 하여 적의 배 후를 교란, 습격하거나 퇴각하는 적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다.80)

이 밖에도 이른바 淸野戰術이 병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백성과 재물을 모두 성 안이나 섬으로 옳기는 한편 그 나머지는 전부 불살라 적이 거처할 집과 먹을 양식을 없애는 전술이었다. 후방으로부터의 보급이 여의치 않았을 적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이 전술도 앞서의 인병출격과 더불어 견벽고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81)

이러한 전술로 말미암아 외적들은 수많은 성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깊숙이 침입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비록 침공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체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거란군이 개경을 함락시키고도, 이렇다 할 호위 병도 없이 羅州까지 피난했던 顯宗을 추격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교 적 성과도 별로 없이 곧 후퇴하였던 것은 바로 견벽고수의 전술이 극히 효 과적인 것이었음을 잘 말하여 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82)

堅壁固守의 전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성곽이 중요하였다. 양계 주진의 성은 삼국시대의 그것처럼 산성은 아니었다. 비록 그 주위에 산성이 있기는 하였지만, 주진성 자체는 조선시대의 邑城과 비슷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평지와 낮은 산을 함께 연결하여 쌓은 성이었던 것이다. 이는 영토 확장에 따른 거주와 방어라는 두가지 목적에 의해 주진성의 형태가 결정되었던 것임을 의미한다.83)

주진의 성에 적의 동태를 살피기 위한 망루를 비롯하여 적의 공격을 견디어 낼 수 있는 각종 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임은 이를 나위가 없다. 성을 지키기 위한 무기도 준비되어 있었다. 가령 박서는 몽고군의 공격으로

⁸⁰⁾ 이상 州鎭軍의 임무와 활약상 그리고 전술에 대한 서술은 李基白, 앞의 책, 259~261쪽에 의함.

⁸¹⁾ 趙仁成, 앞의 글, 209~210쪽. 한편 堅壁固守와 마찬가지로 引兵出擊과 淸野의 전술도 이미 三國時代부터 사용되었다. 漢의 대군이 침략하자 高句麗軍은 이 세가지 전술을 병행하여 그를 궤멸시킨 예가 있다. 보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서는 《三國史記》권 16, 高句麗本紀 4, 新大王 8년 11월 참조.

⁸²⁾ 李基白, 앞의 책, 260쪽.

⁸³⁾ 李基白, 앞의 글(1980), 53~54쪽.

부터 귀주성을 방어하면서 砲車와 大于浦・鐵絙 등을 동원하였다. 포차는 수 레에 石砲를 실은 것으로서 성을 공격하는 무기이기도 하지만 주진군은 이를 수성 무기로 사용하는 예가 많았을 것이다. 대우포는 공성용 사다리인 雲梯를 막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鐵絙은 일종의 장애물로 설치되었으므로 이들이 수성용 무기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지만 그 형태는 잘 알 수 없다.84)

아울러 견벽 고수의 전술이 지구전을 꾀하는 것이었으므로, 상당량의 군수를 비축하지 않고서는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군량의 확보를 위해 屯田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양계에서 거두어 들인 조세는 군수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뿐만 아니라 군량을 비롯 각종 군수가 漕運을 통해 수송되기도 하였다.85)

적군의 본격적인 침입에 대한 방어 외에도 주진군은 戍를 중심으로 군사적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표 6〉을 보면 북계에는 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高麗史》 兵志 城堡條 등을 보면 대략 長城이 지나가는 국경지대에 수가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7〉에 의하면 동계에 세 戍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은 安邊 부근의 동해안에 돌출하고 있는 해상의 요지에 자리하고 있다. 한편 〈표 7〉에는 나오지 않지만 동해안에는 몇개의 수가 더 설치되어 있었다.

戍는 규모가 작은 성책으로서 그 주둔군도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 이 점에서 戍는 접적지역 혹은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있었던 주진군의 전방 초소와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 주둔군은 적군의 동태를 탐지하여 그 정보를 본진에 통보한다거나 적의 소규모 침입을 격퇴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다. 특히 동계의 수는 주로 여진족의 침입에 대비하여만들어 졌다고 보인다.86)

⁸⁴⁾ 州鎭의 성과 수성무기에 대해서는 소략하지만 趙仁成, 앞의 글, 171~175쪽 참고.

⁸⁵⁾ 邊太燮, 앞의 글, 220~221쪽.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로는 趙仁成, 위의 글, 162~167쪽 및 安秉佑, 앞의 글, 10~18쪽을 참조, 특히 屯田에 대해서는 安秉佑의 글 참고.

⁸⁶⁾ 李基白, 앞의 책, 261~263쪽. 江原正昭, 앞의 글, 39쪽.

(4) 주진군 소속의 군인

종래 주진군 소속 군인으로 방수군을 들기도 하였다.87) 그런데 방수군의 최고 지휘관은 防戍將軍이었다. 하지만 방수장군은 〈표 4〉·〈표 6〉·〈표 7〉에 보이는 지휘계통(④) 어디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반면 도령 이하 대정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가 있다.

이 사실은 도령 이하 대정이 주진군의 지휘계통이었음에 비해 방수장군은 그렇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따라서 방수장군이 지휘 했을 방수군이 주진군의 軍額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임은 쉽게 생각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양계 주진에는 지휘계통이 다른 두 개의 군사조직 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 하나는 도령 이하 장상장교들의 지휘를 받는 주진군 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방수장군이 지휘하는 방수군이었다.88)

州鎭軍을 구성하였던 것은 누구였을까. 北界의 寧州(安北府) 향리 宋△淸이 의종 5년(1151)에 병마사에 의해 주진군의 정용으로 選軍된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은 영주에 토착해 살았던 가문이었으며, 그가 정용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군인으로서의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89) 이에 따르면 주진군의 상비군은 각 주진의 주민들 중 무재가 있는 자를 선군하여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주진군에는 예비군이라고 불러 좋을 부대들도 있었다. 이들도 역시 각 주진에 거주하였던 주민들이었음에 틀림없어 보인다.90)

송△청은 그 후 주진군의 장상장교가 되었고 趙位寵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하여 영주의 주진군을 이끌고 활약하였다고 한다.91) 이로 미루어 보면 주진군 중 상비군에 소속된 군인들은 물론이고 그 지휘관들조차도 모두 각 주진의 주민들로 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진군의 최고 지휘관인 도령이 각 주진의 지방 세력가들이었다는 점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92) 각 주진의 장상장

⁸⁷⁾ 孝基白. 위의 책. 263~264쪽.

⁸⁸⁾ 趙仁成,〈高麗 兩界 州鎮의 防戍軍과 州鎮軍〉(《高麗光宗研究》, 1981), 120~ 121零.

^{89)〈}宋將軍墓誌〉(《朝鮮金石總覽》上, 朝鮮總督府, 1919).

⁹⁰⁾ 李基白, 앞의 책, 264쪽.

^{91)〈}宋將軍墓誌〉、《朝鮮金石總覽》上.

⁹²⁾ 江原正昭는 都領의 직위를 귀화한 女眞人에게만 준 것으로 보았는데(江原正 昭, 앞의 글, 59~71쪽), 잘못이다. 만약 그러하였다면 州鎭軍의 최고지휘관이

교와 京軍 소속 지휘계통의 祿俸을 비교해 보면(〈표 8〉), 양자가 전혀 구별되어지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거니와,⁹³⁾ 이러한 구별은 주진의 장상장교들이 토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으리라고 생각된다.⁹⁴⁾

〈丑 8〉

武班祿俸 (文宗朝)	州鎭將相將校祿(睿宗朝)		武班祿俸(仁宗朝)		
上 將 軍 300石			上將軍	300石	
大 將 軍 233石 5斗			大將軍, 攝上將軍	233石 5斗	
將 軍 200石			將軍, 攝大將軍	200石	
中 郎 將 120石	中郎將	40石	中郎將, 攝將軍	120石	
郎 將 86石 10斗	郎將, 攝中郎將	33石	郎將, 攝中郞將	76石 10斗	
別 將 46石 10斗	攝鄓將(或18石)	20石	別將, 攝郎將	46石 10斗	
散 員 33石 5斗	別將	18石	攝別將	33石 5斗	
校 尉 23石 5斗	校尉	14石	校尉	23石 5斗	
隊 正 16石 10斗	隊 正	9石	隊正	16石 10斗	

이 밖에도 州鎭入居軍人을 주진군에 넣어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 이들은 완전히 토착한 군인은 아니었다. 그들은 본관 즉 원주지에 가족을 남겨 두고 주진에 입거한 군인인 것이다.95) 하지만 방수군이 교대로 동원되었던 것에 비해 아예 입거한다는 점에서 토착민이 중심이 된 주진군에 넣어 생각할 수 있을 듯하다.96) 그리고 〈표 7〉에 投化軍이 보이므로 이로 미루어 본다면 투화

모두 여진인 출신이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李基白, 앞의 책, 254~256쪽이 참고된다. 한편 주진 군의 도령이 지방의 세력가들이었음은 金南奎,〈高麗 兩界의 都領에 대하여〉(《慶南大學論文集》4, 1977; 앞의 책), 112~116쪽에서 밝혀진 바 있다.

⁹³⁾ 崔貞煥, 〈高麗 祿俸制의 運營實態와 그 性格〉(《慶北史學》2, 1980), 120~121 쪽. 〈표 8〉은 같은 논문 121쪽에서 옮김.

⁹⁴⁾ 趙仁成, 앞의 글(1981), 131~133쪽. 崔承老는 成宗 원년(982)에 올린 그의 상 서문에서 京軍이 짊어지는 방수의 괴로움을 면제시키고 군량 수송의 비용을 덜기 위하여 변경의 토착민 중 무례에 능한 자들을 뽑아 방수에 충당하고 또 장수를 선발하여 그들을 지휘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다(《高麗史》권 82, 志 36, 兵 2, 鎭戍). 비록 京軍이 방수의 임무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었지만, 이러 한 崔承老의 의견은 州鎭軍 형성에 상당히 기여했던 것이라고 믿어진다. 즉 그의 건의가 토착민 중에서 주진군의 지휘관 및 상비군을 선발하는데 큰 영 향을 주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⁹⁵⁾ 李基白, 앞의 책(1968), 264~265쪽.

⁹⁶⁾ 趙仁成, 앞의 글(1981), 131쪽.

한 여진인들 중 주진군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주진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을 것이다.⁹⁷⁾

주진군에는 兩班에서부터 所丁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신분의 소유자들이 소속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진군 소속 군인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을 것이다. 가령 백정군은 州鎭屯田軍으로서 둔전의 경작에 동원되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리고 주진의 상비군들도 토지를 소유하고 농경에 종사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양계에서 거두어 들인 조세는 군수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점에서 크게 보아 주진군은 둔전의 경작에 종사하건 그렇지 않았건 간에 屯田軍的인 성격을 지닌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하다.98)

〈趙仁成〉

3.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경군을 중심으로-1)

1) 경군 붕괴의 원인

고려 전기 京軍에 속해 있었던 군인들의 임무 곧 그들이 지고 있었던 軍 役으로는 국왕의 시위와 외국 사신의 영송 및 수도의 치안 유지, 출정과 방 수, 역역 등을 들 수 있다.

국왕과 그가 거처하는 궁성을 경호하고, 국왕이 참석하는 행사와 그 행차에 수행하면서 국왕을 보호하는 것은 주로 친위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던 2軍 즉 鷹揚軍과 龍虎軍의 임무였을 것이지만 6衛 소속의 군인들도 그에 동원되었다. 특히 千牛衛 소속 군인들이 그러하였다.

경군은 開京의 치안 유지도 맡고 있었다. 6위 중 金吾衛 소속 군인들은 點檢軍으로서 시내의 요소는 물론 시외의 요소에 배치되어 순검하도록 되어

⁹⁷⁾ 李基白, 앞의 책, 265쪽,

⁹⁸⁾ 李基白, 위의 책, 265~267쪽.

¹⁾ 高麗 전기의 군사제도가 여러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 가 없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역시 京軍이었다고 여겨지거니 와, 여기에서는 경군을 중심으로 고려 전기 군제의 붕괴를 다루기로 한다.

있었다. 창고 등에 대한 감시를 맡고 있었던 看守軍도 그들이었다. 그리고 監門衛 소속 군인들은 圍宿軍으로서 궁성 안팎의 여러 문에서 수위의 역할 을 하였다.

이 밖에도 경군은 외국 사신들을 맞이할 때와 그들이 돌아 갈 때의 의식을 담당하였으며, 그들이 머무는 동안의 의식 절차에 동원되기도 하였다.2)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경군 소속의 군인들은 개경에서 국왕의 시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였지만, 한편 이들은 전쟁이나 내란이 일어나면 출동하도록 되어 있었다. 전투에 동원될 때 그들은 3軍 혹은 5軍의 조직에 편입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런데 이 3군 혹은 5군 조직은 전투의 수행을 위한 임시적인 것이었으나, 전투가 끝났다고 하여 그것이 해체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3군 혹은 5군 조직은 평상시에도 출정에 대비하여 편제상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상임 장교가 임명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전투를 위한 3군 혹은 5군 조직이 상설되어 있었다는 것은 경군 소속 군인들의 중요 임무가 바로 국방이었음을 알려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3)

유사시 전투에 동원되는 것 외에 국방과 관련된 京軍의 임무로는 방수를 들수 있다. 이미 성종 이전부터 국경 지역의 수비를 맡아 왔었던 경군은 이후에도 양계 지방에 파견되어 주진군과 더불어 그 임무를 나누어 지고 있었다.

경군 중에서도 전투와 방수에 동원되었던 것은 주로 左右衛・神虎衛・興威衛 등 3위에 소속된 保勝軍과 精勇軍이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좌우위 등 3위에는 경군 전체 45領의 거의 3/4에 이르는 32령이 속해 있었다. 이는 좌우위 등 3위가 경군의 주력이었음을 알려 주는 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경군의 주력이었던 이들 3위가 주로 국방의 임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아 자연스러울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군과 6위 중 나머지 3위인 金吾衛・千牛衛・監門衛 등이 각각의 임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을

외국 사신의 迎送과 관련된 京軍의 임무에 대해서는 李基白,〈高麗 軍役考〉 (《高麗兵制史研究》, 1968), 133~135쪽에 자세하다.

³⁾ 李基白은 京軍이 전투에 동원될 때 5軍 조직으로 재편성되었다고 보았고(위의 글, 136~138쪽), 洪承基는 3軍이 기본 틀이고, 필요에 따라 5軍으로 편성되었다고 하였다(〈高麗 초기 中央軍의 組織과 役割—京軍의 性格—〉,《高麗軍制史》, 陸軍本部, 1983, 55~57쪽).

떠올릴 때에도 이는 그럼직할 것이다.

경군 소속 군인들은 위에서 살펴 본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도 흔히 토목공사 등에 동원되어 노력을 봉사하였다.4) 力役은 경군이 져야했던 본연의 임무가 아니었다. 경군을 노력 동원에서 제외해주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군은 역역에 동원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그리하여 경군의 역역 동원은 당연한 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다.5)

지금까지 고려 전기 경군 소속의 군인들이 지고 있었던 군역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 보았다. 그런데 그들이 짊어져야 했던 이상의 여러 가지 일들이 결코 손쉬운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유사시 전투에 동원되는 경우는 말할 나위가 없겠거니와 평상시에 있어서는 防戍의 임무가 그러하였던 듯하다. 방수중에 사망한 자의 시체를 驛送하도록 하였다거나, 장례 이비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방수를 위해 왕래하는 도중에 혹은 주둔 중에 사망하는 방수군이 적지 않았음을 말하여 준다. 심지어 방수 중인 자는 늙고 병든 부모를 모시는 侍親의 혜택까지도 받을 수 없었다. 시친의 혜택이 일반장정은 물론이고 移鄕罪人에게까지도 허락되었던 예가 있었음에 비추어 보면 방수의 의무가 얼마나 힘겨운 것이었나를 알 수 있는 것이다.6)

그러나 무엇보다도 경군 소속 군인들의 부담을 무겁게 하였던 것은 역역이었다. 그들이 맡아야 했던 역역은 賤役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힘든 것이었다고 한다. 武臣亂에 군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이유 중의 하나가바로 역역의 과중함이었다는 사실에서도 경군이 져야 했던 역역이 고역이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7)

이와 같이 경군 소속의 군인들이 과중한 軍役에 시달려야만 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은 도망자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즉 군역의 과중 함으로 인한 군역의 기피를 경군 붕괴의 한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듯하다.

⁴⁾ 李基白, 앞의 글, 138~139쪽.

⁵⁾ 洪承基, 앞의 글, 59~61쪽. 이상 京軍소속 군인의 軍役에 대해서는 李基白, 위의 글, 132~141쪽 및 洪承基, 위의 글, 54~61쪽에 의함.

⁶⁾ 李基白, 위의 글, 138~139쪽.

⁷⁾ 李基白, 위의 글, 139~141쪽.

그런데 경군 소속 군인들이 군역으로부터 벗어 나고자 하였던 이유를 오직 임무의 과중함에서만 비롯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가령 그들이 자신들의 임무 수행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았다면 군역을 피하려고 하였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에 국가가 경군 소속의 군인들을 어떻게 처우하였는가 하는 점을 살펴 볼 필요성이 떠오른다. 경군 소속 군인들이 군역을 기피하게 되었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의 군역 수행에 대한 국가의 반대 급부가 미흡하였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 든다.

국가는 경군 소속의 군인들에게 토지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흔히 軍人田이라고 한다. 군인전은 경군 소속 군인들이 져야 했던 군역에 대한 보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군인전은 그들 가족의 생계는 물론 복무에 필요한 비용과장비의 마련을 위한 것이기도 하였다. 방수 중일 경우에는 국가에서 식량을지급하였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복무에 필요한 식량, 의복, 무기 등을 그들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었다.8)

군인전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염두에 떠오르는 것은 전시과에 군인에게 토지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사실(〈표 1〉)이다.9) 그런데 현재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는 경군 소속 군인의 사회적 성격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경군 소속의 군인이 군역을 세습하는 軍班氏族 출신의 전문적 군인이며, 鄕

⟨표 1⟩

	穆宗	元年(998)	改定文武兩班及軍人	馬 軍	步	軍
			田柴科	17科 23結	18科	20結
	德宗	3年(1034)	改定兩班及軍閑人		軍人	
			田柴科		里 八	
	文宗	30年(1076)	更定兩班田柴科	馬軍	役軍・步軍	監門軍
L				15科 25結	16科 22結	17科 20結

⁸⁾ 李基白. 위의 글. 155~156쪽.

⁹⁾ 군인이 田柴科의 지급 대상으로 나오는 것은 목종 원년(998)의 이른바 改定田 柴科부터이지만 이전에도 군인들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다. 태조 23년(940) 役分田 지급 대상에 '軍士'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 예가 된다.

東나 東屬 등에 준하는 신분의 소유자로 보는 논자는 그들이 졌던 군역이 職役의 일종이었으며, 田柴科의 군인전 지급 규정은 경군 소속의 군인들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收租權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10)

반면 경군 소속 군인들이 군반씨족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 일부만이 전문적인 직업군인들이었을 것이고, 나머지 대다수는 본질적으로 농민들이었다고보는 입장에서 田柴科에 보이는 군인전이란 군인들이 농민으로서 소유되고있었던 민전을 토대로 그 위에 설정된 것이며, 전시과의 군인전 지급 규정은민전에 대한 免稅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擬制的인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11)

그 밖에 경군이 군반씨족 출신의 전문적 군인 등과 농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보고 그들 중 전자에게는 전시과의 군인전을 지급하였으나, 후자에게는 그들 소유의 면전을 군인전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12)

이상에서 간단히 소개한 바와 같이 전시과의 군인전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지만, 그것은 여하간에 경군 소속 군인들에게 그들의 군역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기에 필요한 양의 군인전이 주어지도록 예정되어 있었을 것임에는 별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가령 전시과의 군인전 지급을 수조권의 지급이라고 이해하는 논자는 군인들이 실제로 규정된 田結數의 군인전을 받고, 또 제대로 收租를 하였다면, 군인 가족의 생활이나 軍資의 조달을 위하여 충분하였으리라고 한다. 목종 원년(998) 혹은 문종 30년(1076) 전시과의 군인전 최하 액수인 20결을 기준으로 하고, 1결의 수확량을 《高麗史》食貨志 田制 租稅 성종 11년(992) 케에 나

¹⁰⁾ 李基白, 〈高麗 軍班制 下의 軍人〉, 앞의 책, 284~289쪽. 洪承基는 앞의 글, 42~52·64~66쪽에서 李基白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¹¹⁾ 姜晋哲, 〈軍人田〉(《高麗土地制度史研究》, 1980), 114~132쪽.

¹²⁾ 張東翼、〈高麗前期의 選軍-京軍構成의 이해를 위한 一試論-〉(《高麗史의 諸問題》、1986)、468~479等.

洪元基, 〈高麗 二軍·六衛制의 性格〉(《韓國史研究》68, 1990). 한편 私田 소유 군인과 公田 소유 군인으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馬宗樂, 〈高麗時代의軍人과 軍人田〉, 《白山學報》36, 1989).

타난 최하의 경우인 7석으로 계산하더라도 총 수확량은 140석이 된다. 그 반을 취한다면 군인의 수입은 年 70석이 되며, 혹 그 1/4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입은 35석이 되는데, 이것을 녹봉만으로 생활하는 工匠이 최고 20석, 최하 6석을 받고 있었던 것¹³⁾과 비교해 보면 군인들의 수입이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¹⁴⁾

군인전이 면전에 대한 면세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의제적인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 논자는 군역을 부담할 수 있는 富農을 먼저 軍戶로 삼 는 것이 원칙이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한 부농이란 군역 수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만한 양의 민전을 소유한 가호이며, 전시과에 규정된 군인전 액 수가 그 민전의 양일 것으로 보았다.¹⁵⁾

한편 전시과에 규정된 군인전은 경군의 일부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었고, 나머지에게는 그들 소유의 民田을 군인전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민전의 양은 군역을 뒷받침하기에 필요한 정도로 계획되어져 있었을 것으로 여겨 무방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 경군 소속의 군인들에게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군인전 지급의 원칙과 실제가 달랐던 것이다. 따라서 전시과에 보이는 군인전의 액수는 최고액을 규정한 것일 뿐이며, 실제 지급액은 그에 훨씬 못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는 고려 초기 전국의 전결 총액은 약100만결 정도에 불과하였으리라고 추정되는 반면 문종 30년 전시과 중 步軍에게 지급될 군인전 22결을 기준으로 한다면 경군 전체 45,000명에게 지급되어야 할 군인전이 거의 100만결에 달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16)

그 이유가 어떠하든 軍役을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양의 군인전을 갖지 못한 군인들이 많았다. 德宗 3년(1034) 개정된 전시과가 시행된 지 불과 2년 뒤인 靖宗 2년(1036) 7월 정종이 내린 制¹⁷⁾에 諸衛의 군인들 중 名田¹⁸⁾ 곧 자신

^{13) 《}高麗史》 권80, 志34, 食貨3, 祿俸 諸衙門工匠別賜.

¹⁴⁾ 李基白, 앞의 책, 156~157쪽.

¹⁵⁾ 姜晋哲, 앞의 책, 32쪽.

¹⁶⁾ 李基白, 앞의 책, 157~158쪽. 이에 대해 姜晋哲도 비슷한 입장이다(위의 책, 112~113쪽 및 132쪽).

^{17) 《}高麗史》 권 81, 志 35, 兵 1, 兵制.

¹⁸⁾ 李基白, 앞의 책, 158쪽 및 姜晋哲, 앞의 책, 113쪽 참조.

의 명의로 등기된 군인전이 부족한 자가 대단히 많다고 하였음은 이를 알려준다. 군인전 부족 현상을 시정하기 위해 정종은 公田을 加給하도록 조치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으로써 모자라는 군인전이 충족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문종 25년(1071) 6월에 내린 制¹⁹⁾를 보면 제위의 군인들 중 부강한 자들은 권세가와 결탁하여 군역을 면하고, 빈궁한 군인들만이 그를 담당하였다고 지적되어 있다. 군인들 중 군역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강한 군인들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인 반면 빈궁한 군인들이 대다수였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집작이 가고도 남을 것이다. 그리고 빈궁한 군인들은 그들이 지급 받은 군인전을통해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군수를 장만할 수 없었던 자들로서 바로 '名田'이 부족한 군인들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경군의 대다수가 군인전의 부족으로 인하여 빈궁한 군인이 되었던 것이 문종대의 실정이었던 것이다.²⁰⁾

다시 문종이 내린 制를 보면 군역을 오로지 하게 되었던 빈궁한 군인들은 衣食이 아주 없고, 거의 휴식하지 못하여 도망하는 자가 심히 많았다고 한다. 군역을 감당할 수 있는 부강한 군인들은 군역을 면하고 그렇지 못한 빈궁한 군인들만이 군역을 져야 했다면 빈궁한 군인들이 그것을 피하려고 하였을 것임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문종은 力役의 부담을 줄여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였지만, 부족한 군인전을 보충시키지 않는 한 이러한 조치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었다. 비록 모자라는 군액을 보충하기 위해 선군이 실시되기는 하였지만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 군인이 된 자도 군역을 기피하려고 하였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21)

이제 軍戶連立 즉 군역 세습의 원칙은 무너져 가게 되었다.22) 그리고

^{19)《}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²⁰⁾ 李基白, 앞의 책, 159쪽.

²¹⁾ 選軍의 대상은 6品 이하 兩班 및 白丁의 子로 되어 있으나 주로 백정의 자가 選軍되었을 것이다. 選軍이 되면 軍人田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選軍 給田') 역시 충분히 지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選軍에 대해서는 李基白, 〈高 麗 軍人考〉(《震檀學報》21, 1960; 앞의 책, 110~123쪽)에 자세하다.

²²⁾ 軍役은 세습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군인이 60세가 되거나 신병이 있어 군역을 담당할 수 없게 되면 그 자손이나 친족으로 그를 대신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軍戶連立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군호연립의 원칙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군역을 대신할 자손이나 친족이 없거나 혹은 군역을 기피하여 도망하는 예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選軍을 통하여 군인을 뽑았다.

이로 말미암아 경군은 점차 부실해질 수밖에 없었다. 경군 소속 군인들에게 군인전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던 것은 고려 전기 군사제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었다.²³⁾

2) 별무반의 설치와 그 의의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別武班은 여진 정벌을 위하여 설치된 군사 조직이었다. 肅宗 9년(1104) 정월 東女眞의 기병이 定州 關外에 진출하자 숙종은 林幹으로 하여금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게 하였다. 그 해 2월 임간은 여진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3월 임간의 후임자였던 尹瓘도 역시 패전하였다. 윤관은 숙종에게 패전의 원인을 설명하고 여진과의 전쟁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그에 따라 별무반이 만들어졌던 것이다.²⁴⁾

별무반은 神騎軍과 神步軍・跳盪軍・梗弓軍・精弩軍・發火軍 등 및 降魔軍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 중 항마군을 제외한 나머지 부대의 이름은 《高麗史》 兵 1, 兵制條의 서두에 나오는 5군의 조직에서 발견할 수 있다(〈표2〉). 한편 주진군 조직에서는 神騎와 步班을 발견할 수 있는데,²⁵⁾ 그들은 별

요컨대 군역 세습이 원칙이었고, 選軍은 보조 수단이었던 것이다(李基白, 앞의 책, $141\sim144$ 쪽).

²³⁾ 李基白, 위의 책, 159쪽.

²⁴⁾ 別武班에 대한 종합적인 기록은《高麗史》권 96, 列傳 9, 尹瓘傳에 전한다.《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숙종 9년 12월조와《高麗史節要》권 7, 숙종 9년 12월조에서도 尹瓘傳에 실린 기사와 거의 비슷한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한편 그에 대한 전론으로는 李基白,〈高麗 別武班考〉(《金載元紀念論叢》, 1969;《高麗貴族社會의 形成》, 1990)가 있거니와, 이하의 서술은 주로 그에 의한다.

^{25) 《}高麗史》권 83, 志 37, 兵 3, 州縣軍 北界. 그런데《高麗史》권 81, 志 35, 兵 1, 兵制 문종 17년(1063) 2월조를 보면 州鎭軍 소속의 神騎와 步班이 別武班 설치 이전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은, 別武班의 부대 조직 전부가 종래의 것을 적용한 것이었는가는 단정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전적으로 尹瓘의 창의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음을 알려 준다(李基白, 위의 책, 199쪽). 이와는 달리 이들 부대 명칭이 別武班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內藤雋輔,〈高麗兵制管見〉,《靑丘學報》15·16, 1934;《朝鮮史研究》, 1961, 194쪽 및 白南雲,《朝鮮封建社會經濟史》上, 1937, 657쪽). 한편《高麗史》권 81,志 35, 兵 1, 兵制條의 서두를 보면 別號諸班이라는 표제 밑에 神騎・神步・梗弓・石投・大角・鐵水・剛弩・跳盪・射弓・發火 등의 軍號가 나열되어 있

〈표 2〉

		兵陣都指諭・都將校 五兵都指諭・將校・都業師 神騎都領・指諭	神步都領・指諭 石投都領・指諭 大角都領・指諭
中	軍	左梗弓都領・指諭	鐵水都領・指諭
		右梗弓都領・指諭	發火都領・指諭
		左精弩都領・指諭	跳盪都領・指諭
		右精弩都領・指諭	剛弩都領・指諭
前	軍	兵陣都指諭	神步都領・指諭
問	平	神騎都領・指諭	精弩都領・指諭
後	軍	同上	
左	軍	同上	
右	軍	同上	

무반의 신기군과 신보군과 통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5군은 전투를 수행하기 위한 부대 조직이었다.26) 주진군도 역시 그러하였다.27) 그리고 일찍부터 유사시에는 사원의 隨院僧徒들을 징발하여 諸軍에 배치하기도 하였다.28) 그러므로 별무반은 전투를 위한 부대 조직이었다고 할수 있겠거니와, 별무반이 여진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설치되었음을 생각할 때이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는 별무반의 인적 구성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神騎軍은 문무의 散官과 吏胥로부터 商人·奴僕 및 일반 州府郡縣民에 이르기까지 말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진 부대였다. 그들 가운데 말을 갖고 있지 않는 자들은 신보군·도탕군·경궁군·정노군·발화군 등에, 20세 이상의 남자로서 과거 응시자가 아닌 자들은 신보군에 속하였다. 그리고 승도를 뽑아 항마군을 조

다. 이 別號諸班은 別武班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別號諸 班이라는 명칭이 別武班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비록 서로 간에 출입이 있지 만, 소속된 軍號가 일치하는 것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 점에서 別號諸班이 곧 別武班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李基白, 위의 책, 198쪽).

²⁶⁾ 李基白, 〈高麗 軍役考〉(앞의 책, 1968), 136~138쪽.

²⁷⁾ 李基白、〈高麗 兩界의 州鎭軍〉(위의 책), 253・259~263쪽.

^{28) 《}高麗史》 권 81, 志 35, 兵 1, 兵制 숙종 9년 12월.

직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장정으로서 별무반의 정발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정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正職文武官과 문관 후 보자인 과거응시자, 승려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회적 신분층의 장정을 정발하여 조직된 것이 별무반이었는데 주요 구성원은 어느 계층이었을까. 이를 알아 보기 위해서는 부대별 구성원에 대한 검토가 도움이 된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신기군과 도탕군·경궁군·정노군·발화군 등의 구성원에 대해 미리 살펴보기로 한다.

신기군은 주로 문무의 산관 등 귀족들로 이루어진 부대였을 것이다. 물론이서나 상인 혹은 일반 주부군현민으로 신기군에 소속되었던 자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예는 별로 많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럴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부유층이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도탕군·경궁군·정노군·발화군 등은 일정한 특수 무기와 그를 조작하는 兵技에 따라 구별되는 특수군들인 듯하다. 도탕군이 어떤 특수한 무기를 사용하였는가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돌격부대였을 것으로 추측되는 만큼 그에 알맞는 특수 무기를 사용하였을 법하다. 梗 그 때 글 맞는 특수 무기를 사용하였을 법하다. 梗 그 때 그 된다 정교한 쫄를 사용하는 부대였을 것이다. 발화군은 화기를 이용하는 화공부대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특수 무기의 조작 방법을 익히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해 아려진다. 이는, 특수군 소속 군인들이 비록 神步軍과 같이 無馬者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신보군 소속 군인들과는 구별되는 존재들이었음을 시사한다. 아마도 종래 6衛 소속의 군인들로서 각종 특수 무기의 사용에 능통한 자들로 조직되었던 것이 이들 특수군이 아니었을까 한다.

윤관은 자신이 여진군과의 전투에서 패전한 원인으로 그들이 기병 중심인 것에 비해 고려군이 보병 중심이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러므로 기병인 여진군에 대항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 신기군이었다고 할 수 있으며, 신기군은 전술적으로 중요한 부대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로 귀족들이 신기군에 소속되었을 것임을 고려하면, 그 전술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신기군에 소속된 군인의 수는 오히려 소수였을 것이다. 여러 특수군도 전술적으로는 중요하였겠지만, 특수군이고 보면 그에 소속된 군인의 수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17만명에 달하였다는 별무반 소속 병력의 대부분은 神步軍과 降魔軍 소속 군인들이었을 것이다. 그 중 신보군은 주로 일반민들로 구성된 부대로 여겨진다. 신보군에 문무의 산관이나 이서 등이 소속되어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지만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보다는 역시 일반민인주부군현민이 압도적으로 많았을 것으로 믿어진다. 그런데 주부군현민이라고하더라도 그 대다수는 白丁이었을 것이다. 이는 군인의 보충을 위한 選軍의대상자가 주로 백정이었다는 사실2의로 미루어 집작할 수 있는 것이다.

항마군은 이른바 隨院僧徒로 이루어진 부대였다. 수원승도는 일반 승려와는 다른 존재였다. 그들은 사원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량의 일정부분을 사원에 바치는 한편 그 나머지를 자신의 재산으로 축적할 수 있었다. 즉수원승도는 농민으로서 사원의 佃戶였던 것이며, 따라서 이들은 신보군의 주요 구성원이었던 백정과 비슷한 사회적 처지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別武班의 주요 구성원이 농민, 구체적으로는 백정이거 나 그에 준하는 수원승도였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즉 별무반은 바로 농민 을 주력으로 하는 전투부대였던 것이다.

고려 전기에도 농민이 전투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었다. 가령 주진군 조직에는 백정으로 구성된 白丁隊가 편성되어 있었다. 그들이 유사시 전투에 동원되는 경우가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직접 전투에 투입되는 것은 매우 위급한 상황에 한하였을 것이다. 전투 병력은 주진군 중 抄軍·左軍·右軍 등과 방수 혹은 출정중인 京軍이었으며, 백정대는 예비 병력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30) 그러므로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전투 부대인 별무반의 출현은 고려 전기 군사제도의 중대한 변화를 말하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려에 이미 정비된 군사조직이 있어 왔고, 거란과의 전쟁에서도 별무반과 같은 조직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유의된다. 이는 별무반의 설치를 고려 전기 군사제도의 변화와 관련지어 보아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종래 경군을 중심으로 주진군과 주현군 등을 동원함

²⁹⁾ 李基白, 앞의 책(1968), 121쪽.

³⁰⁾ 李基白, 위의 책, 255~256쪽.

으로써 감당해낼 수 있었던 군사동원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별무반이 만들어지게 되었음을 알려 주고 있거니와, 별무반의 설치는 특히 경군이 유명무실해지고 있었던 사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31)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역역을 비롯한 군역의 과중함과 군역 수행을 경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군인전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경군 소속 군인들이 군역을 피하여 도망하였다. 그 결과 군호연립의 원칙은 무너져 갔고, 경군은 허구화되고 있었다. 그러한 경군을 동원하여 여진과의 대규모 전쟁을 치를 수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로 농민층을 대상으로 하여 새로운 군사조직 곧 별무반을 만들게 되었던 것이다.

別武班은 여진과의 강화가 설립됨에 따라 해체되었다. 그러나 兵農—致에입가한 군사조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단계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역사적 중요성을 찾아볼 수가 있다. 또 동시에 백정으로 대표되는 농민들의 사회적 지위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趙仁成〉

³¹⁾ 李基白, 위의 책, 196쪽 및〈高麗의 軍事組織〉(《한국사》5, 1975;《高麗貴族 社會의 形成》, 188쪽). 일찍이《高麗史》兵志 撰者는 別武班의 설치를 六衛制의 변질과 관련하여 파악한 바 있거니와(《高麗史》권 81, 兵志 序), 別武班이高麗 전기 군사제도의 변질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조직된 것이었다는 점은 널리 인정되고 있다.